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201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I. 원양협력관실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정원	3
2. 과별 주요 업무	4
3. 예산 및 기금	5
II. 원양정책 추진 방향	7
1.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
2.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내·외 수산 여건	11
3. 기본 추진 방향 설정	14
III. 과별 업무추진 계획	15
□ 원양정책과	17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19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21
3.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23
4.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24
5.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25
6.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26
7.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27
8.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31
<참고>	
《1- 1》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33
《1-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36
《1- 3》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 조업상황	37
《1- 4》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38
《1- 5》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39
《1- 6》 원양어업 생산 추이	42

《1- 7》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43
《1- 8》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44
《1- 9》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45
《1-10》 원양업체 현황	46
《1-11》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선박 현황	48
《1-12》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선박 현황	49
《1-13》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50
《1-14》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51
《1-15》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52
《1-16》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53
《1-17》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	54
《1-18》 201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55

□ **국제기구과**59

1. 일반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61
2.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63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65

《참고》

《2- 1》 FAO 수산위원회 개요	67
《2- 2》 OECD 수산위원회 개요	68
《2- 3》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69
《2-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0
《2- 5》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72
《2- 6》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73
《2- 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74
《2- 8》 '11년도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석 계획	75
《2- 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77
《2-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91

□ 어업교섭과	93
1. 남북관계 정상화 대비 수산협력 방안 마련	95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97
3. 한·중 입어 균형 확보 및 자원관리 강화	99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101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102

〈참고〉

《3- 1》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105
《3- 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106
《3- 3》 한·일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07
《3- 4》 한·중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08
《3- 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109
《3- 6》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110
《3- 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112
《3- 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113
《3- 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114
《3-10》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116
《3-11》 수산진흥종합대책	117
《3-12》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118
《3-13》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119
《3-1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2007)	120
《3-15》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122
《3-16》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123
《3-17》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124
《3-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25

IV. 수산 통계 127

1. 어업별 생산량(총괄)	129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130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132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136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137
6. 수산물 수입 현황	138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141
8.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현황	142
9. 주요 품목별 일본 수출 현황	143
10. 업종별 어선현황	144
11. 수산종묘 방류량	144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145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145
V. 주요소관법령	147
1. 원양산업발전법	149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167
3. 원양산업발전 시행규칙	178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96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3
7. 원양협력관실 행정규칙	226
VI. 추진사업	227
1. 어업협정이행(일반)	229
2. 원양어업 활성화(농특)	230
3.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농특)	231
4. 연안국과의 협력(농특)	232
5. 연안국과의 협력(ODA)(농특)	233
6.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수발기금)	234
7.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수발기금)	235
8. 원양어선현대화사업(수발기금)	236
9. 피해보전직불금(수발기금)	237
10. 폐업지원금(수발기금)	238

VII. 원양어업 모식도	239
1. 원양참치연승 어업	241
2. 원양선망 어업	242
3. 원양트롤 어업	243
4. 원양봉수망 어업	244
5. 원양채낚기 어업	245
VIII. 일본어선 조업 모식도	247
1. 대중형 선망어업	249
2. 이서 저인망 어업	250
3. 총합 저인망 어업	252
4. 오징어 채낚기 어업	253
5. 연승어업	254
6. 예인조 어업	255
7.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256
8. 일본조 어업	257
9. 청새치 돌봉어업	258
10. 고정식 자망어업	259
IX. 중국어선 조업 모식도	261
1. 쌍선타망어업	263
2. 단선타망어업	264
3. 위망어업	265
4. 유망어업	266
5. 우조	267
X. 수역도	269
1. 지역기구도(1)	271
2. 지역기구도(2)	272
3. 원양어업어장도	273
4.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274
5. 원양어업 어획쿼터	275

I.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정원

○ 원양산업 발전·지원, 수산업 해외투자, 어업협정 운영, 조업쿼터 확보 및 국제 규제 대응 등의 업무 수행(3개과, 33명)



□ 정 원

(단위: 명)

과 별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정원	33	1	1	2	4	10	10	1	1	3
	현원	33	1	-	3	4	10	9	2	1	3
	증감	-	-	-	1	-	-	△1	-	-	-
원양정책과	정원	13	1	-	1	1	4	4	-	1	1
	현원	13	1	-	1	1	4	3	1	1	1
국제기구과	정원	10	-	1	-	1	4	2	1	-	1
	현원	10	-	-	1	1	4	2	1	-	1
어업교섭과	정원	10	-	-	1	2	2	4	-	-	1
	현원	10	-	-	1	2	2	4	-	-	1

2. 과별 주요 업무

담당과	주요 업무 내용
원양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한·러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원양어업 생산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수입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수산기구 (22개)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수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산관련 국제협약 (31개)에 관한 사항 4. 어업협정(10개) 및 수산협력약정(6개)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한·일, 한·중, 한·러 제외)
어업교섭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5. 수산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기금

◇ 전체 규모는 690억원(일반 19 + 농특 253 + 기금 418)으로
'12년도에는 627억원 반영('11년 대비 63억원 감소, 9.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년도 (A)	'12년도 (B)	증 감	
			(B-A)	%
합 계	68,974	62,656	△6,318	△9.2
<일반회계>	1,893	2,035	142	7.5
○ 어업협정 이행	1,893	2,035	142	7.5
<농특회계>	25,275	31,821	6,546	25.9
○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	18,440	24,000	5,560	30.2
○ 원양어업활성화	3,736	4,257	521	13.9
○ 연안국과의 협력	1,999	1,964	△35	△1.8
○ 연안국과의 협력(ODA)	1,100	1,600	500	45.5
<수산발전기금>	41,806	28,800	△13,006	△31.1
○ 원양어업 관리회사	3,000	3,000	-	-
○ 원양어선 현대화	30,662	16,400	△14,262	△46.5
-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29,662)	(15,400)		
-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1,000)	(1,000)		
○ 피해보전 직불금	1,500	3,000	1,500	100.0
○ 폐업지원금	5,000	5,000	-	-
○ 해외수산시설 투자지원	1,400	1,200	△200	△14.3
○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 징수비용	244	200	△44	△18.0

Ⅱ. 원양정책 추진 방향

1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세계 28개국에 입어하여 국내 수산물 전체 생산량(313만톤)의 19%(59만톤), 수산물 수출액(18억불)의 37%(6.6억불) 차지('10년 기준)

 - 생산량(만톤) : ('96) 72 → ('00) 65 → ('05) 56 → ('10) 59
 - * 조업척수(척) : ('96) 607 → ('00) 575 → ('05) 410 → ('10) 353
 - 수출액(백만불) : ('96) 531 → ('00) 535 → ('05) 410 → ('09) 540 → ('10) 658
 - * '10년 수산물 총 수출액 1,798백만\$ 중 원양산 수산물 수출비중 36.5%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어장 자원조사 등 원양산업 활성화 기여

 - 인도양 중서부해역 이빨고기 자원조사 및 원양산업 기초조사 실시(18억원)
 -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 및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2.7억원) 및 참치선망어선 신조지원(3척/164억원)

- 적극적인 수산외교로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확보

 -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연안국과 경제협력 사업 추진
 - 키리바시, 두발루 등 남태평양 주요 연안국에 굴삭기 등 지원(5억원)
 - 능동적인 국제기구 대응을 통한 해외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
 - OECD 기후변화 워크숍 등 국제회의 유치(6회)
 - * OECD 기후변화 워크숍,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인도양참치위원회, FAO워크숍, 아·태수산위원회,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 원양자원 보호기여금 조성 등 국제기구 기여를 통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2억원 지원
 - 수산자원 보유국 등과 수산 파트너십 구축
 - 한·PNA 수산협력협의회를 개최('10.11), 키리바시 수산부 청사 건설지원 MOU 체결(5.2억원)

□ 수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 및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에 수산발전기금 용자 지원
 - 예산/업체수 : ('08) 1,369/138 → ('09) 1,400억원/140개사 → ('10) 1,340억원/145개사
 - * 수출액(백만\$) : ('90)1,513 → ('00)1,504 → ('05)1,193 → ('08)1,447 → ('09)1,511 → ('10)1,798
-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위한 김 이물질선별기(52대) 및 금속 탐지기(15대) 구입 지원
- 국제박람회 및 판촉행사 참가지원(13회/13억원)
- 한·아세안 TRQ 적용 물량에 대한 관세차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7,841톤, 102억원)

□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조업질서 구축

- (한·일 어업협상) 총 어획 할당량 유지를 통한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도모
 - 어획 할당량 60천톤('10년과 동일), 허가척수 870척('10년 900척)
 - GPS 항적 기록 보존 조업 실시시기 연기('11.3 → '14.3) 및 점검 시점에서의 어획량 추가 기재 의무 철회 등 어업인 불편 해소
- (한·중 어업협상) 양국 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측 입어 규모를 축소하여 '13년까지 등량·등척(1,600척,60천톤) 추진
 - 어획 할당량 60천톤('10년과 동일), 허가척수 870척('10년 900척)
 - * 한국 : ('10) 1,600척/66천톤 → ('11) 1,600척/64천톤
 - * 중국 : ('10) 1,750척/67.5천톤 → ('11) 1,700척/65천톤
- (한·러 어업위원회) 2011년도 러시아 수역 조업 쿼터를 명태 4만톤 등 64천톤 확보(전년대비 5.6% 증가)
 - 러시아 극동지역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등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추진 등
 - * 명태 40,001톤, 오징어 10,000, 대구 4,450, 꽁치 7,500, 기타 2,015
 - * 한국 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의 예카르마 사할린사간 투자의향서 (LOI)체결

2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내·외 수산 여건

가. 국내 수산 여건

□ 세계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 생산 적지 부재

-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세계적인 수요를 가진 품목(연어, 새우, 메기, 참치 등) 생산은 '참치(원양어업)'로 한정
-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넙치 - 세계 1위, 해조류 - 세계 4위)은 아직까지 생산 단가가 높고, 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미흡

□ 국내 수산물 생산 증대는 한계에 봉착, 수요는 지속 증대

- 연근해 어업은 자원관리를 위한 조치 등으로, 양식은 적지 부족, 환경오염 문제 발생 등으로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는 무리
- 특히, 원양어업은 자원 자국화 심화에 따른 어장 상실 가속화 등으로 생산량은 계속 감소 추세

- 지속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로 수입 냉동 수산물 위주로 수요 충당

* 수산물 소비량 : ('02) 44.7kg/연/1인 → ('04) 49 → ('06) 54.2 → ('08) 55

* 수산물 수입량 : ('06) 140만톤 → ('08) 419 → ('09) 408 → ('10) 472

□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탄력성 미흡

- 국내 글로벌 기업이 없어, 시장 개방시 국가도 기업도 외국 거대 기업 종속자로 전략 우려

* NAFTA 사례 : 멕시코인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이 NAFTA 이후 7배 상승 → 카길 등 거대 곡물회사들이 옥수수 유통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시,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금지 예상

나. 원양산업

□ 원양어업 중심으로 발달하여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

- 원양어업(353척)은 국내 수산물 전체 생산량 313만톤의 19%(59만톤, 1.1조원), 수산물 수출액 18억불 중 36%(6.6억불수준) 차지
- 합작 수산물 생산 등을 합하면 연간 약 100만톤(추정) 수준

□ 반면, 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어려움에 봉착

- 전 세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82%)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고, 자원 부국(연안국)은 합작 또는 직접 투자로 입어 방식을 전환 요구
- * '87년 미국수역(명태)어장 등 7개 어장에서 철수, '93년 러시아 오토츠크 공해 조업 금지 등

- 어선(척)/생산(천톤) : ('70) 278/90 → ('80) 750/458 → ('90) 810/925 → ('00) 535/651 →('10) 353/592

* '10 현재 원양어선 353척 평균 선령 : 28년

- 원양 어선 2척 이하 업체 62%, 자본금 2억 미만업체 52%

□ 해외 수산자원 개발·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그간 일부 업체는 소규모 해외수산자원 개발 등 추진

* '97년 이후 해외 수산분야 총 투자액 (35,461천\$) : 전체 해외 투자액 743억\$의 0.01%

- 수산자원 보유국 등과 수산 파트너십 구축

- 국제수산기구와 적극 협력으로 우리어선의 안정적 조업환경 확보

* 2011년 남극 수역에 우리 어선 입어척수 확대 : 4척 → 5척

* 대서양 수역내 눈다랑어 어획쿼터 추가 확보 : 800톤

다. 수산물 수출

□ 최근 수산물 수출은 달러화 강세 등으로 증가 추세

- 수산물 수출량은 '88년 19억불을 정점으로 감소 후 증가추세, 최근 수출진흥정책 추진 및 달러화 강세 등에 기인함

* 수출규모: '88년(19억불) → '97년(15) → '03(11) → '06(10) → '08(14) → '09(15) → '10(18)

* 업종별 수출 : 원양어업(36%), 연근해 및 양식(59%), 원료 수입후 가공 수출(5%)

□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일본 49%, 중국 9.6%, 미국 8.5%, 태국 8.4% 차지

- 최근 대일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대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감소

* 일본수출 : '97년(1,000백만불) → '03(740) → '08(687) → '09(734) → '10(859)

* 중화권 수출 : '97년(9.8백만불) → '03(129) → '08(222) → '09(177) → '10(280)

- 일본 등 수출 시장(국가)은 원어 또는 저차가공 중심으로 발달

* 주요 수출 품목 : 참치, 활넙치, 김, 전복, 굴

□ 수산물 40백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7개 업체이며 주로 저차 가공

- 참치(374백만불), 오징어(114), 김(105), 넙치(70), 굴(66) 순서 등

- 국내 수산가공산업 침체로 인해 고차 가공품(통조림, 연육 등) 수출은 담보, 저차 가공품(냉동, 냉장) 수출은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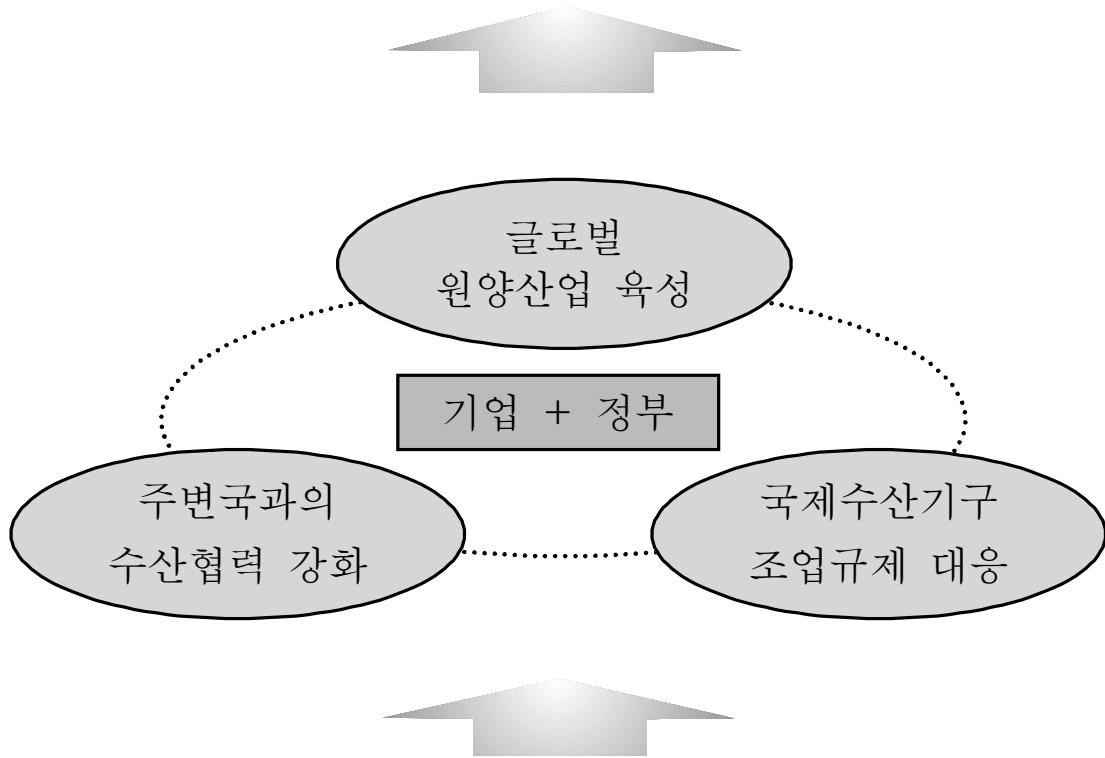
* 고차가공품 : '97년(611백만불) → '03(435) → '08(430) → '09(439) → '10(445)

* 저차가공품 : '97년(882백만불) → '03(676) → '08(1,025) → '09(1,072) → '10(1,266)

3 기본 추진 방향 설정

비전 및 목표

해가 지지 않는 수산 강국 실현
〈원양산업 생산량 100만톤, 수산물 수출 21.5억불 달성〉



기본 방향

- 자원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 수산물 생산 거점 확보
- 세계속의 우리 기업 생산 수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 수산협력을 통한 EEZ어업질서 확립 및 안정적 쿼터 확보

Ⅲ. 과별 업무추진 계획

원양정책과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19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21
3.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23
4.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24
5.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25
6.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26
7.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27
8.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31

《참고》

《1- 1》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33
《1- 2》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36
《1- 3》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조업 실적	37
《1- 4》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38
《1- 5》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39
《1- 6》 원양어업 생산 추이	42
《1- 7》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43
《1- 8》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44
《1- 9》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45
《1-10》 원양업체 현황	46
《1-11》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현황	48
《1-12》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현황	49
《1-13》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50
《1-14》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51
《1-15》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52
《1-16》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53
《1-17》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	54
《1-18》 201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55

원양 - 1 해외 신어장 개발지원 및 자원조사

가. 현 황

- '94년 해양법협약 발효로 200해리 해양 분할 및 자원 자국화 등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규제 강화로 새로운 해외어장 확보 애로
 -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이후 152개 연안국 중 125개국의 EEZ 선포와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이 강화
 - '90년대 810여척이던 우리원양 어선이 '10년 현재 353여척으로 절반이상 줄어들고 있는 등 원양어업 환경은 아주 어려운 상황
- * 어획량 감소 및 유가급등 등 원양업계 경영악화로 업계 단독 해외 신어장 자원조사 실패시 위험부담 가중으로 투자기피

□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비 현황(총 22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8	15	29	29	29	22	20	26	18	18	14

나. 추진실적

- '01년부터 '10년까지 '01~'10년(21개수역, 214억원)까지 추진하여 현재 8개 수역에 대해서 상업 조업을 추진 중임
 - '02년부터 8개 수역에 대하여 약 185척의 원양어선이 약20만톤 (2,328억) 생산·성과

(단위 : 톤/백만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척 수	185	21	20	24	21	22	25	27	25
어획량	199,919	10,966	22,490	26,479	41,117	15,691	20,772	36,640	25,764
생산고	232,865	14,892	29,562	31,102	50,622	14,185	23,810	42,121	26,571

□ '10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 결과 및 평가(3개수역)

- FAO 51해구 : 이빨고기, 체르네 등 고가어종이 분포하는 어장으로 연중 상업조업 가능성 확인
- FAO 47해구 : 빙금눈돔, 남방 돛돔 등 고가어종 서식, 대서양 중부 전갱이 어장과 연계할 경우, 추가어선 투입 등 채산성 있는 수역으로 평가
- 대서양 중부 : 저가 어종이 어획과 불규칙한 해저가 형성되어 있어 어망·어구 손실 발생 등 상업조업 가능성 희박

다. 추진계획

□ 인도양 서남부(FAO 51해구)수역에 대한 원양어업 신규허가

- 2009~2010년 자원조사 사업으로 어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인성실업 시험 조업선에 대한 신규어업허가 조치

□ '11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추진 계획(3개수역)

- 북태평양공해 / 대형기선저인망수협(트롤 2척/채낚기 2척) : 연근해 오징어의 급격한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 새로운 어장개발 필요
- FAO 47해구(SEAFO수역) / 동원산업(트롤 1척) : 2010년 사업에서 남방 돛돔 등 다양을 어종을 상당 어획 등 SEAFO의 조업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2차 사업 추진
- FAO 41·47해구(대서양 중부) / 승진수산 :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선(30척)들의 채산성 있는 조업을 위해 휴어기간 중 대서양 남부 수역 어장개발

원양 - 2 러시아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 확보 추진

가. 현 황

- 러시아 경제수역(EEZ)은 우리 명태트롤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
 - '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로 러시아 EEZ 조업 시작
- 러시아는 명태 자원감소 및 자원보호를 이유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불규칙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추세
 - * 명태 TAC 동향 : ('06)1,060 → ('07)1,310 → ('08)1,500 → ('09)1,446 → ('10)1,582 → ('11)1,649
- '91년 한·러어업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어업위원회를 개최(20차례) 하여 정부쿼터 배정 및 입어조건 등 협의

(단위 : 천톤)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쿼터	100	155	77	77	74	74	67	56	54	61	59	51	32	38	39	34	55	60	67	64

* 입어쿼터 어종(8종) :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가오리, 청어, 복어, 가자미

나. 추진 실적

- '08.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가 과거 4만톤 수준으로 회복
- 제20차 한·러위원회('10.12/모스크바) '명태쿼터 40천톤' 확보 (추가 쿼터 7천톤(하반기 확보 협의))
 - 러측 관심사항인 「IUU 어업방지 협정」과 우리측 관심사항인 「명태 조업쿼터」를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 계기 마련
 - * 명태 쿼터(확보) : ('08)28,500톤 → ('09)39,000톤 → ('10)46,800톤 → ('11)40,001톤

□ 2011년 러시아수역 주요어종별 쿼터 확보현황

(단위 : 톤/달러)

구분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가오리	가자미	청어	복어
쿼터	4,0001	4,450	7,500	10,000	800	500	600	115
입어료	336	385	101	96	134	269	100	81.5

다. 추진 계획

□ 러시아 수역 명태 등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

- '11년도 외국 배분 쿼터 유보물량 1만톤(추정) 중 7천톤 확보에 주력(5월 이후)

* 쿼터료 경쟁 우위에 있는 일본과 추가 쿼터 확보 경쟁 예상

-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11.11, 서울)에서 '12년도 쿼터 확보

□ 한·러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방지협정의 실질적 이행 실현

- 자국산(産) 수산물 적재 러시아 선박의 제3국 경유, 제3국적선 IUU 수산물 교역 차단 등을 위한 규제절차 도입('11.상반기)
 - '11.2월부터 관련 정보 제공 및 구체적 논의(규제절차)를 위한 'IUU 어업 방지협정 이행 실무회의' 개최('11.5월, 10월)
- 수산물 수출입 관련 통계자료(품명, 중량, 금액 등) 정기적 제공

□ 어업협정 체결 21년에 걸맞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협력 활성화

- 조선소, 선박수리, 냉동창고, 가공공장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러시아 대표단 방한 및 투자 설명회 개최('11.8)
- 우리업체(북양트롤위 소속 5개사)의 투자진출 구체화

원양 - 3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가. 현 황

- 참치 연승 등 전체 원양어선 353척중 선령 21년 이상되는 어선은 329척이며, 이중 31년이상 선박도 130척으로 선박 및 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국제경쟁력 약화

○ 원양어선 선령별 현황

구 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원양어선(척)	353	5	4	6	9	156	43	130

나. 추진 실적 및 계획

-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북양트롤, 오징어 채낚기, 해외 트롤업종의 어선 129척 중 24척의 노후선박을 대상으로 설비 현대화 투자계획 수립('08)

○ 연차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비 (척/백만원)	24척/24,000	1척/1,000	1척/1,000	1척/1,000	1척/1,000	20척/20,000

*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척수조정 가능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노후어선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노후원양어선 저선령화사업 : 신조대체, 중고선 도입 지원

-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업종의 노후선박 설비현대화 사업으로 확대 지원

원양 - 4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가. 현 황

- 중소기업규모의 원양선사들이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가 어획물 운반·가공·판매 등을 전담함으로써 전문화, 규모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나. 추진실적 및 계획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07.8)으로 원양어업관련회사 지원 근거 마련
 - * 원양어업관련회사 : 원양선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공동 수집·보관·운반·판매
- 예산지원(용자)을 위한 원양어업관련회사 실태 조사('09.6)
- 연차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한미FTA 발효 1차년도	한미FTA 발효 2차년도	한미FTA 발효 3차년도	한미FTA 발효 4차년도	한미FTA 발효 5차년도
총사업비(백만원)	20,200	5,000	3,000	4,000	4,000	4,200

* 원양어업 관련회사 지원 사업은 한·미 FTA 협상 발효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인도네시아트롤과 대서양트롤 등 2개소에 지원(개소당 용자금 101억원)
 - 개소당 101억원 : 가공공장 35억원, 운반선구입 21억원, 운영자금 45억원
 - 지원조건 : 운반선 등 시설자금(용자 70%, 자담 30%, 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 운영자금(용자 100%, 연리 3%, 1년상환)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인도양 및 대서양트롤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지원효과 분석 후 결과가 좋을 경우 타 업종으로 사업 확대 지원

원양 - 5 해외 수산시설 투자 지원

가. 현 황

-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 등 해외수산시설 투자로 연안국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해외 어장 및 식량확보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
- 국내적으로 고유가, 수산자원감소, 양식장 과다개발, 원양어업 여건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 향후 국가간 식량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식량 기지를 조기구축,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

나. 추진실적

-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10억원, 용자)
- 인도네시아 새우양식장 건립시설에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양식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생산 1,809톤, 매출 6,884천\$)

다. 중장기 정책방향

- 해외수산시설에 대한 건축비 및 시설비의 용자지원으로 해외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양산업기반구축에 기여토록 추진

라. '11 추진계획

- 해외양식·유통·가공 등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지원 사업 추진
-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 계획(14억원)
 - 2개소 × 875백만원 × 용자 80% = 1,400백만원

원양 - 6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

가. 현 황

- 1979년 원양어선계획조선사업을 1989년까지 지원한 이후 신조대체가 전무하여 어선의 노후화로 원양어업의 기반상실 우려
- 선박 안전성 확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3년부터 신조 대체사업 지원추진
 - 원양어선 선령(353척) : 20년이하 24척(7%), 21년이상 329척(93%)

나. 추진실적 및 '11년 계획

- 지원내용
 - 21년이상 노후된 원양어선의 신조대체 자금 융자(신조대체 70%)
- 지원실적
 - 참치선망어선 신조대체 : 4척 건조
 - '04년 1척, '06년 1척 건조, '09년 1척 건조
 - 저선령 중고선 도입('07지원 개시) : 5척 도입
 - '07, '08년에 참치연승 중고선 각 1척, '09년에 참치연승 중고선 3척 도입
- '11년도 추진계획
 - 선망신조('10~'11, 2개년) 준공 2척

다. 향후 추진방향

- WTO-DDA 수산보조금 폐지 및 감축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으로 사업 수요의 적극 창출로 생산수단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원양 - 7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 관리

가. 현 황

□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

- '97년 수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 후 생산량 정체,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매년 수입 증가

※ 수입액(백만 \$) : ('04)2,261 → ('05)2,384 → ('07)3,056 → ('08)3,097 → ('09)2,895 → ('10)3,458
 (증가율 %) (15.3) (5.4) (10.3) (1.3) (△6.5) (19)

- '10년도 기준 주 수입대상국은 중국(29.5%), 러시아(15.0%), 베트남(10.5%), 일본(6.7%), 미국(4.3%) 순이며, 동 5개국의 수입액(2,319백만\$)이 전체 수입액의 67% 점유

- 주요 수입품목은 명태(11.7%), 소금(6.4%), 새우(6.2%), 낙지(4.3%), 조기(4.2%)순이며, 동 5개 품목의 수입액(1,160백만\$)이 전체 수입액의 33.5% 점유

□ 수산물 양허 및 관세율 인하 압력으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불가피함

- 관세조치를 통한 민감품목 보호수단의 점진적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관세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 조정관세 품목 : '97(27개) → '06(10개) → '07(9개) → '08(9개) → '09(9개) → 10(9개)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및 WTO/DDA의 협상동향에 따라 수산부문의 대외여건 변화 대응

□ 수산물 수입물량이 증가하며, 다양한 수산물 가격 형성으로 낮은 가격 수입신고를 하여도 적발이 곤란

나. 추진실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TRQ) 제도를 운영하여 수산물 수입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조성
 - 한-아세안 TRQ적용 물량에 대한 관세차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7,841톤, 102억)
 - ※ 새우류 4품목 7,300톤 및 냉동갑오징어 2,000톤 등 총 9,300톤
 - 한-EFTA 고등어 TRQ 물량(500톤) 국내판매 예상수익금 36천만 원을 대형선망조합에서 고등어 소비홍보 등에 사용
 - 한-EU 수산물 TRQ 관리제도·운영방안 검토 및 고시제정 추진
- 탄력관세 도입을 통해 국내 어업생산 경쟁력 제고에 노력
 - 2011년도 수산물 조정관세를 9개 품목에 적용하여 민감품목 보호
 - ※ 수산물 조정관세('10→'11) : 활뱀장어(27), 활돔·활농어(31), 활민어(31→28), 냉동명태(30→25), 냉동꽂치(31→28), 냉동민어(50→47), 새우젓(42), 냉동오징어(22)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정보 조사 사업 추진
 - 주요 수산물 수입국(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 현지 유통경로 및 가격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수산물 가격조사('07 aT, '08 한국수산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09, 10 aT)
 - 수산물 현지 수출가와 국내 위판가 조사비교 결과를 관세청 '저가신고조기경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저가신고 예방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세계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수입 관리체제 구축·운영
 - 지속적으로 각국과 FTA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수입관리 방안 마련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 및 WTO/DDA의 협상 동향에 따라 조정관세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수산물 수입증가율,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과 기타 업계요구사항, 외국과의 어업 및 교역실태 등을 고려 추진
- 한-아세안, 한-EFTA FTA TRQ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 수립
 - TRQ 운영결과를 기초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개선 방안을 마련
 - 한-EFTA TRQ 운영 관련 고시정비를 통해 대행기관의 수입이익금 집행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FTA, DDA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의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 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관세청 “저가신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통계모형 및 수입기준 가격 설정”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
 -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가 수입신고로 인한 국내 유통질서 문란행위 차단하여 국내 어업인을 보호

라. '11 추진계획

□ FTA 체결에 따른 TRQ 물량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 한-EFTA TRQ '11년도 물량 도입(냉동고등어 500톤)하여 공매 실시
- 한-아세안 TRQ물량 9,300톤에 대한 두 차례의 입찰시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증대

□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품목수 및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신청

- '12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 반영을 위한 기획재정부 실무협의를, 관세심의위원회 상정 등 절차 추진 ('11 하반기)

※ 조정관세 품목현황 : ('06)11개 → ('07)9개 → ('08)9개 → ('09)9개 → ('10)9개 → ('11)9개

□ 수산물 저가신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수산물 수입정보조사 보조사업 추진

- 사업예산 : 140백만원(수발기금, 한국수산무역협회)

○ 조사대상 품목

- 중 국 : 민물장어, 활홍민어, 신선냉장대구, 조미오징어, 북어, 냉동낙지, 마른명태, 염장새우, 활농어, 냉동조기, 활낙지
- 러시아 : 활대게, 냉동명태
- 베트남 : 냉동주꾸미, 조미쥐치포

□ 기타 추진계획

- 수산물 수출입 교역 정보인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매월 작성하고, 매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를 작성하여 배부

※ 관련실국, 지자체, 과학원, 검사원 및 수출입관련 업계 등에 제공(150부)

원양 - 8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가. 현 황

□ 배경 및 경위

- '94년 UN 해양법 발효이후 연안국들은 자국어업 육성 등을 위하여 외국어선의 직접입어를 제한하고 합작사업에 의한 현지투자 요구
- 아국 어선들은 원양어업의 현지화로 해외어장 및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적을 변경하고 합작사업으로 전환
- '95. 12.6 이전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나 해외합작어업 장려 및 기업보호 등을 위하여 관세감면 제도 도입

□ 해외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업체

- 해외합작원양어업 관세감면 추천은 5개국 21개사 35척이 대상임
- 명태 16개사 24척, 오징어 2개사 5척, 홍어 1개사 3척, 기타 2개사 3척
* 조정관세('11 현재) : 명태(25%), 오징어(22%), 홍어(20%), 대구·넙치·가자미 등(10%)

<합작업체>

구 분	계	러시아	알젠티	멕시코	칠레	캐나다
조업선	35	24	5	2	3	1
업체수	21	16	2	1	1	1

□ 관세감면 추천절차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2011-20호 농식품부고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본선인수증, 선하증권, 적하목록, 포장명세서, 일일어획보고서, 물품구매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 → 확인 후 추천서 발급

나. 추진실적

□ 관세감면 물량 반입

- '96~'02까지 약 5천톤~5만톤 수준에서 오징어, 홍어 등이 반입 되다가 '03년 북양명태 트롤이 러시아 합작으로 전환하면서 매년 18만톤 수준에서 반입되고 있음
- 전체 관세감면 추천(반입)량의 90%이상을 명태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명태트롤에서 부수어획되고 있는 어종(대구, 가자미 등)임

<관세감면물량 반입(최근5년)>

(단위 : 톤)

구분	계	명태	새우	오징어	홍어	기타
2006	148,933	130,617	39	2,998	2,565	12,714
2007	204,639	194,502	22	2,725	1,306	6,084
2008	173,088	165,934	-	1,635	894	4,625
2009	145,369	137,615	-	1,876	236	5,642
2010	179,790	174,629	-	73	74	5,014

다. 추진계획

□ '11년도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계획

- 기획재정부 협의물량

(단위 : 톤)

구분	합계	명태	오징어	홍어	기타
2011	218,484	204,744	3,600	480	9,660

- 전년 관세감면 추천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어선별·어종별 최소 물량을 배정하고 잔량은 유보
- 합작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차원에서 상반기 중 선박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1/2을 회수하고 10월말까지 투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1/2 회수하여 추가 반입 가능 업체에 전배 등

《 참고 1-1 》

다랑어의 분류 및 형태적 특징

○ 농어목, 고등어과 및 황새치과(9속 18종)



○ 고등어과 (Family Scombridae)


학 명	국 명	영 명
<i>Thunnus albacares</i>	황다랑어	Yellowfin tuna
<i>Thunnus thynnus</i>	참다랑어	Northern bluefin tuna
<i>Thunnus obesus</i>	눈다랑어	Bigeye tuna
<i>Thunnus alalunga</i>	날개다랑어	Albacore
<i>Thunnus maccoyii</i>	남부참다랑어	Southern bluefin tuna
<i>Thunnus tonggol</i>	백다랑어	Longtail tuna
<i>Katsuwonus pelamis</i>	가다랑어	Skipjack tuna
<i>Euthynnus affinis</i>	점다랑어	Kawakawa
<i>Auxis thazard</i>	물치다래	Frigate tuna
<i>Auxis rochei</i>	몽치다래	Bullet tuna
<i>Scomberomorus commerso</i>	동갈삼치	Narrow-barred Spanish mackerel
<i>Scomberomorus guttatus</i>	점삼치	Indo-Pacific king mackerel

○ 황새치과 (Family Xiphiidae)

학 명	국 명	영 명
<i>Makaira mazara</i>	녹새치	Indo-Pacific blue marlin
<i>Makaira indica</i>	흑새치	Black marlin
<i>Tetrapturus audax</i>	청새치	Striped marlin
<i>Tetrapturus albidus</i>	백새치	White marlin
<i>Istiophorus platypterus</i>	돛새치	Indo-Pacific sailfish
<i>Xiphias gladius</i>	황새치	Swordfish

○ 주요 다랑어류의 형태 및 특징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징 및 용도
 <p>◆ 눈다랑어(메바찌, Bigeye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수온 13~29℃, 수심 0~250m의 표층 근처 또는 중층 수역에서 생활 ○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 체장 236cm, 체중 197 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 ○ 가격 : 냉동40kg이상 800 ~2,000 엔/kg 25kg이상 500~1,000엔/kg, 15kg이상 300~45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40kg이하 2,000~10,000엔/kg
 <p>◆ 황다랑어(기하다, Yellow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서식수온은 18~31℃로 다른 종에 비해 비교적 넓은 수온대에 적응 ○ 먹이는 주로 어류,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체장 208cm, 체중 176.4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선망선에 20~30% 부수어획(통조림) ○ 가격 : 냉동25kg이상 450~700엔/kg, 15kg이상 300~400엔/kg, 15kg이하 250~300엔/kg, 신냉 700~2,000엔/kg
 <p>◆ 남방참다랑어(미나미마구로, Sou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층 원양성, 대양성으로, 남대평양의 30°S 남부에 분포 ○ 5~20℃ 사이의 저온에 서식 ○ 먹이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등을 기회적으로 포식 ○ 최대 체장 200cm, 체중 200kg ○ 연승선의 주요 채포어종(횃감용) ○ 가격 : 냉동40kg이상 1,500~3,500엔/kg 10~40kg 800~1,500엔/kg

명칭 및 모양	주요 특성 및 용도
 <p>◆ 참다랑어(혼마구로, Northern bluefin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온대, 아한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태평양(일본 북부 아오모리)과 대서양(지중해)에 사는 2개 그룹으로 구별 ○ 해수면 바로 아래(아표층)에서 유영 ○ 먹이는 주로 군집 소형 어류(멸치, 꽁치, 청어 등), 오징어류, 갑각류등 ○ 최대 체장 3m, 체중 560kg(북대서양) ○ 과거 연승선에서 일부 어획(횃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양 지중해 수역에서 조업 쿼터 감소로 선망선 1척 조업(횃감용) ○ 가격 : 냉동 1,500~3,000엔/kg 신냉 5,000~20,000엔/kg
 <p>◆ 날개다랑어(돔보, Albaco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북위 45~50°, 남위 30~40°)에 광범위하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두 계군으로 크게 나누어 짐 ○ 표층 근처 ~ 중층(380m ~ 600m)에 서식 ○ 최대 체장 127cm, 체중 40kg ○ 연승선의 부수 어획종(저가 횃감용) 선망선에 일부 부수어획(통조림) ○ 가격 : 냉동 2,000~2,900\$/톤(가공용) 신냉 200~300엔/kg
 <p>◆ 가다랑어(가쓰오, Skipjack tu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 대표적 부어성 어종으로 서식 수온은 15~30℃이며,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며, 특히 수온 전선대에 많이 서식 ○ 먹이는 주로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등 ○ 최대 체장은 108cm ○ 선망선의 주요 채포종, 연승선의 부수어획종(통조림캔 및 가쓰오) ○ 가격 : 700~1,100\$/톤

《 참고 1-2 》

해외어장 자원조사 현황

(단위 : 억원)

조사기간	조사선	업 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소요 예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 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꽂 치	3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꽂 치	4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꽂 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 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원양근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 승	47해구 공해	메 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미드웨이	참 치	9
'07.7~8	상업어선 2척	트 롤	중부베링	명 태	6
'08.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6.5
'08.9~11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7~9	상업어선 1척	트 롤	FAO 41해구	민대구	4.3
'09.6~9	상업어선 1척	트 롤	베트남 EEZ	조기류	3.2
'09.8~11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체르네	7
'10.8~12	상업어선 1척	트 롤	SAEFO	전갱이류	4
'10.3~'11.2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5.2
'10.3~6	상업어선 1척	트 롤	기니아 EEZ	돔류	4.8

《 참고 1-3 》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 조업상황

○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및 입어료

(단위 : 달러 / 톤당)

어종별	입어료(\$/톤)		조업 쿼터(톤)	
	'10	'11	'10	'11
합 계			67,467	63,996
명 태	325	336	46,800	40,001
대 구	365	385	4,484	4,450
청 어	100	100	768	600
가오리	134	134	800	800
가자미	269	269	500	500
꽂 치	101	101	7,500	7,500
오징어	93.5	96	6,500	10,000
복 어	81.5	81.5	115	115

○ 2010년 러시아수역 정부간 어획쿼터 소진실적

(단위 : 톤)

구 분	수 역	업 종	조업척수	쿼 터	소진량
계		4개업종		67,467	63,731.3
명 태	북서베링	중층트롤	6	46,800	46798
대 구				634	633
청 어				768	0.3
가자미				500	0
대 구	북서베링	저 연 승	2	3,850	3,849
가오리				800	623
꽂 치	남 쿠 릴	봉 수 망	17	7,500	6,694
오징어	연 해 주	채 낚 기	67	6,500	5,126
복 어				115	8

《 참고 1-4 》

연도별 조정관세율 현황

품명	기본관세 (%)	조 정 관 세 (%)																		증감 (A-B)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	2011 (B)		
		11 품목	14 품목	20 품목 (상하)	27 품목 (상하)	23 품목	14 품목	14 품목	14 품목	12 품목	12 품목	12 품목	11 품목	10 품목	9 품목	9 품목	9 품목	9 품목	9 품목		
활벨장어 0301-92-9000	10	-	-	-	-	50	30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30% 또는 (1,908원/kg)	27% 또는 (1,879원/kg)	27% 또는 (1,879원/kg)	27% 또는 (1,879원/kg)	27% 또는 1,879원/kg)	-	
활 민어 0301-99-4000	10	100	100	100	100	100	80	70% 또는 (5,122원/kg)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4,390원/kg)	55% 또는 (4,024원/kg)	50% 또는 (3,658원/kg)	45% 또는 (3,292원/kg)	45% 또는 (3,292원/kg)	40% 또는 (2,781원/kg)	36% 또는 (2,670원/kg)	34% 또는 (2,292원/kg)	31% 또는 (2,272원/kg)	31% 또는 2,272원/kg)	-	
활 농 어 0301-99-9050	10	100	100	100	100	100	80	70	65	60	55	50	45	40	38	38	34	31	31	-	
활 민 어 0301-99-9095	10	-	-	-	-	-	-	-	-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40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6 (참조기 부세 제외)	34 (참조기 부세 제외)	31 (참조기 부세 제외)	28 (참조기 부세 제외)	Δ3	
냉동명태 0303-79-1000	10	-	-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5	Δ5
냉동꽂치 0303-79-8000	10	-	-	30	-	50	50 (학공치 제외)	5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40 (학공치 제외)	36 (학공치 제외)	34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31 (학공치 제외)	28 (학공치 제외)	Δ3	
냉동민어 0303-79-9095	10	-	-	-	100	100	90	80	70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70 (참조기 부세 제외)	63 (참조기 부세 제외)	57 (참조기 부세 제외)	53 (참조기 부세 제외)	53 (참조기 부세 제외)	50 (참조기 부세 제외)	47 (참조기 부세 제외)	Δ3	
새 우 젓 0306-23-3000	20	-	-	-	100	100	70	60% 또는 (366원/kg)	60% 또는 (366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5%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50% 또는 (363원/kg)	46% 또는 (315원/kg)	42% 또는 (287원/kg)	42% 또는 (283원/kg)	42% 또는 (283원/kg)	-	
냉동오징어 0307-49-1020	10	-	-	-	30	40	40	40	40	40	35	30 (연육 제외)	27 (연육 제외)	24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22 (연육 제외)	-	

* 음영표시는 당해년도 신규적용 품목임

《 참고 1-5 》

원양어업 주요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어 류

(단위 : M/T)

	계	명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꼼치	민어류	기타돔	갈치	가오리류	기타
'91	588,661	177,392	171,975	69,344	23,301	26,034	9,017	11,655	10,153	3,204	86,586
'92	702,094	320,858	115,295	83,818	25,203	33,708	9,127	8,738	6,513	2,884	95,950
'93	539,358	217,119	74,171	67,587	24,840	40,144	14,705	8,594	5,791	3,461	82,946
'94	704,746	303,969	145,541	64,831	30,627	31,987	19,693	10,678	9,414	8,325	79,681
'95	700,735	336,810	137,848	51,951	26,821	31,321	21,254	7,168	7,423	9,734	70,405
'96	543,835	221,219	130,153	35,324	28,641	18,681	21,392	5,680	7,789	7,471	67,485
'97	598,313	215,814	115,927	61,261	31,410	50,227	27,478	3,657	11,567	7,751	73,221
'98	606,235	230,143	143,390	73,354	33,042	13,922	20,803	3,273	9,585	3,814	74,909
'99	476,441	145,720	109,780	43,255	26,558	18,159	24,444	5,978	12,866	10,030	79,651
'00	465,200	86,066	137,015	49,461	30,079	25,029	23,169	6,449	12,135	10,946	84,851
'01	568,795	199,123	137,569	58,957	31,335	20,869	22,033	4,834	3,503	8,903	81,669
'02	423,696	24,825	173,693	48,778	31,962	20,088	24,295	8,253	3,857	7,192	80,753
'03	397,196	21,890	153,328	52,192	21,839	31,219	23,401	6,604	3,264	7,441	76,018
'04	400,134	20,009	162,200	40,216	26,324	22,625	19,578	7,316	2,802	7,631	91,433
'05	439,711	26,004	171,641	52,474	24,178	40,509	18,712	7,627	2,065	5,058	91,443
'06	433,122	26,269	205,221	55,831	24,333	12,009	15,522	6,240	2,049	5,154	80,494
'07	448,335	20,109	214,934	54,040	22,827	16,976	16,593	5,689	2,483	4,780	89,904
'08	445,367	27,980	187,277	70,778	20,092	29,591	15,404	6,905	2,779	3,450	81,111
'09	493,857	38,996	257,481	36,823	21,921	22,001	15,990	6,812	2,383	4,459	86,991
'10	488,155	46,794	216,720	67,138	25,234	21,360	18,491	7,040	580	4,081	80,717

□ 갑각류

(단위 : M/T)

	계	남빙양새우	기타새우	계류	새우류	기타
'91	2,262	360	1,897	5	-	-
'92	2,598	709	1,410	-	-	479
'93	4,453	3	1,380	45	-	3,025
'94	4,142	-	902	152	-	3,088
'95	2,194	-	737	746	-	711
'96	1,046	-	792	205	-	49
'97	666	251	287	114	-	14
'98	2,252	1,916	216	120	-	-
'99	1,898	52	1,769	64	-	13
'00	6,534	4,499	1,835	192	-	8
'01	5,233	1,650	1,852	30	-	1,701
'02	13,663	12,965	275	5	-	418
'03	20,927	20,411	162	101	6	247
'04	25,648	25,212	104	176	-	156
'05	28,842	28,678	26	82	-	56
'06	33,807	33,677	43	32	-	55
'07	37,250	37,074	53	95	-	28
'08	35,522	35,441	8	6	14	53
'09	29,588	29,396	5	4	3	180
'10	36,057	35,843	82	3	22	107

□ 연체동물

(단위 : M/T)

	계	오징어류	갑오징어	문어류	한치류	기타
'91	282,610	270,686	10,749	807	-	368
'92	319,964	316,732	1,994	297	-	941
'93	197,660	194,952	1,615	498	-	595
'94	178,377	176,171	1,505	544	-	157
'95	194,395	193,124	906	346	-	19
'96	173,803	172,435	991	357	-	20
'97	230,424	227,016	3,174	54	-	180
'98	114,110	112,291	1,384	336	-	99
'99	313,070	309,195	1,445	2,311	-	119
'00	179,533	177,843	824	457	-	409
'01	165,029	163,092	1,076	92	-	769
'02	142,987	141,352	1,100	87	-	448
'03	126,468	121,945	3,633	217	-	673
'04	73,618	69,999	2,882	557	-	180
'05	83,543	81,172	1,908	80	362	21
'06	172,255	170,211	945	550	449	100
'07	227,247	223,338	1,315	381	2,165	48
'08	185,293	181,780	1,310	19	1,649	535
'09	88,505	84,652	1,993	721	1,080	59
'10	67,904	65,416	1,282	15	1,131	60

《 참고 1-6 》

원양어업 생산 추이

□ 업종별 · 연도별

(단위 : 톤)

	계	참치연승	참치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트롤	해외트롤	기 타
'70	89,621	71,363	-	-	-	18,258	-
'80	458,209	112,673	544	1,688	258,905	63,676	20,723
'90	919,312	69,524	173,343	88,843	312,218	161,650	113,734
'95	897,324	52,586	175,464	152,935	337,632	141,154	37,553
'98	722,597	67,467	200,905	82,158	231,210	113,600	27,257
'99	791,409	48,703	142,091	263,312	147,379	156,014	33,910
'00	651,267	58,387	170,025	159,726	87,830	133,100	42,199
'01	739,057	65,526	178,072	127,411	198,541	132,261	37,246
'02	580,346	61,631	206,150	94,760	24,998	160,623	32,184
'03	544,591	48,794	190,452	80,871	23,401	161,720	39,353
'04	499,400	53,667	184,985	25,010	21,985	183,738	30,015
'05	552,096	49,619	210,777	28,144	26,726	187,929	48,901
'06	639,184	46,149	249,340	87,668	26,373	209,546	20,108
'07	712,832	45,438	254,897	118,139	20,259	245,973	28,113
'08	666,182	37,922	249,137	109,186	22,214	208,447	39,276
'09	611,950	43,907	283,380	43,342	36,524	174,380	30,417
'10	592,116	41,697	278,227	31,759	49,597	158,149	32,687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시험조업을 실시하여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서양 오징어의 풍흉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함

업종별로는 참치연승어업이 약 5만톤, 참치선망어업이 25만톤 내외 수준으로 중서부태평양 등에서 조업하고 있고, 북양트롤어업은 2002년부터 러시아 민간쿼터 미확보 및 어선세력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정부간 어획쿼터 추가확보(2만톤→4만톤)로 생산량 증가

《 참고 1-7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생산량

(단위 : 톤)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공치	기 타
'70	89,621	71,363	-	-	-	18,258
'80	456,549	124,753	189,774	4,687	-	137,335
'90	919,312	241,110	311,703	233,331	17,762	115,406
'95	897,324	227,173	336,810	193,017	31,321	109,003
'98	722,597	267,286	230,143	112,291	13,922	98,955
'99	791,409	189,709	145,720	309,195	18,159	128,626
'00	651,267	225,795	86,066	177,843	25,029	136,534
'01	739,057	239,443	199,123	163,092	20,869	116,530
'02	580,346	267,462	24,825	141,352	20,088	126,619
'03	544,591	239,102	21,890	121,945	31,219	130,435
'04	499,400	238,624	19,997	69,999	22,625	148,155
'05	552,096	258,062	26,004	81,172	40,509	146,349
'06	639,630	295,465	26,269	170,214	12,009	135,673
'07	712,832	300,268	20,109	223,338	16,976	152,141
'08	666,182	286,889	27,980	181,780	29,591	139,942
'09	611,950	327,181	38,996	84,652	22,001	139,120
'10	592,116	319,712	46,794	65,416	21,360	138,834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원양어획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 약 1백만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어종별로는 참치류가 약 30만톤으로 꾸준히 어획되고 있고, 명태류는 러시아 쿼타량에 따라, 오징어류는 포클랜드 수역의 어황에 따라 어획량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임

《 참고 1-8 》

원양참치어업 생산·수출 현황

(천톤, 백만\$)

		생산 및 수출	'03	'04	'05	'06	'07	'08	'09	'10
수산물 총생산	생산량		2,487	2,519	2,714	3,032	3,271	3,363	3,182	3,127
	수출	물량	425	406	412	376	536	613	652	793
		금액	1,129	1,279	1,193	1,089	1,226	1,445	1,511	1,798
< 원양 >	생산량		545	499	552	639	711	666	612	592
	수출	물량	226	191	217	258	280	258	312	274
		금액	365	395	380	410	471	506	540	658
• 참 치	생산량		239	239	259	295	300	287	327	320
	수출	물량	121	101	110	167	103	109	175	173
		금액	231	261	232	282	240	332	355	478
-참치연승 (횃감용)	생산량		49	54	49	46	45	38	44	42
	수출	물량	37	40	32	29	20	26	25	29
		금액	169	208	160	150	125	199	211	301
-참치선망 (가공용)	생산량		190	185	210	249	255	249	283	278
	수출	물량	84	61	78	138	83	83	150	144
		금액	62	53	72	132	115	133	144	177

- '10년 원양어업 생산량(592천톤)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9% 차지
 - 원양수출(658백만\$)은 수산물 수출액(1,798백만\$)의 37% 차지
- '10년 참치 생산량(320천톤)은 원양어업 생산량중 54% 차지
 - 참치수출(478백만\$)은 원양수산물 수출액(658백만\$)의 73% 차지

《 참고 1-9 》

원양어업 어종별·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 천\$)

	계	참치류	새우류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80	351,865	196,581	16,027	-	103,782	35,475
'90	516,880	329,357	9,921	14,315	45,427	117,860
'95	539,513	298,382	5,272	45,961	29,817	160,081
'98	529,540	318,934	1,813	24,655	44,357	139,781
'99	429,325	292,124	605	16,189	40,229	80,178
'00	538,972	350,723	2,991	39,340	54,501	91,417
'01	389,688	273,165	3,521	28,474	42,526	42,002
'02	414,478	278,377	1,353	23,237	59,390	52,121
'03	365,422	231,500	866	39,304	73,256	20,496
'04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05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06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07	471,041	239,895	10,490	66,371	112,873	41,412
'08	505,689	332,080	6,245	51,556	109,281	6,527
'09	539,688	355,428	12,291	44,574	124,528	2,867
'10	658,296	477,655	12,117	53,161	111,705	3,658

원양어획물 수출에서는 참치류가 1990년 이후 매년 약 3억불 정도가 일본시장에 수출되어 전체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면서 어황 및 환율에 따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어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오징어류도 포클랜드 어장의 생산량에 따라 수출금액의 변동요인이 됨

《 참고 1-10 》

원양업체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70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업체수	36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06	95	90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업 진출 이래 1970년 36개사로 매년 계속 증가를 보인 후 1995년 185개사를 정점으로 현재 95개사로서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 업종별 선박 추이

	계(척)	참치연승	참치선망	북양트롤	새우트롤	해외트롤	오징어 채낚기	기 타
'70	278	246	-	27	5	-	-	-
'80	750	439	2	39	112	90	13	55
'90	810	276	39	44	68	135	88	160
'95	637	226	30	36	32	157	124	32
'98	545	203	26	38	8	146	99	25
'99	550	202	26	34	3	158	105	22
'00	535	197	26	33	8	155	92	24
'01	507	193	27	30	2	147	85	23
'02	482	193	26	23	1	142	75	22
'03	464	190	27	11	1	142	71	22
'04	433	182	28	8	1	138	50	26
'05	410	177	28	7	1	123	51	23
'06	393	169	28	7	1	118	50	20
'07	387	165	28	6	-	116	49	23
'08	380	158	29	6	-	114	49	24
'09	362	153	29	5	-	101	31	43
'10	353	149	30	5	-	97	27	45

1957년 참치연승어선 1척이 인도양에 처음 진출한 이래 원양어선 세력이 매년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 810척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 353척으로 원양어업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 톤급별 선박 추이

(단위 : 톤)

	계	100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1000	1001이상
'81	770	74	36	140	218	245	57
'95	637	36	39	56	189	270	47
'96	607	23	40	57	187	256	44
'97	602	24	39	55	191	250	43
'98	545	12	35	53	168	236	41
'99	550	5	44	50	165	243	43
'00	535	4	45	46	160	237	43
'01	507	6	38	44	138	241	40
'02	482	5	34	42	134	230	37
'03	464	5	32	46	126	230	25
'04	433	6	31	43	122	207	24
'05	410	6	25	42	118	195	24
'06	393	5	25	41	111	187	24
'07	387	4	24	42	110	184	23
'08	380	4	25	41	109	177	24
'09	362	2	22	37	105	173	23
'10	353	4	19	30	103	171	26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어업 진출 이후 척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1-11 》

원양어업 업종별·톤급별 선박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톤급	계	100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2001	3001	4001	501
			이하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2000	~ 3000	~ 4000	~ 5000	톤 이상
합	계	353	4	19	30	103	138	9	8	7	4	5	16	5	1	1	3
참치연승		149	-	-	-	62	87	-	-	-	-	-	-	-	-	-	-
참치선망		30	-	1	-	-	-	-	7	8	1	3	12	3	-	-	-
북양트롤		5	-	-	-	1	-	-	-	-	-	-	1	1	-	-	2
해외트롤		97	3	17	28	25	11	1	1	-	2	2	3	1	1	1	1
오징어 채낚기		27	-	-	-	5	19	1	2	-	-	-	-	-	-	-	-
뽕수 치망		20	-	-	2	1	12	4	-	-	1	-	-	-	-	-	-
기타		25	1	1	-	9	9	3	2	-	-	-	-	-	-	-	-

원양어업 초창기에는 톤수가 비교적 작은 어선 위주였으나, 참치어업과 해외트롤 어업 진출이후 적당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선망 및 북양트롤어업 진출에 따라 1,00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도 확보하게 되었음

《 참고 1-12 》

원양어업 선령별·업종별 선박 현황

(단위 : 척)

업종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계	353	5	4	6	9	156	43	130
참치연승	149	-	2	2	4	121	10	10
참치선망	30	5	1	-	1	4	13	6
북양트롤	5	1	-	-	1	1	-	4
오징어채낚기	27	-	-	-	2	7	2	16
(오징어·외줄겸업)	(1)	-	-	-	-	-	-	(1)
꽂치붕수망	20	-	-	-	-	-	8	12
(꽂치·오징어겸업)	(19)	-	-	-	-	-	(8)	(11)
트롤	97	-	1	4	-	11	15	66
태평양	32	-	-	-	-	8	11	13
대서양	61	-	1	4	-	3	4	49
인도양	4	-	-	-	-	-	-	4
저연승	3	-	-	-	-	2	-	1
(통발·저연승겸업)	(10)	-	-	-	-	(2)	(3)	(5)
모선식외줄	11	-	-	-	1	-	-	10
원양통발	1	-	-	-	1	-	-	-

원양어선은 2010년말 현재 353척으로서 21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참치연승·참치선망은 92%, 해외트롤어선의 95%이상인 21년 이상 노후 선박임

《 참고 1-13 》

원양어업 업종별·해역별 출어 현황

(단위 : 척)

	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비 고
계	353	197	128	28	
참 치 연 승	149	109	16	24	
참 치 선 망	30	28	2	-	
오 징 어 채 낚 기	27(1)	-	27(1)	-	(원양의줄낚시겸업)
꿍 치 봉 수 망	20(19)	20(19)	-	-	(오징어채낚기겸업)
북 양 트 롤	5	5	-	-	
해 외 트 롤	97(2)	32(2)	61	4	
기 타	25	3	22	-	
· 통 발	10	-	10	-	
· 저 연 승	3	2	1	-	
· 모선식 외줄낚시	11	-	11	-	
· 원양통발	1	1	-	-	

원양어선은 전체 353척 중에서 참치어선이 179척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트롤어선이 97척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음

해역별로 보면, 태평양수역에 197척, 대서양수역에 128척, 인도양수역에 28척이 진출하고 있음

《 참고 1-14 》

원양업체별 선박 보유 현황

	'75	'80	'85	'90	'95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평균 보유 척수	9.1	9.1	5.5	5.2	3.4	3.7	3.8	4.0	3.7	3.6	3.6	3.7	3.6	3.5	3.6	3.8	3.9
업체 수	92	82	112	157	185	147	139	127	131	129	121	112	109	110	106	95	90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1개 회사당 약 8~9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1개 회사당 약 3~4척으로 감소하였음

□ 업체별 선박 보유 척수

	계	1척	2척	3~5척	6~10척	11~20척	21척이상
업체 수	90	41	13	21	8	5	2
구성비 (%)	100	45.6	14.4	23.3	8.9	5.6	2.2

2010년 현재 원양업체는 총 90개사로서 그 중 1~2척을 보유한 영세업체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트롤어업 등 기타업종이며, 11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 업종임

《 참고 1-15 》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3	827	52	775
1988	1,911	292	1,619
1990	1,513	368	1,145
1995	1,722	843	879
1996	1,635	1,080	555
1997	1,493	1,045	448
1998	1,369	587	782
1999	1,521	1,179	342
2000	1,505	1,411	94
2001	1,274	1,648	△374
2002	1,160	1,884	△724
2003	1,129	1,961	△832
2004	1,279	2,261	△1,018
2005	1,193	2,384	△1,191
2006	1,089	2,769	△1,680
2007	1,226	3,056	△1,830
2008	1,455	3,097	△1,642
2009	1,511	2,895	△1,384
2010	1,798	3,458	△1,660

《 참고 1-16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 및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필요
-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내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를 조성하여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
- 동 사업을 통한 무역기지를 활성화시켜 수산물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개요

- 단지내에서 원료공급/제품생산/포장/선적 등 일관처리체계 구축
- 사업기간/사업비 : 2009~2013
- 총사업비 : 1,321억원(국고 70% 925억원)
- 사업규모 : 부지 67,110m², 건축물 83,591m²
- 유치시설 : APT형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냉장시설, 수출입전용부두 등

□ 주요 추진일정

- 기본 계획 실시 : 2009년
- 입찰참가업체 기본설계 및 공사착공 : 2009~2010년
- 공사추진 및 입주업체 선정 : 2011년~2013년
- 공사준공 및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운영 : 2013년 5월

□ 기대효과

- 연간 생산유발효과 3,091억, 3,504명의 고용유발효과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활성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참고 1-17 》

합작사업 진출업체 현황(관세감면 추천 업체)

합작 진출국	업 체 명		진출 일시	투자사항(천\$)		조업선박(톤수)
	한국업체	합작법인		자본금	우리측(%)	
러시아 (13개사)	극동수산	Alitet	'01. 7.21	1	0.5(50)	Oriental Discover(4,407)
	대림수산	Ecarma-Sakhalin	'01. 8.20	30	15(50)	Ekarma-7(3,735) Citrus(3,206)
	성경수산	Mikcor	'02. 8.10	35.6	17.8(50)	Carolina-33(979) Nevskaya Dubrovka(3,932)
	동 남	Polluks	'02. 9. 3	0.7	0.3(49)	Yugo-Vostock(3,099) No.1 Yugo-Vostock(3,097) No.3 Yugo-Vostock(474) No.5 Yugo-Vostock(443) 1 Primavera(2,015)
	한성기업	Ussuri	'02.12. 6	1	0.5(50)	Proliv Starka(3,918) Usuri(3,728)
	신라교역	Ayan	'02.12. 9	1	0.5(50)	Proliv Longa(1,337) Mys Navarin(2,208)
	상일교역	Dalwest	'02.12.23	40	20(50)	Germes(4,629)
	오양수산	Tralkom	'03. 1.27	0.334	0.167(50)	Zaliv Zabayaka(4,986)
	인성실업	Atika	'03. 2.19	2	1(50)	Master(3,514)
	사조산업	Yantar	'03. 4. 2	0.640	0.320(50)	Yantar-1(2,146)
	조나단피셔리	Intraros	'04. 8.27	2	1(50)	Berezina(4,407)
	명성피셔리	Vosmonia	'03. 7.11	8	3.92(51)	Selikhino(738)
	청빙수산	Nordic-Ice	'07. 8. 6	3.88	1.94(50)	Mikhail Staritsyn(4,407)
알젠틴	보양사	Esperanza del Mar S. A.	'91.2.5	347	347(100)	Esperanza Dos(569) Esperanza Uno(758)
	동남	Sur Este Argen S.A.	'96.10.9	60	60(100)	501 Sur Este(512) 502 Sur Este(495)
	사조산업	Mar Argentino S.A.	'91.12.13	100	99.9(99)	Dasa 508(395) Dasa 757(383)
	한성기업	Hansung Ar S.A	'85.1.7	421	206.3(49)	Estrella 5(499) Estrella 6(499) Estrella 8(408)
우루과이	정안수산	Estellmar S.A	'98.11.17	234.4	164.1(70)	제56오룡호(444)
멕시코	에이스수산	KIMA CORPORATION SA DE CV	'09.11.26	279	186.7(67)	ANTONIA
						ALEXA
칠레	원경수산	PESQUERA BALZAK S.A.	'94.3.30	180	162(90)	Mar De Ross(24.97)
						TEARAROA RAKEI(24.75톤)
						RIO MAULE II(32.52톤)
필리핀	필코수산	필토영주수산	'97.6.14	48	48(100)	남해 227(160)

《 참고 1-18 》

201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1. 기본방향

가. 우선 지원대상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
- 신규로 출어하는 업체

나. 자금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 신어장 개발 및 수출증대 등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다. 대출대상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어장에 출어하는 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선박을 투입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자 또는 해외양식어업자)

2. 자금의 규모 및 지원조건

가. 자금의 규모

- 수협 신용자금 : 1,480억원

나. 자금운용계획

- 원양출어자금 : 1,430억원
-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운영자금 : 50억원
 단,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운영자금 신청이 없을 때에는 원양출어
 자금으로 전용지원 가능

다.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단,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
 - 금리변동으로 대출기간 연장취급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채용자
 추천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환으로 상환 및 대출처리 가능
-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 : 3.0%

3. 지원기준

가. 지원율

업체 소요액별	지 원 율	업체 소요액별	지 원 율
50억 미만	40%	150-300억 미만	50%
50-100억 미만	45%	300-500억 미만	55%
100-150억 미만	50%	500억 이상	60%

나. 지원한도액

- 융자신청한 선박의 지원한도액은 선박별 소요액에 업체별 지원
 율을 곱하여 산정
- 해외합작원양어업사업운영자금 중
 - 어선어업은 원양출어자금 한도액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에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
 - 해외양식어업은 영어자금 소요액조사 항목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에 업체별 지원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

- * 융자신청시 소요액을 영어자금소요액조사 항목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추천기관은 동 내용을 검토한 후 융자기관에 융자추천한다.
다만, 소요액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율

- 수출액이 연간 매출액대비 20%이상인 업체 또는 신어장개발 사업용 어선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율에 25%까지 추가지원 가능
- 단, 원양영어자금 지원율과 합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 자금추천 및 배정 등

- 체계적인 자금추천 및 배정으로 유희자금 최소화
- 자금추천 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양 어업인에게 지원
- 수협중앙회장은 원양 어업인과 원양 어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동 어업인에게 지원될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에 전대하여야 함
- 이 경우, 수협중앙회의 수수료는 0.2%이며, 전대취급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0.8%임

5. 기타사항

- 자금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장, 원양협회장이 정하는 별도 요령에 따른다.

국제기구과

1. 일반 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61
2.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	63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65
《참고》	
《2- 1》 FAO 수산 위원회 개요	67
《2- 2》 OECD 수산위원회 개요	68
《2- 3》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	69
《2-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0
《2- 5》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72
《2- 6》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73
《2- 7》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74
《2- 8》 '11년도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석 계획	75
《2- 9》 지역수산관리기구별 개요	77
《2-10》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91

국제Ⅱ- 1 일반국제기구에서의 수산협력 추진

가. 현 황

- 공해조업 규제 및 조업국의 합리적 자원 이용의 의무 강화 추세
 - 공해상 경계왕래성(대구, 명태 등) 및 고도회유성 어족(참치 등)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공해어업협정 채택('95.8) 및 발효('01.12)
 - UN, FAO 등에서의 각종 국제수산 규범 강화
 - 저층어업 규제 및 승선검색,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국제수산규범 강화 중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대서양 참다랑어 및 일부 상어종에 대한 무역 규제 강화 시도
 - 국제 수산기구에서의 상어, 바다거북, 바닷새의 혼획(bycatch) 및 어획물 폐기(discards)에 대한 규제 강화
- 국제수산기구 및 양자협력을 통한 국내정책 발전 및 국제협력 강화
 - FAO 수산위원회, OECD 수산위원회, APFIC(아·태 수산위), APEC 수산실무그룹을 통해 수산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국내 정책 발전에 활용
 - 녹색성장, 기후변화, 양식, 자원회복, 인증제, 유류보조금, 생태계기반 접근, 소규모 어업 등 수산전반에 걸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 한-FAO 개도국 지원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의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및 양식, 해양생태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 NOAA 차관보 방한('11.3.)을 계기로 정책분야로 협력관계 확대

나. 추진실적

- 국제수산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 참여 및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
 - UN총회 수산결의안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와 관련하여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 반영, 결의안에 따른 조치 실시
 - FAO 수산위 총회, 기국 평가(flag state performance), 부수어획(bycatch) 기술자문 회의에서 관련 논의 주도
- 국제수산기구 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
 - APFIC(아·태평양 수산위) 지역자문포럼 및 총회, 한-FAO 거버넌스 워크숍('11.6. 서울)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수산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이익 보호 및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국제수산기구 및 양자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산정책·기술 발전 도모

라. '11년 추진계획

- 국제수산규범 논의 적극 참여 및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조치 강구
 - 유엔총회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평가 등 수산결의 적극 대응
 - 상어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행동계획(Sharks-NPOA) 수립
 - OECD 수산위원회 녹색성장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여수박람회를 활용한 국내수산 위상 제고
 - 한미 수산과학기술협력사업을 통한 양국간 기술·정책 협력 강화
- '11. 12월에 만료되는 한미 수산과학기술 협력 약정 연장 및 프로젝트 관리자 파견 등 수산분야 사업 확대 추진

국제Ⅱ- 2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추진

가. 현 황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공해를 포함한 원양어업관리의 주체로 기능
 - 유엔공해어업협정의 비준('08. 2월)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14개)에 가입을 하여야만 동 기구 관리수역에서 조업가능
 - 우리나라는 12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입, 2개 기구가입 추진중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원양어업규제 강화추세
 - 자원고갈에 따른 어획능력관리 강화
 -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어획문서제도 확대 등 각종 어업관리제도 강화

나. 추진실적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협상을 통해 어획쿼타 확보('11)

	총 계	WCPFC	IATTC	ICCAT	CCSBT	NAFO
쿼터량(톤)	32,060	15,014	11,947	3,352	911	836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 참석 활동('10) : 48회
 - 우리나라 개최 : 8회
 -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제8차 회의(1월, 제주)
 - 제14차 인도양 참치위원회 연례회의(3월, 부산)
 - 개발도상국 능력개발 워크숍(4월, 서울)
 - FAO 수산위원회 저층어업 워크숍(5월, 부산)

- OECD 기후변화 워크숍(6월, 부산)
- CCAMLR 환경생태계 작업반 회의(7월, 부산)
- 아태수산위원회 지역자문포럼 및 총회(9월, 제주)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연례회의(11월, 부산)
- 국제회의 참석 : 41회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 적극 대응으로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관련 국제회의 대응 전문 인력 양성체계 확립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민간 전문가의 적극 활용 등
 - 우리의 관심 의제뿐만 아니라 공통 의제에 대하여도 기여함으로써 국위 선양
- 국제회의 국내유치를 통한 수산외교 강화 및 지역경제 기여
 - 매년 3개 이상의 국제수산회의 유치

라. '11 추진계획

- 한미협력사업 워크숍(서울), 참치합동기구회의 워크숍(서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부산), 한-FAO간 거버넌스 워크숍(서울), 한-PNA 수산협력회의(서울), ASEM 수산포럼(부산), 북태평양수산기구 제1차 준비회의(부산) 등 7개 국제회의 개최로 협상대응력 향상
 - 쿼터 설정, 조업규제 최소화 등 우리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
 - 신설중인 기구의 사무국 유치 및 양자간 어업협력 방안 모색
- 여타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입장 반영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등 43회

국제Ⅱ- 3 연안국과의 수산협력 추진

가. 현 황

- 주요연안국들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자국의 자원 관리를 강화 추세
 - 연안개발도상국은 자국수역에 입어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요구
-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나. 추진실적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추진
 - 감척어선 무상지원('02년) : 5개국 27척(약81억원 지원 효과)
 - 나우루 스쿨버스 지원('05년) : 버스 및 학용품, 버스 정비 등
 - 주요 연안국 물자공여 사업('06년 이후)
 - 예산 규모 : ('06) 246 → ('07) 350 → ('09) 400 → ('10) 500백만원
 - 지원 대상 : 우리어선 입어국 중 협력이 필요한 국가
 - 지원 물품 :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비상발전기, 무선통신기 등
- 연안국 수산관련 주요인사 초청사업
 - 기니 수산장관 초청 등('05)
 - 우루과이 항만청장, 솔로몬 수산장관 초청 등('06)
 - 알제리 수산어업자원부 장관 초청 및 수산협력MOU 체결('07)
 -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장관 초청 및 수산협력 MOU 체결('08)
-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
 - 어업협정체결(13개국) : 러시아, 일본, 중국, 솔로몬 등
 - 수산협력약정 체결(9개국) : 노르웨이, 베트남,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루과이, 브라질, 세네갈, 멕시코, 튀니지

다. 중장기 정책방향

- 연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어선의 안정적 입어 유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예산 반영계획
 - ('07) 350백만원 → ('09) 400 → ('11) 1,000 → ('13) 3,000
 - 고위인사 및 전문가 초청·교류를 확대 및 이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국제무대에서의 우호세력 육성
 - 중동 및 중남미 국가와의 수산협력을 위한 협정(약정) 체결 추진

라. '11 추진계획

- 연안국 경제협력(물자공여) 사업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지원대상 국가(4개국) : 키리바시, 투발루, 기니, 기니비사우
 - 지원내용
 - 키리바시 수산부 청사 리모델링 지원
 - PNA 사무국 건설지원 및 연안국 물자 지원
 - * 세부 품목(안) : 차량, 사무용품, 선원학교 기자재, 해양경찰 제복 등
- 주요 수산자원 부국 등과의 수산자원외교 강화
 - 참치자원 확보를 위해 PNA 8개국과의 협의체 구성
 - 제1차 수산고위급 회의 개최 → 공동협력 이슈(선원학교 가공공장 등) 개발
 - 가나 등 아프리카 연안국 및 브라질과 수산협력 MOU 체결
 - 불령 폴리네시아 입어재개를 위한 한-불 입어회담 대응방안 마련
- 양·다자간 수산협력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수산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사업의 발굴·추진
 - 연안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물자지원 사업 외에 선원교육, 양식기술 전수 등 고용창출 및 수산식량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참고 2-1 》

FAO 수산위원회 개요

가. 기구개요

- 정식명칭 : FAO COFI(Committee on Fisheries)
- 설립일 : '65.12(제13차 FAO 총회에서 설립 결정)
- 본부/회원국 : 이탈리아 로마/약190개국
- 목적 :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식량 안보에 기여
- 회의성격 : 최근 2년간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수산관련 고위 정책담당자간 회의(2년마다 개최)
- 소속 소위원회(sub-committee) : 무역 소위원회, 양식 소위원회

나. 주요기능

- FAO의 수산 및 양식분야 사업 평가
- 전 세계 수산업의 현황 파악 및 대응책 강구
- FAO 사무총장 및 UN 총회의 위임사항 수행
- 산하에 수산물 무역 및 양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사업추진 방향 논의

다. 최근 논의동향

- 불법어업 근절,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전세계 수산 현안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협정 또는 자발적 지침을 만드는 등 국제 수산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

《 참고 2-2 》

OECD 수산위원회 개요

가. 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

- OECD Committee for Fisheries (COFI)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세계 주요 선진 30개국으로 구성되어,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

나. 설립연혁

- 1961. 09. 30. OECD 설립과 동시 분과 위원회로 설립

※ 우리나라는 1994. 10. 27 수산위원회 옵서버로 최초 참가한 이래 '96년 OECD 가입 후 동시에 가입

다. 회원국

- 28개국 : 30개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2개국 제외

라. 주요기능

-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 각 회원국의 수산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외국과의 협정체결현황 등 제출

- 국제 수산물교역자유화에 대한 분석틀 제공 등 연구지원

- 수산자원관리체제에 대한 분석

- 수산분야 통계·지표 작성

※ 동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FAO 등 국제수산계에 이를 적극 권고함으로써 세계수산의 새로운 질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

마. 우리나라 활동사항

- 우리 나라의 수산정책동향을 매2년마다 OECD에 보고

- 각종 수산회의 참석, 국제수산 규범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참고 2-3 》

APEC 수산실무그룹 개요**가. 개 요**

-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을 목표로 1991년 SOM에 의해 창설
 - ※ SOM(Senior's Officers' Meeting) :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협의기관으로 APEC 산하 4개의 위원회와 실무그룹 등의 논의사항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들에게 보고·건의하고, 정상·각료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함

나. 설립목적

-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과 서식지 보전
- 수산자원관리 문제 해결
- 수산물 품질 및 안전 강화
- 수산분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다. 활동내역

- '02년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서울해양선언' 후속 이행 조치
 - 해양수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
 -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해양자원관리 문제에 관한 논의 및 관리법 개선
 - 수산식품 품질과 안전을 포함한 어획 후 과정 개선
 -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
- '05년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 발리행동계획' 후속 이행 조치
 - 해양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해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 참고 2-4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1. 협약개요

가. 목 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나. 채택 및 발효경위

- 1972.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개최 결정
- 1973. 3월 워싱턴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전권회의 개최, 협약채택
- 1975. 7월 발 효 (81개국)

다. 가입현황

- '08. 4월 현재 172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93. 7. 9 협약에 가입하여 '93. 10. 7일 협약 발효

라. CITES 구성

- 당사국총회 : 2년마다 개최, 전체 회원국이 모여 투표에 의해 협약 및 부속서를 개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과 결의문을 채택함
- 상임위원회 : 6대주(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대표로 구성, 협약의 이행, 사무국 예산관리 및 총회위임 사항
- 동·식물위원회 :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6대주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에서 Observer로 참여
-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기술적 지원, 교육훈련세미나 구성, 협약의 이행 상황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연구, 연례 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 및 각 위원회의 개최준비, 협약의 이행에 관한 권한 등의 업무를 수행
- TRAFFIC, UNEP-WCMC, IUCN
 - CITES 각 위원회에 Observer로 참여중인 대표적인 환경단체

2. 협약내용(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구분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부속서 분류 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 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 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 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 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 제거래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 제거래 가능
주요 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염인삼 등	바다코끼리(카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3. 부속서(주요 수산생물 등재 현황)

수산생물명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우리나라 관련 종
고래류	21종	전종	-	- 향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밍크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흑등고래(9종) 부속서 I
상어류	-	3종 (고래상어, 돌묵상어, 백상아리)	-	- 백상아리 식용으로 일부 수입 - 모로·청·악·꼬리·노랑상어 등이 원양어선에서 부수어획되고 있음
철갑상어류	2종 (단비, 발탁)	30종	-	- 양식종(시베리아, 스텔렛), 부속서 II
어류	7종	33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실고기목 (해마류)	-	<i>Hippocampus</i>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이매패류	26종	5종	-	- 우리나라 비서식
산호류	-	푸른산호과, 관산호과, 각산호목, 돌산호목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히드라충류	-	의공산호과, 의산호과 전종	-	- 일부 종 우리나라 서식

* 우리나라에 분포하거나 양식하는 종만 한정함

《 참고 2-5 》

바닷새 및 상어 국제행동계획 개요

가. 개요

- 상기 2개의 국제행동계획(IPOA)은 '99년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자발적 규범임
- 각국은 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바닷새 및 상어보호 관련 국내행동계획(NPOA; National Plan of Action)을 수립하여 국내법에 수용하여야 함
 -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EABIRD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 * 상어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SHARK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나. 주요 내용

- IPOA-SHARKS : 상어의 보존과 관리, 장기간 지속적 이용 보장 모든 국가의 상어 관리 참여, 예방적 접근 등
- IPOA-SEABIRDS : 연승어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 감소 노력, 포획완화조치, 국제협력, 국내이행 조치 마련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2011 하반기 : 상어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FAO 제출 및 홍보

《 참고 2-6 》

공해상 저층어업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가. 논의 배경

- 저층어업*으로 인한 취약한 해양생태계(해산, 산호, 열수공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함
- * 어획률이 낮아야만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저층 어종을 대상으로 하며 어구가 해저에 닿는 어업으로 저층트롤, 저연승, 통발을 포함
- 유엔총회 수산결의('06년, '08년)는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 지역기구 설립, 데이터 개선 등 **강화된 관리 촉구**
 ※ 유엔은 보존조치(영향평가 포함) 이행 전에는 허가를 금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
- FAO는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에 관한 지침'을 채택('08)
 ※ FAO 저층어업 워크숍 개최('10.5., 부산) / FAO 지침 번역·발간('10.5.)

나. 조치 사항

- **영향/위험평가** 실시 :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태평양, 남극해 등)은 해당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실시, 부재 수역은 수과원에서 실시 중
- **법령정비** : 지역기구 부재수역(남서대서양, 남인도양)은 '저층어업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행 중, 개정작업 중
- **데이터 제출** : 저층어업 허가선박 명단과 보존관리조치 제출 예정(~'11.4.)
- **감시·감독** : 선상 읍서버(커버리지 증가 계획), 조업자료를 통해 실시 중
- **국제협력** : 지역기구(북태평양, 남태평양) 설립협상 적극 참여, 남서대서양에서 협력체 구성과 관련 협의 중
- **교육 및 홍보** : 저층어업계 교육 및 설명회 실시('10.5.), 협력체 수립 구상

다. 향후 대응 방안

- 유엔차원의 수산결의안 대응('11.11.), 관련 법령 개정, 읍서버 비율 증가, 데이터 제출 등이 필요

《 참고 2-7 》

지역수산관리기구 현황

구 분	기 구 명	회 원 국	주 요 현 안
참치 관리기구 (5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미국 등 16개국	-다랑어 어획능력 감축 -우리나라 선망어선 신규 투입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EU 등 48개국	-참다랑어 전자어획증명제도입 -눈다랑어 등 쿼터재분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호주 등 5개국	-쿼터설정을 위한 관리절차 설정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세이셜 등 26개국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국별 어획쿼타 설정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마이크로네시아 등 25개국	-눈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옵서버, IUU
비참치 관리기구 (6개)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캐나다 등 14개국	-미 조업, 협약개정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호주 등 24개국	-조업척수 유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캐나다 등 5개국	-미 조업, 불법어업감시활동 전화회의, 항만국 검색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전관리 협약(CBSPC)	미국 등 6개국	-미 조업, 시험조업 문제, 가상회의
	국제포경위원회(IWC)	영국 등 88개국	-미 조업, 포경재개 논의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나미비아 등 5개국	-TAC 미설정 어종의 TAC 설정	
가입검토 기구(2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미 발효	-가입여부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뉴질랜드 등 25개국	-국별 어획쿼터 설정
신설중인 기구(1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미국 등 7개국	-의사규칙 채택 사무국 국내 유치

《 참고 2-8 》

'11년도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석 계획

월	회 의 명	기 건	장 소	참 석
1	제2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준비회의	1.22-29	콜롬비아	4급 외3
	제29차 FAO 수산위원회	1.31-2.4	이태리	과장 외3
2	인도양참치위원회 쿼터할당 기준에 관한 회의	2.16-18	케냐	6급 외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회기간이행위원회 회의	2.21-25	스페인	5급 외1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행평가조정 회의	2.23-24	호놀룰루	6급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제10차 설립회의	2.27-3.4	캐나다	5급 외1
3	한미협력사업 초청 워크숍	3.14~17	서울	실장 외3
	인도양참치위 제8차 이행위 및 제15차 연례회의	3.17-25	스리랑카	과장 외2
4	OECD 자원회복 전문가 회의	4.14-15	프랑스	5급 외2
	제107차 OECD 수산위원회	4.18-20	프랑스	5급 외1
	참치합동기구회의 사전 워크숍 개최	4.19-21	서울	차관 외4
5	FAO 기국평가 기술자문회의	5.2-6	이태리	5급 외2
	CITES IFTS 작업반회의	5.24-26	노르웨이	5급 외1
	대서양참치보존위 장래에 관한 작업반회의	5.16-20	스페인	5급 외1
6	제21차 APEC 수산실무그룹 회의	6.6-10	인니	6급 외1
	FAO 거버넌스 워크숍	6.21-22	서울	장관 외5
	전미열대다랑어위 제82차 연례회의	6.29-7.8	미국	과장 외2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 과학반회의	9.19-23	페루	4급 외2
7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3차 연례회의	7.3-15	노르웨이	차관 외4
	참치합동기구 제3차 회의	7.9-17	미국	과장 외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CCAMLR) 생태계그룹회의	7.11-22	부산	실장 외5
	남방참다랑어보존위 제16차 과학위원회	7.17-30	인니	4급 외3
	제25차 CITES 동물위원회	7.18-22	스위스	6급 외1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 정책연수	7.19-20	부산	국장 외3

월	회 의 명	기 건	장 소	참 석
8	중서부태평양수산물 제7차 과학위원회	8.9-17	마크로 네시아	4급 외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해양 보호구역 워크숍	8.29-9.2	프랑스	4급 외1
	남방참다랑어보존위 자원관리 특별회의	8.21-27	호주	과장 외2
	제79차 APFIC 집행이사회	8.23-25	베트남	6급 외1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 제10차 연례회의	8.23-25	미국	국장 외4
9	중서부태평양수산물 제7차 북방위원회	9.4-10	일본	과장 외4
	제65차 UN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제1차 회의 및 저층어업이행평가 워크숍	9.13-16	미국	5급 외1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제33차 연례회의	9.19-23	캐나다	5급 외1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제1차 준비회의	8.29-9.2	부산	실장 외5
	제66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제1차 비공식 회의 및 저층어업 워크숍	9.13-16	미국	5급 외1
중서부태평양수산물 제7차 기술이행위원회	9.28-10.4	미크로 네시아	국장 외4	
10	남방참다랑어보존위 제6차 이행위 및 제18차 연례회의	10.4-15	인니	과장 외2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제8차 연례회의	10.10-14	나미비아	과장 외1
	제108차 OECD 수산위원회	10.10-12	프랑스	6급 외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제30차 연례회의	10.24-11.4	호주	과장 외2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 제19차 연례회의	10.23-28	캐나다	5급 외1
11	제66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 제2차 비공식 회의	11.8-16	미국	5급 외2
	대서양참치보존위 제22차 연례회의	11.9-19	스페인	과장 외2
	ASEM 수산포럼	11.16-17	부산	실장 외4
12	중서부태평양수산물 제8차 연례회의	12.2-10	팔라우	국장 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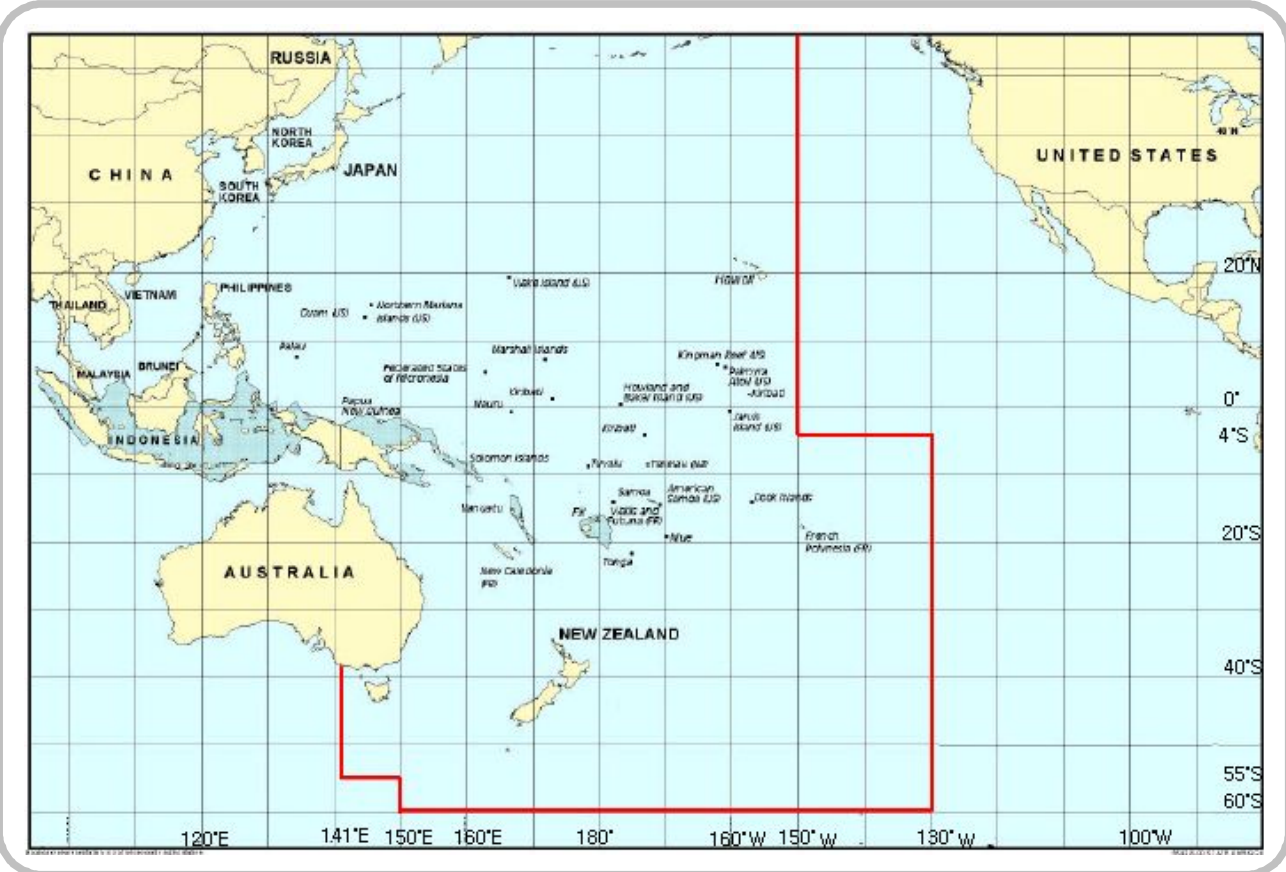
《 참고 2-9 》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개요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04. 6. 19.(04. 11. 25)
- 목 적 :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사무국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 회원국 :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등 25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293,450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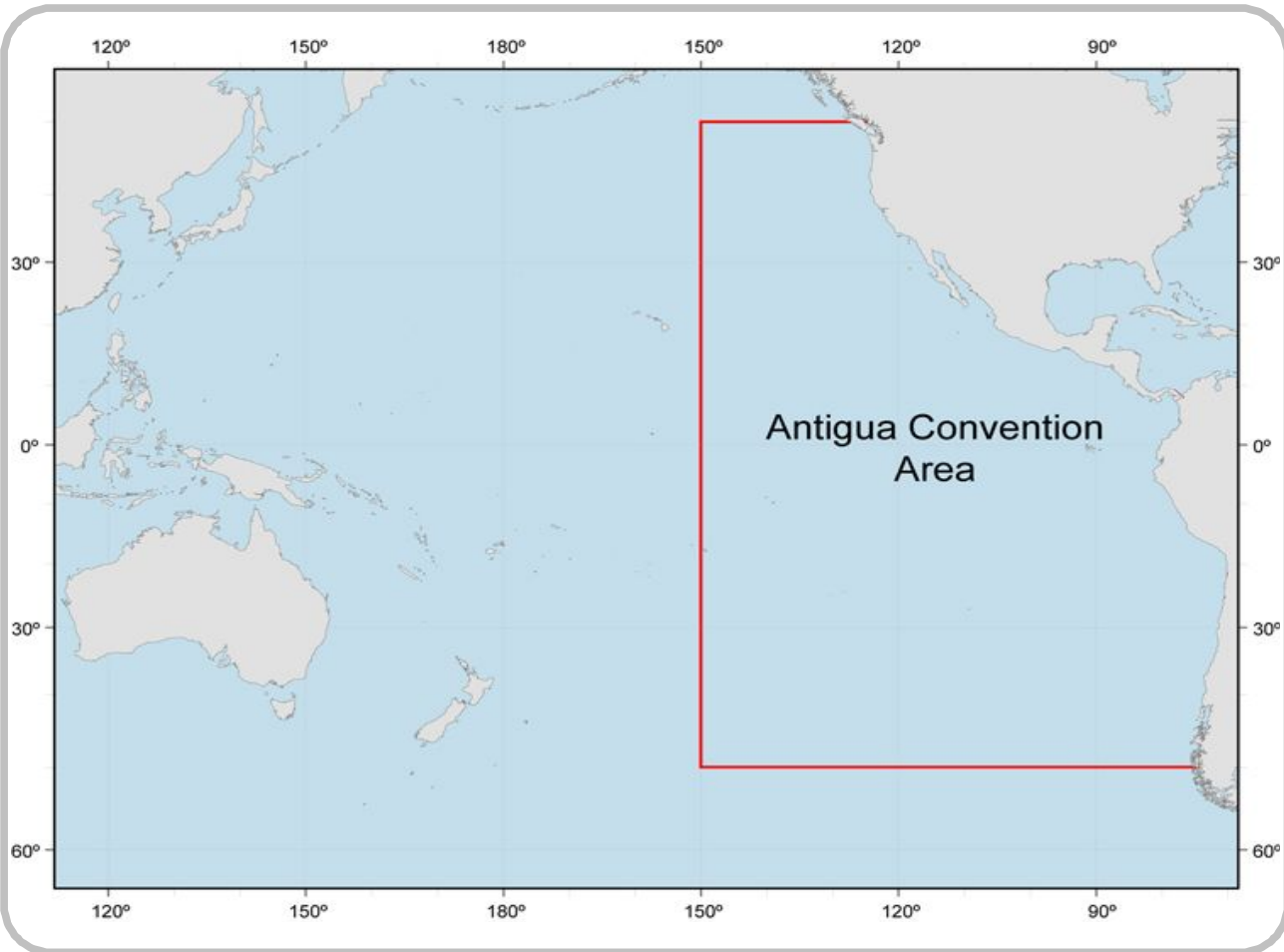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50. 3. 3.(’05. 12. 13)
 - 목 적 : 동부태평양 수역 참치자원관리 및 돌고래 관리기능 병행
 - 사무국 : 미국 LA - La Jolla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등 16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13,803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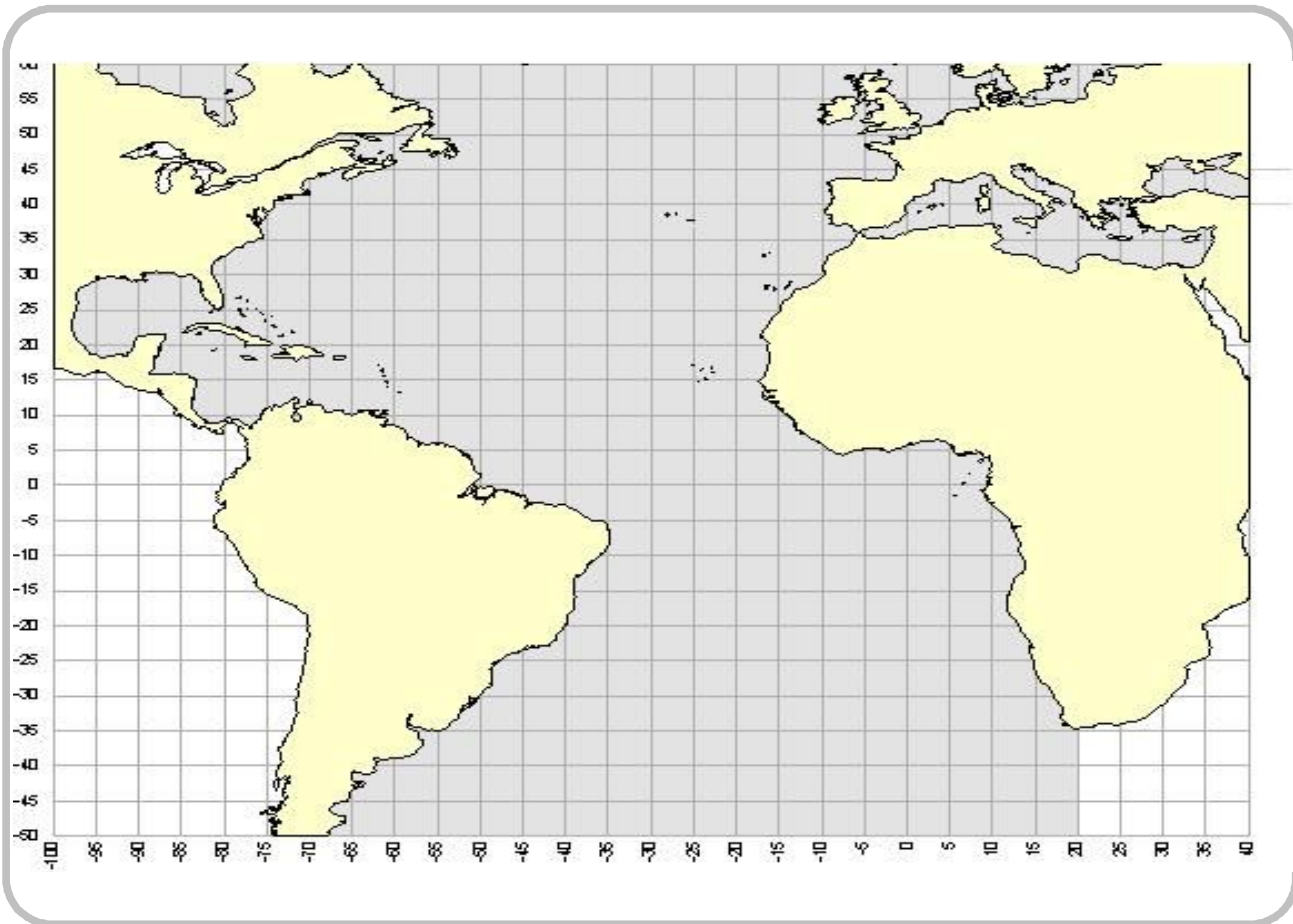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69. 3 ('70. 8)
 - 목 적 :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스페인 마드리드
 - 회원국 : 미국, 일본, 중국, EC 등 48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4,337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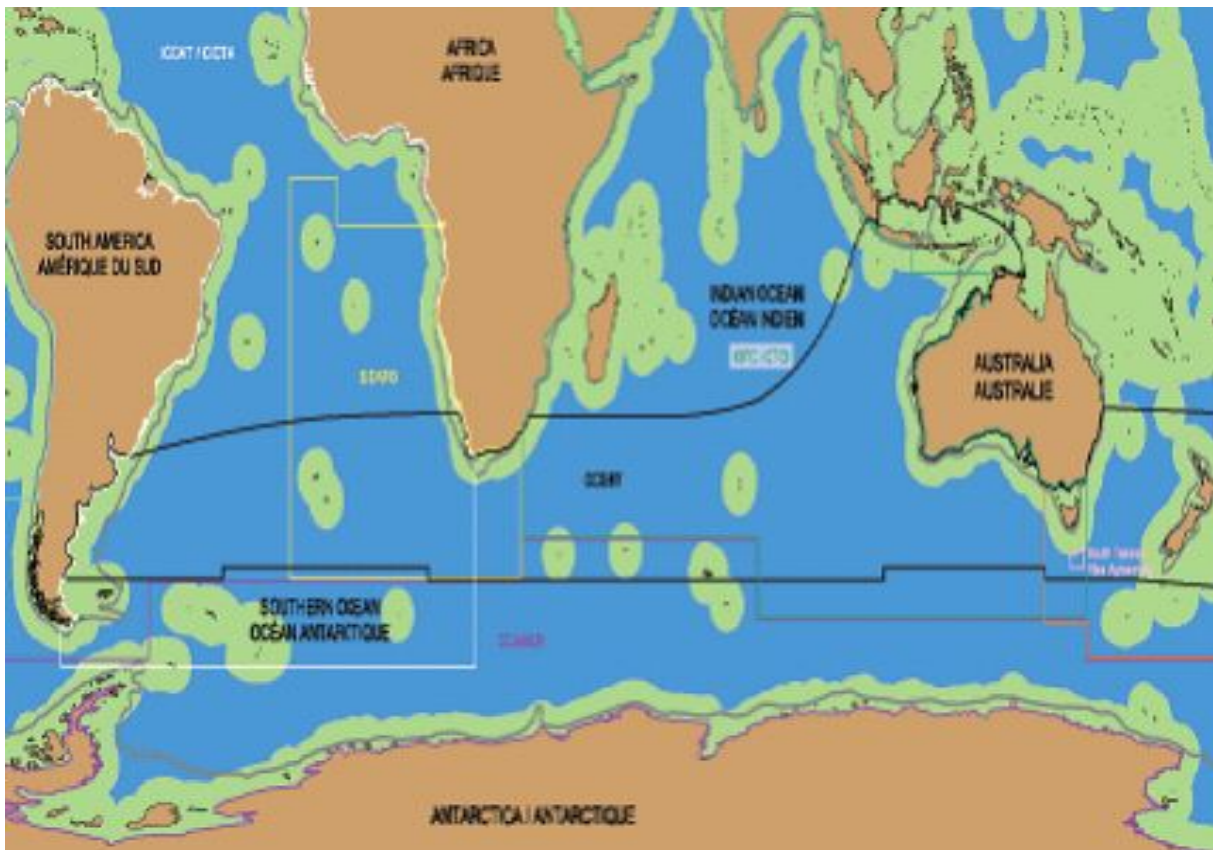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4. 5. ('01. 10. 17.)
- 목 적 :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호주 캔버라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및 대만(어업실체)
※ 2010년도 어획실적 : 869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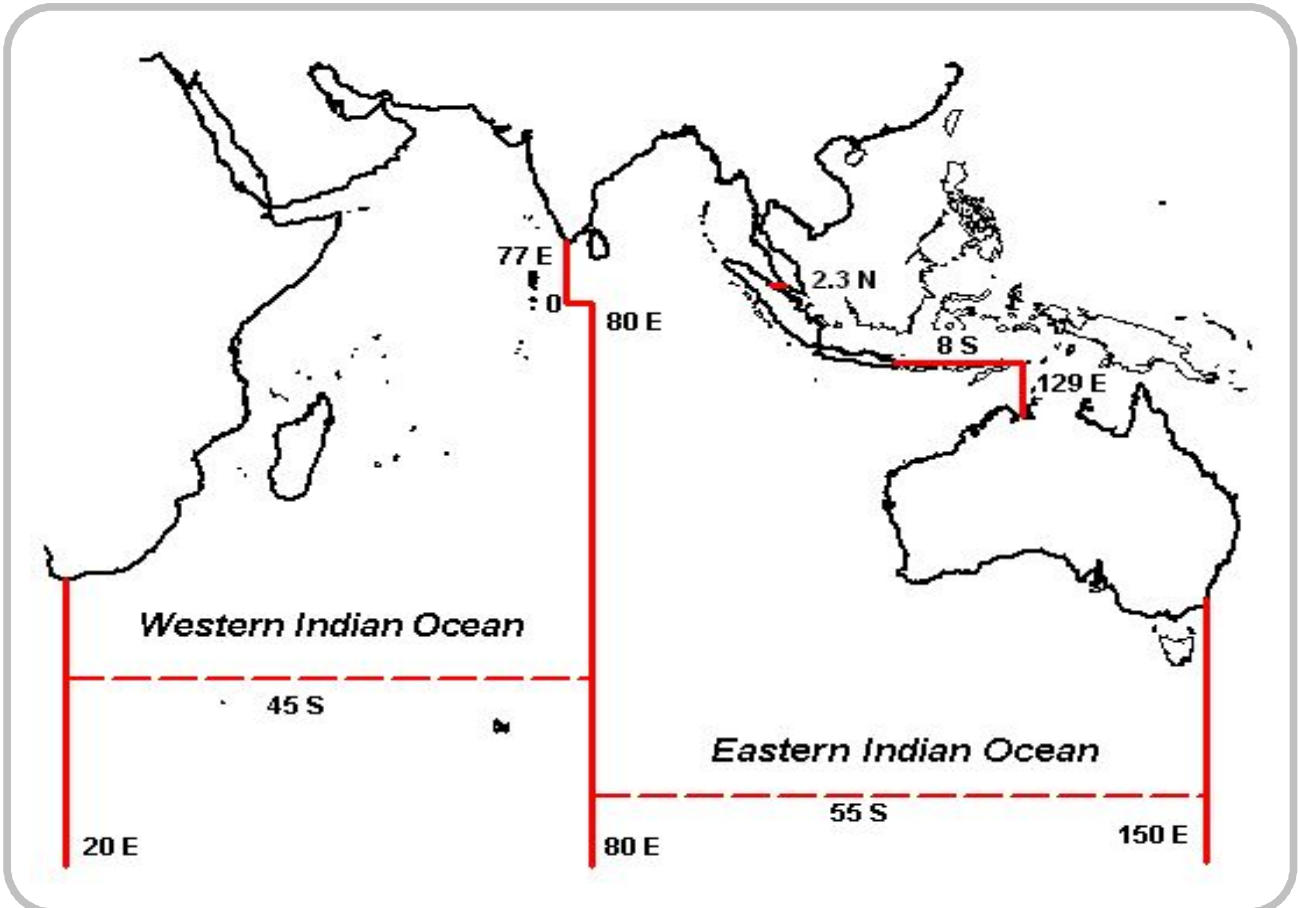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6. 3. 27('96. 3)
 - 목 적 :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사무국 : 세이셸 빅토리아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EC 등 27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2,697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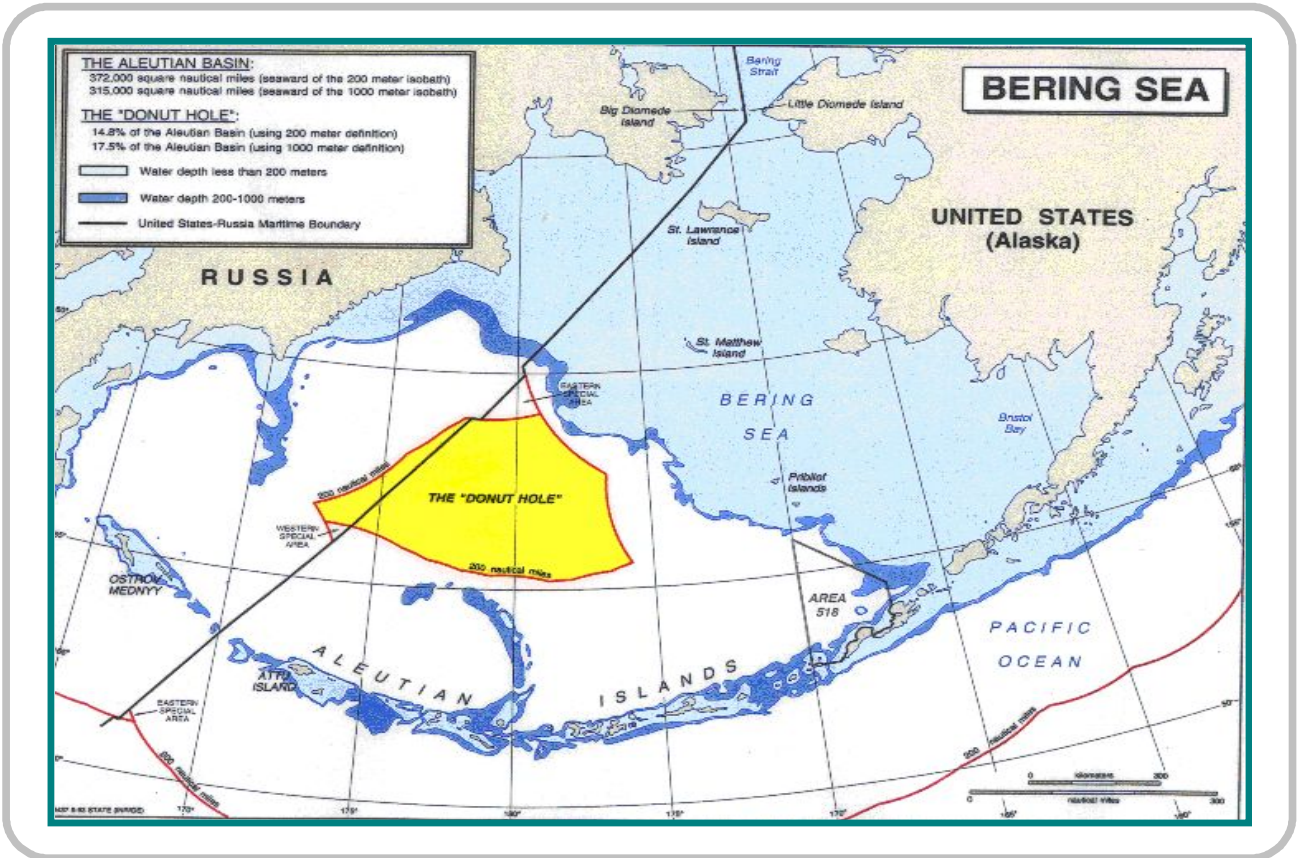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

(CBSPC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 in the Central Bering Sea)

협약 개요

- 협약발효(비준일) : '95. 12. 8('96. 1. 4)
- 목 적 :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도모 및 정보교환
- 당사국 :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폴란드 6개국
 ※ 1993년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조업중단 중

협약 수역도



국제포경위원회 (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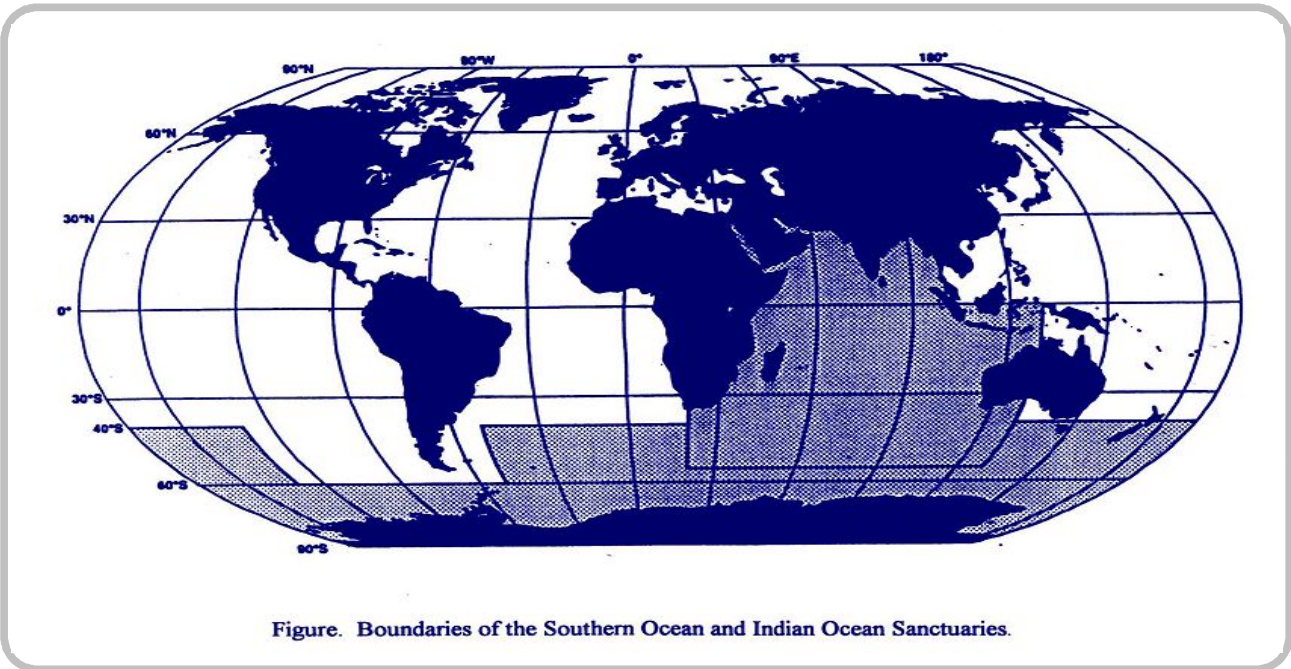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46. 12. 2.('78. 12. 29)
- 목 적 : 고래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 사무국 : 영국 캠브리지
- 회원국 :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88개국

조업 현황

- '86년도부터 포획금지(부속서)
 - 우리나라는 IWC 결정에 따라 '86년도 포경어업전면 금지
- 과학조사포경은 국가의 고유권한사항(협약 제8조)
 - ※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조사포경 미실시

금지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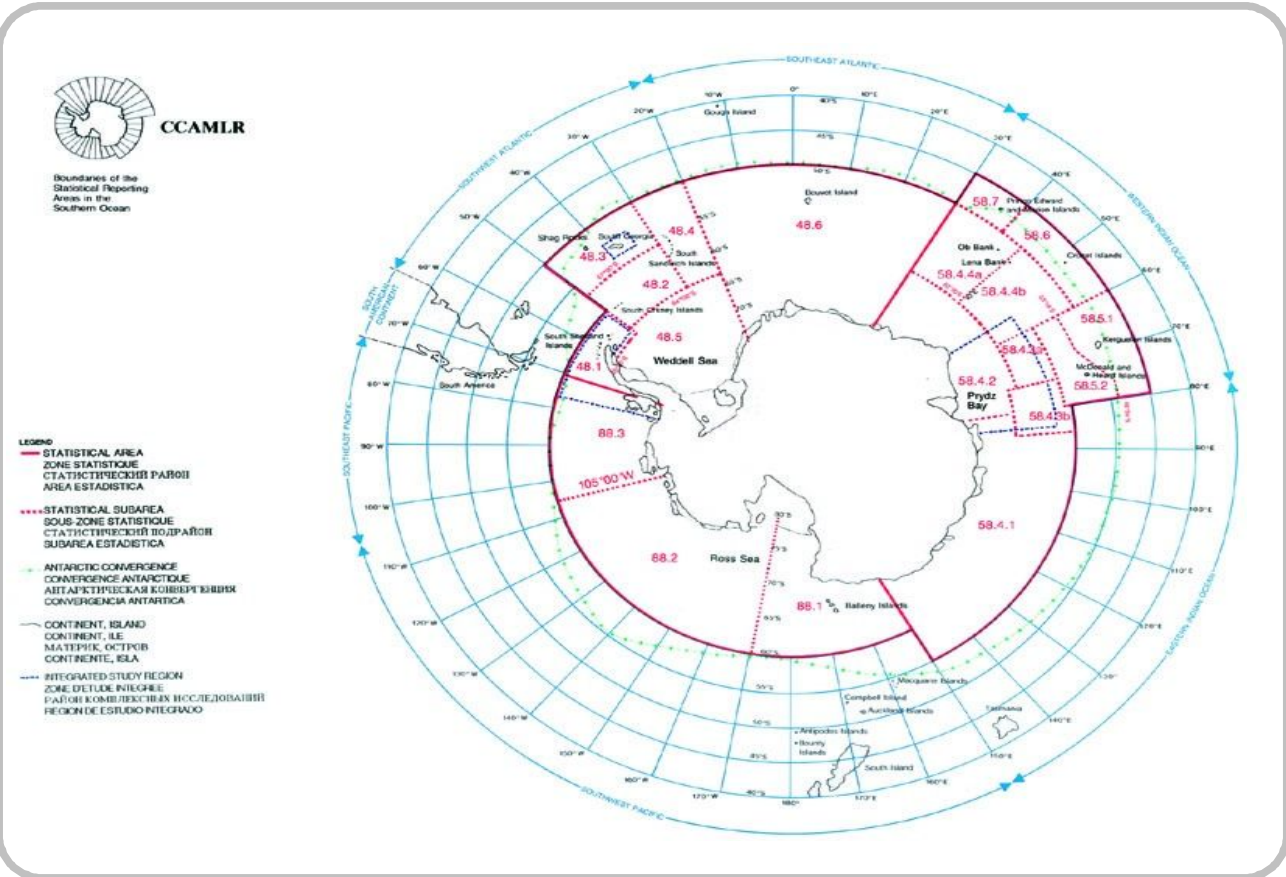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80. 5('85. 4. 28)
- 목 적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
- 사무국 : 호주 호바트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지, EC 등 24개국
 ※ 2010년도 어획실적 : 37,136톤(이빨고기 1,265톤, 기타 크릴새우)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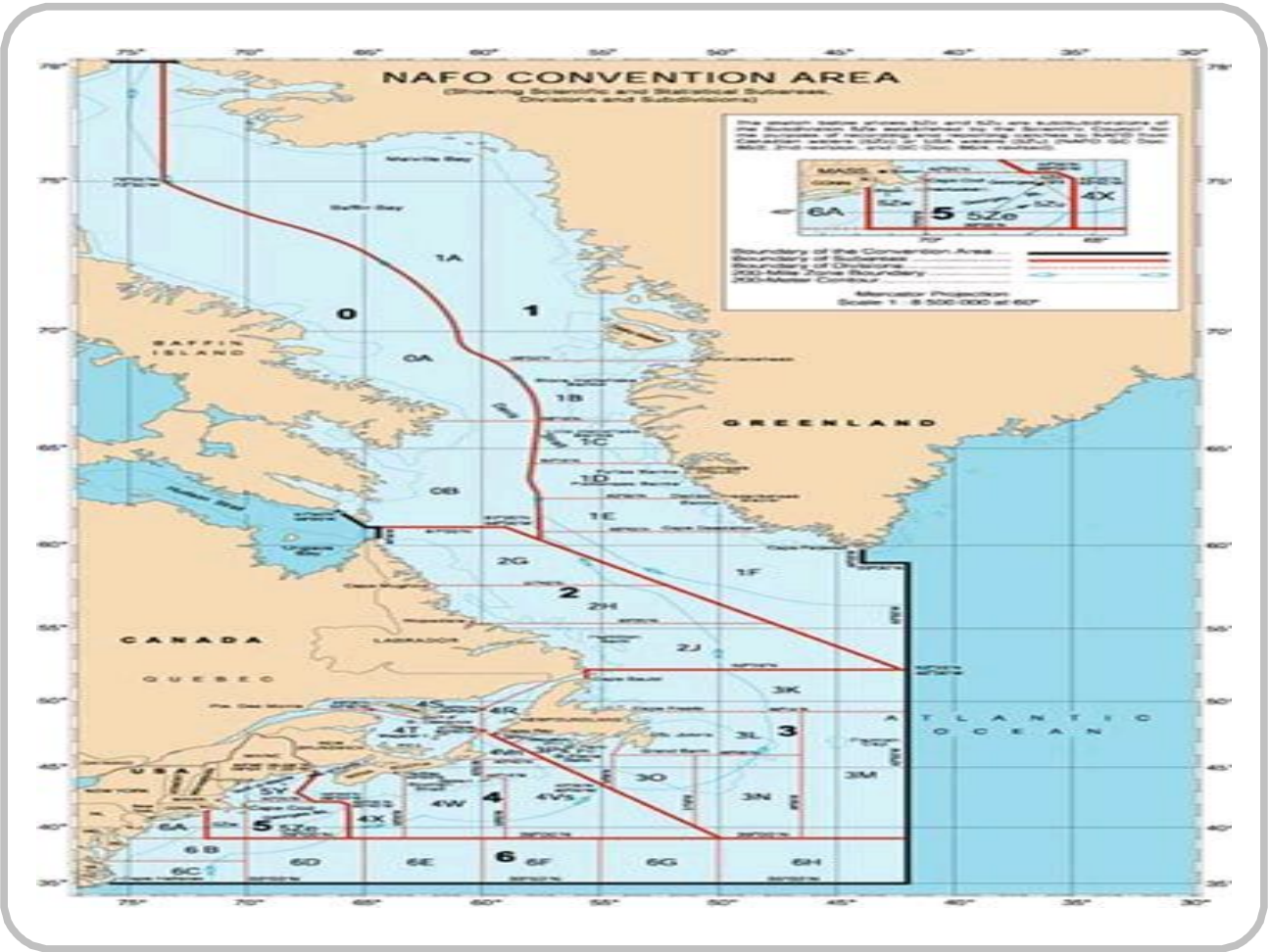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78. 10('93. 12)
 - 목 적 :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합리적 보존과 최적이용 촉진
 - 사무국 : 캐나다 다트마우스(Dartmouth)
 - 회원국 : 캐나다, EC, 한국, 일본, 미국, 쿠바, 러시아 등 14개국
- ※ '10년도 우리나라 쿼타 : 836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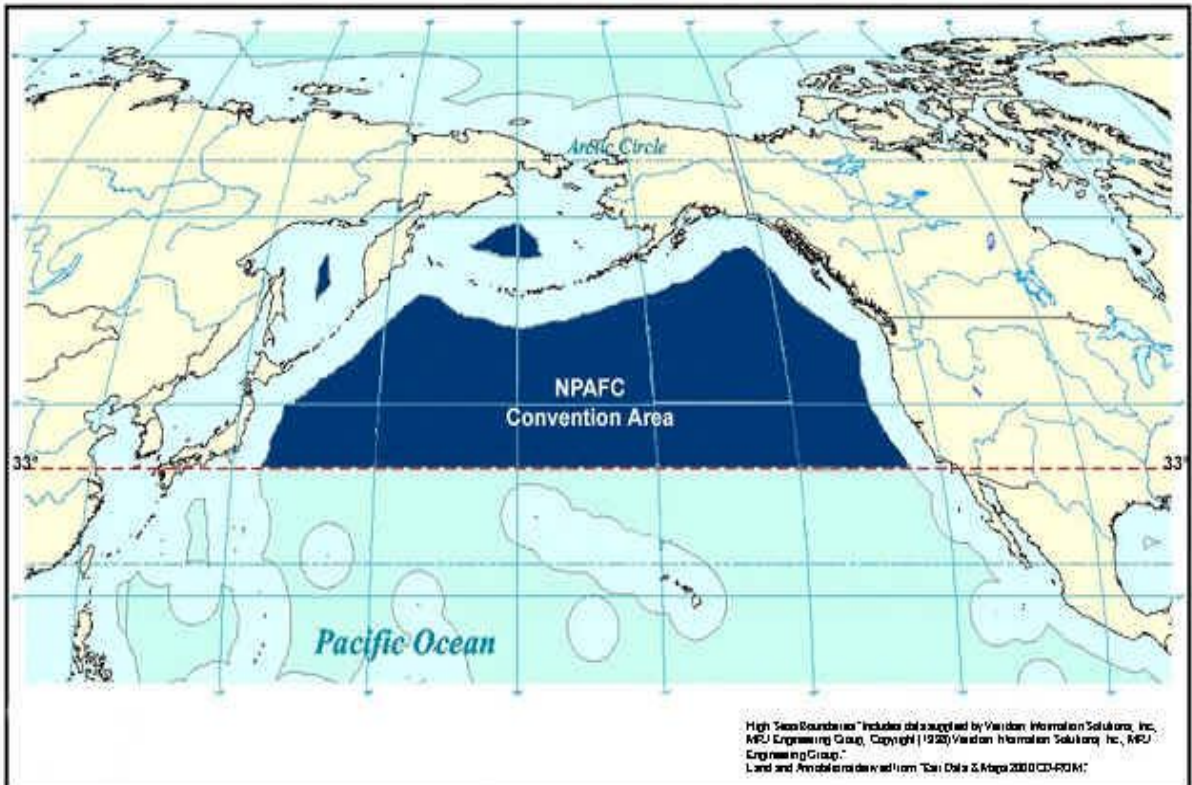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기구 개요

- 설립일(가입일) : '93. 2('03. 5)
 - 목 적 :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
 - 적용대상 : 연어 6종 및 송어 1종
 - 사무국 : 캐나다 밴쿠버
 - 회원국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 협약수역에서는 연어조업이 전면금지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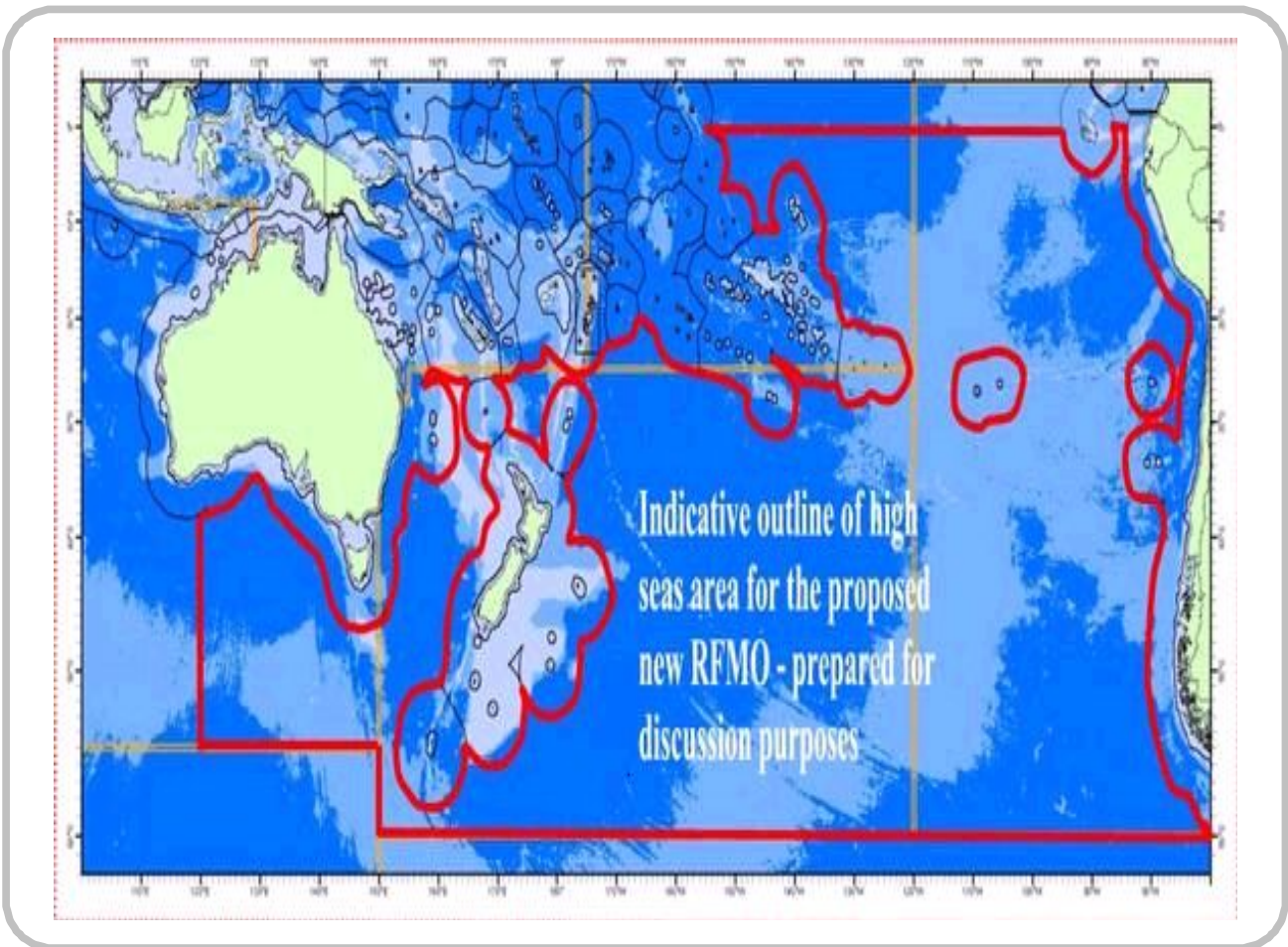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PRFMO :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기구 개요

- 관리대상 : 전갱이, 오렌지러피 등 비참치어종
- 임시 사무국 : 뉴질랜드 웰링턴
- 설립 협상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EC 등 약 25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전갱이 등 8,618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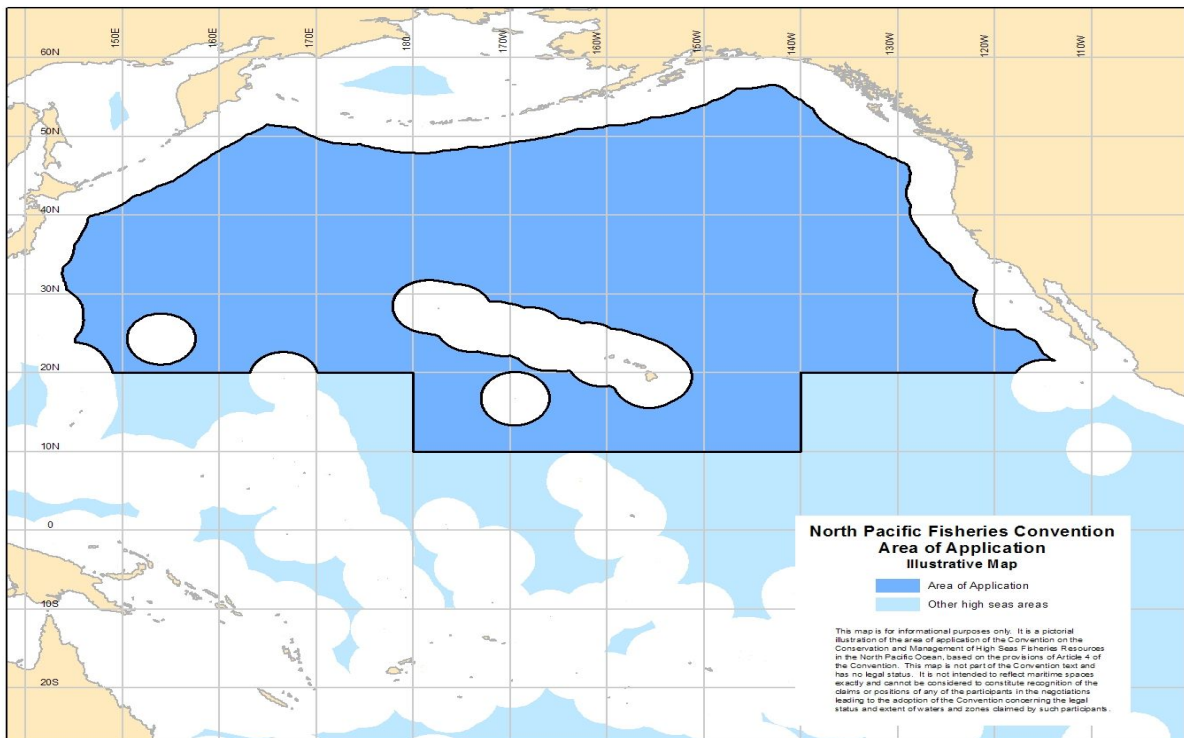


북태평양수산위원회 (NPFC :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기구 개요

- 관리대상수역 : 북태평양 공해수역(베링공해 제외 북위 20°N 이북 및 당사국 EEZ 인접수역 포함)
 - 관리대상 : 참치·연어를 제외한 전 어종
 - 임시 사무국 : 일본
 - 설립 협상국 :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대만, 캐나다 7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11,871톤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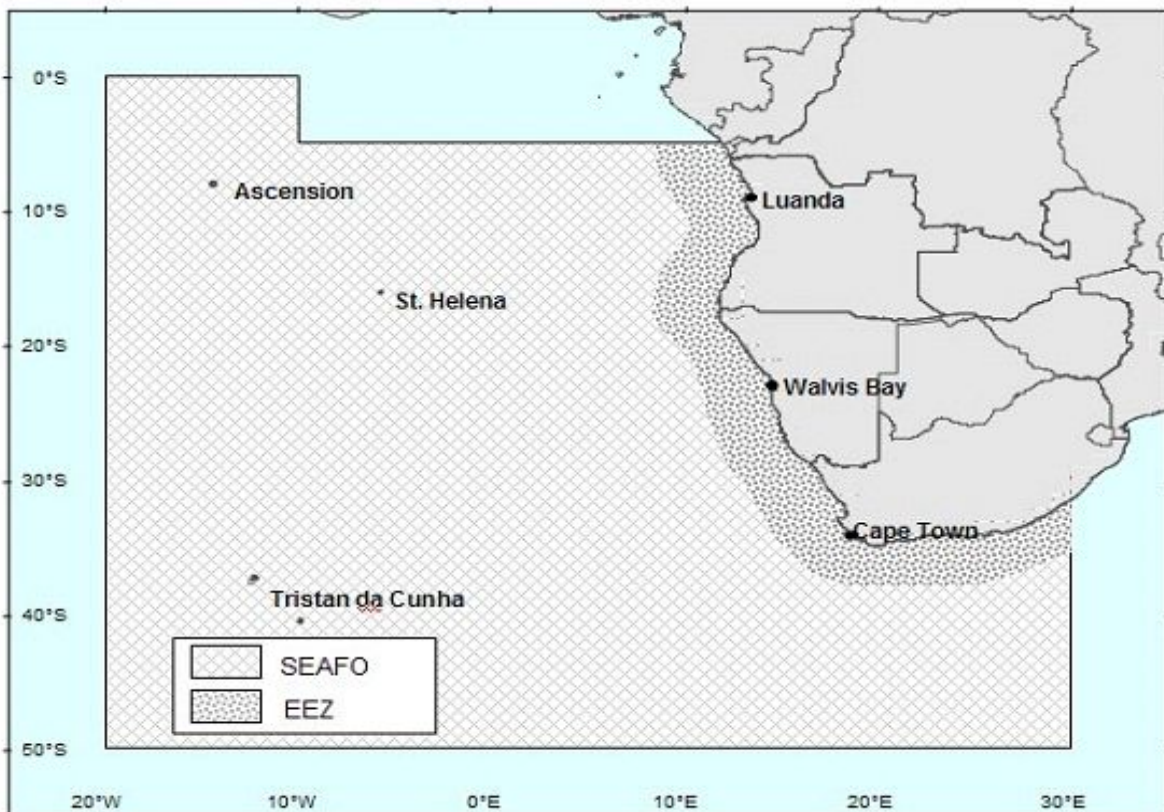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기구 개요

- 설립일(협약발효일)/가입일 : '01. 4. ('04. 4)/'11. 4.
- 목 적 : 어업자원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 확보
- 적용대상 :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어류 (참치제외)
- 사무국 : 나미비아 빈트후크(Windhoek)
- 회원국 : 한국, 일본, EU, 나미비아, 노르웨이, 앙골라 등 7개국
- ※ 2010년도 어획실적 : 1,349톤(트롤선 1척)
- ※ 공식어(Official language) : 영어, 포르투갈어

협약 수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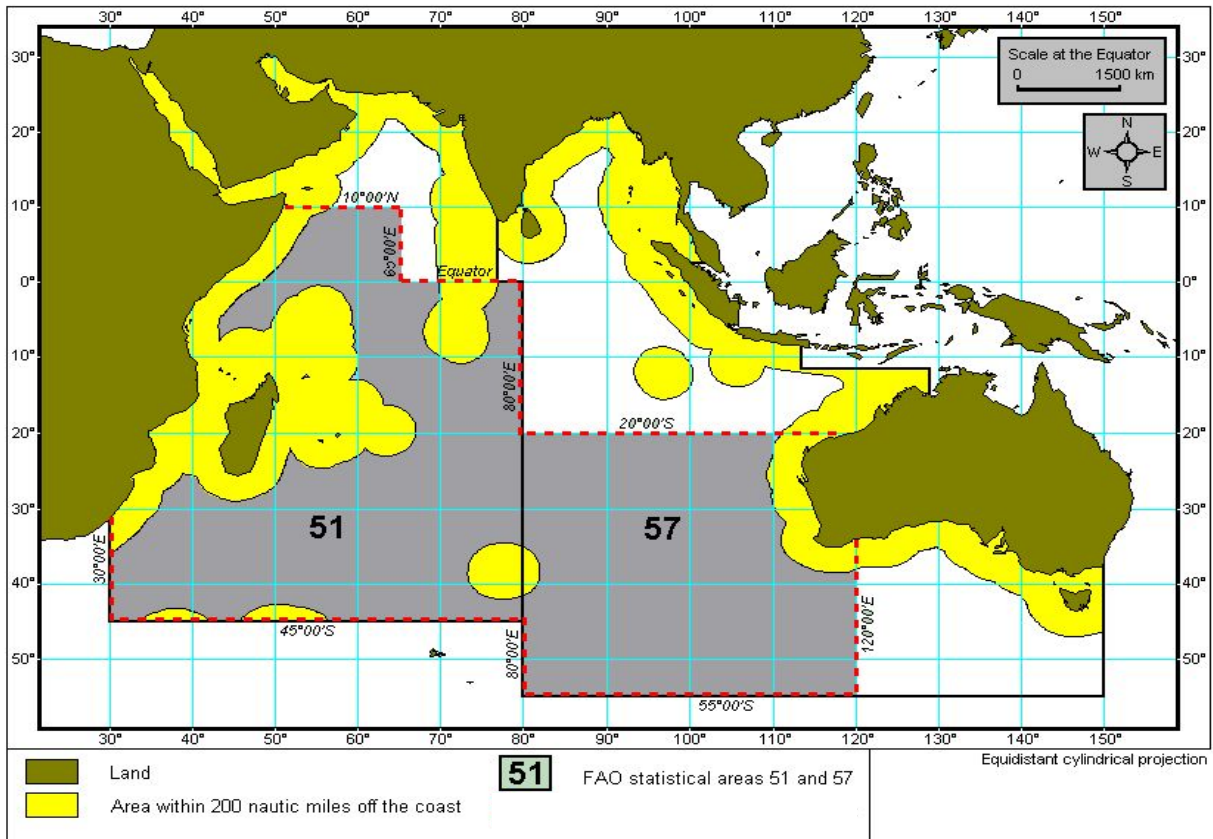


남인도양수산업협정 (가입검토중) (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

협정 개요

- 협정채택 : 2006. 7. 7. (미발효)
- 목 적 : 협정수역의 다량어류 외 어업자원관리
- 사무국 : 현재 IOTC(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 대행
- 서명국 : EC, 호주, 뉴지, 프랑스, 세이셸 및 주요 연안국 10개국

협정 수역도



《 참고 2-10 》

어업협정 체결 및 입어현황

□ 입어국(2010년말 현재)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2010년 조업실적	2011년 입어조건	협정 주요내용
러시아 (정부)	'91.9.16 ('91.10.22)	명 태: 5척/46,800톤 오징어: 38척/6,500톤 꽁 차: 15척/7,500톤 대 구: 2척/4,450톤 가오리: 2척/800톤 가자마: 2척/500톤 청 어: 5척/700톤 복 어: 38척/115톤	명 태: 40,001톤 오징어: 10,000톤 대 구: 4,450톤 꽁 차: 7,500톤 가오리: 800톤 가자마: 500톤 청어: 600톤 복 어: 115톤	-양국수역내 상호입어 허용, 한·러 어업위원회 설치 -수산연구협력등 9개 수산협력실시 -어로 양식, 가공등에서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조율 -수산가공공장, 조선소 투자 논의 -불법교역방지협정(안) 협상 진행
일 본 (정부)	'98.11.28 ('99.1.22)	우리어산 588척/22,982톤 일본어산 122척/ 12,467톤	우리어산 870척/60,000톤 일본어산 870척/60,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중간수역설정, 기국주의 조업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3년간 유효, 6월전 통고시 종료
중 국 (정부)	'00.8.3 ('01.6.30)	우리어산 170척/ 3,231톤 중국어산 1,679/44,863톤	우리어산: 1,600척 /64,000톤 중국어산: 1,700척 /65,000톤	-배타적경제수역 상호입어허가 -잠정조치수역·과도수역 설정, 기국주의에 의한 조업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5년간 유효, 1년전 통고시 종료
투발루 (민간)	'80.6.18 ('80.6.18)	참치연승: 10척/3,468톤 참치선망: 27척/23,483톤	참치연승: 10척 참치선망: 27척	-투발루수역내 어로행위 허용 -어업합작 장려 및 최혜국대우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솔로몬 (민간)	'80.12.12 ('80.12.12)	참치연승: 22척/2,917톤 참치선망: 27척/33,181톤	참치연승: 22척 참치선망: 27척	-솔로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키리 바시 (민간)	'80.12.18 ('80.12.18)	참치연승: 88척/12,019톤 참치선망: 27척/88,363톤	참치연승: 88척 참치선망: 27척	-키리바시 200해리 어업수역내 조업허가 -어족자원보존 및 최적이용 목적 증진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파푸아 뉴기니 (민간)	'92.1.25 ('92.4.15)	참치선망: 27척/41,437톤	참치선망: 27척	-파푸아뉴기니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합작사업 장려 및 최혜국대우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 **입어 중단 및 미입어국 (2010)**

체약국 (협상주체)	서명일 (발효일)	과년도 조업실적	입어중단(미입어) 사유	협정 주요내용
쿠 (민간)	'80.8.25 ('80.8.25)	<1998년> 참치연승: 6척/107톤	1990년대 후반 사모아 기지선의 완전철수로, 원격지가 됨에 따라 입어중단	-국 경제수역내 조업허가 -해양생물자원 관리·보존·이용 협력 -어선과 선원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3개월전 통고시 종료
불란서 (정부)	'80.9.19 ('80.12.19)	<2000년> 참치연승: 78척 /2,43톤	협상결렬로 입어중단 (척수 입어로 입장차이 이후, 우리 독항선이 주로 키리바시 (어황이 가장 좋음) 위주로 조업	-불령수역 협정적용범위 설정 -입어로 사전지불 조건, 협정수역내 조업허가 -선박의 나포, 선원체포시 통보의무 -3개월전 통고시 종료
이 란 (정부)	'77.5.11 ('78.4.1)	<1992년> 트롤: 3척	이란혁명 이후 입어중단	-어로, 수산분야 상호협력강화 -전문가, 훈련생, 수산과학기술협력 -수산물 가공등 합작사업 장려 -6개월전 통고시 종료
호 주 (정부)	'83.11.23 ('83.11.24)	<1985년> 오징어채낚기: 8척	포클랜드 호어장 발견으 로 입어중단	-호주 200해리수역내 입어허용 -선박, 선원 체포시 신속통보 및 법정조건 이행시 신속 석방 -과학적 조사에 협력, 통계·생물학적 자료제공 -12개월전 통고시 종료
모리타 니아 (정부)	'84.1.7 ('84.1.7)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모리타니아 200해리 경제수역내 조업허용 -어로장비, 선박수리 등 합작사업 장려 -어선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및 나포시 통보 조치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에쿠아 도르 (정부)	'84.5.22 ('84.9.19)	입어실적 전무	국내법에 의거 외국어선 단순입어 불허 미입어	-상호 타방어선 조업, 편의제공 -합작사업등 자본협력 장려 -양국어선의 타방국 항구이용 허용 -6개월전 통고시 종료

어업교섭과

1. 남북관계 정상화 대비 수산협력 방안 마련	95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97
3. 한·중 입어규모 확보 및 자원관리 강화	99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101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102

《참고》

《3- 1》 북한산 수산물 반입현황	105
《3- 2》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106
《3- 3》 한·일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07
《3- 4》 한·중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108
《3- 5》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109
《3- 6》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110
《3- 7》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112
《3- 8》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113
《3- 9》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114
《3-10》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116
《3-11》 수산진흥종합대책	117
《3-12》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	118
《3-13》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	119

《3-1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	120
《3-15》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122
《3-16》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123
《3-17》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124
《3-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25

교섭Ⅲ- 1 남북관계 정상화 대비 수산협력 방안 마련

가. 현 황

□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수년간 지속된 중국어선들의 짝쓸이 조업 및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들 불만 고조

* 동해 중국어선 조업현황 : ('07) 497 → ('08) 325 → ('09) 0 → ('10) 578

* 서해 불법어선 나포현황 : ('07) 494 → ('08) 432 → ('09) 381 → ('10) 370

□ '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수산협력사업 합의사항('07.12월)의 추진 및 수산물 교역이 중단('10.5.24조치)된 상태

○ '08년 현 정권 출범이후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07.12월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천안함 피폭사건('10.3월) 등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로서 '10.5.25부터 남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확대를 불허함

* 교역액 : ('07) 125백만\$ → ('08) 142 → ('09) 155 → ('10) 1

* 교역량 : ('07) 58천톤 → ('08) 66 → ('09) 79 → ('10) 1

나. 그간 추진실적

□ 2007정상선언(10.4), 남북총리회담(11.16), 남북경제공동위(12.6),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12.15)에서 수산협력사업 추진합의

○ 합의사항 : ① 북측 동해수역에 남측어선 입어, ② 수산물 생산·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③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 협력 ④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 남북 당국 간 기 합의사항 이행준비를 위한 연구, 관계기관 협의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남북수산협력 시범사업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회, 워크숍, 포럼, 어업인 간담회 등 개최

다. '11년 중점 추진 방향

-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에 대비) '07.12월 합의한 바 있는 『우리어선 동해북측수역 입어사업』 등의 추진방안 검토
- 조업활동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조업조건, 입어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동해어로합의서(안)” 마련
- 수산물 생산·가공, 우량품종 개발 및 양식분야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
- (남북교역 재개시) 북한 수산물 반출입 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 통일부 등 관계기관 협조
- 국내 수산물 생산, 유통업계, 북한수산물 반출입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교섭Ⅲ- 2 한·일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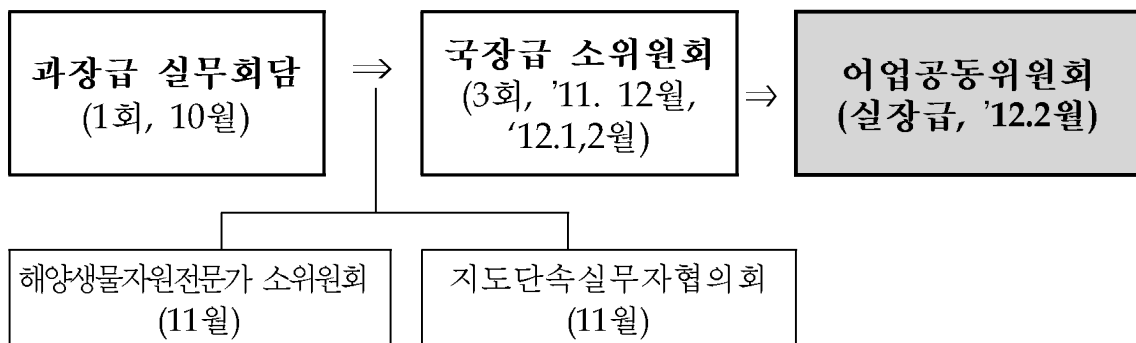
- 新 한·일 어업협정 발효('99.1) 이후 매년 차년도 “입어 규모 및 입어 조건 등”을 협의·확정
 - * 매년 어업소위(국장급) ⇒ 어업공동위(실장급) 협상을 거쳐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등 결정('11년도 어획할당량 6만톤, 척수 870척)
- 일본 EEZ내 조업을 통해 한정된 우리 어장에서의 업종 간 경쟁 조업 완화에 기여
 - * 특히 갈치를 주로 잡는 제주 연승의 경우 일본 EEZ를 주 어장으로 조업
- 한·중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 비해 어획량 1.5배, 조업척수 2.8배로 우리어선의 조업 의존도가 높음
 - * 연평균('99~'10) 조업척수/어획량 : (韓) 752척, 24,714톤 / (日) 266척 16,764톤
- 일본은 자원 감소, 우리어선의 불법조업 등의 사유로 우리 주력 업종(연승, 중기저, 채낚기 등)의 입어규모 축소 및 조업조건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 특히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치 할당량 및 조업수역 축소 등 조업조건 강화를 매년 요구
 - * 우리어선 단속 건수(건) : ('02) 32 ⇒ ('04) 19 ⇒ ('08) 18 ⇒ ('09) 12 ⇒ ('10) 13
 - 입어협상과 연계하여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를 집요하게 요구
 - EEZ 경계 확정과 무관한 어업협상과 영유권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파악, 우리측은 민간간 협의 등을 통해 대응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 및 발효('99.1)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익년도 상대국 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결정

다. '11년 중점 추진 방향

-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개선하고 우리어선의 조업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 규제강화 대상 업종에 대한 국내 감척사업 확대로 입어규모 적정화 ('11년: 870척 ⇒ '12년: 870~800척 예상)
 - 주력 업종(연승, 중기저, 채낚기 등)의 조업 금지수역, 금지기간 및 어구규제 등 입어규제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
- 중간수역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민간 협력 강화
 - 민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자원관리 및 조업 질서 유지
 - 동해 중간수역에서 제주 남부 중간수역까지 어장청소사업 확대
 - * 사업 규모(억원) : ('07) 1 ⇒ ('08) 2 ⇒ ('09) 23 ⇒ ('10) 16 ⇒ ('11) 15
- '12년도 협상 대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8~11월)
 - 어획할당량 운영실태 및 희망 입어규모(어획량, 척수) 조사
 - 합의사항 이행 및 어업인 교육 실시·지도
 - 일본 EEZ 수역 조업일지 작성 및 제안조건 준수사항 등
 - '12년도 한·일 입어협상 기본계획 수립
- 한·일 어업협상('12.2 완료 예정) 추진



교섭Ⅲ- 3 한·중 입어 균형 확보 및 자원관리 강화

가. 현 황

- 중국어선의 우리EEZ내 조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업규제 강화 및 자원관리 강화 필요
 - 한·중 협정이후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의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으로 우리EEZ내 자원관리 및 어업질서 구축
 - 조업척수(협정전) : 12,192척 → ('01) 2,796척 → ('11) 1,700척
 - 할당량(협정전) : 440,758톤 → ('01) 164,400톤 → ('11) 65,000톤
 - 우리 EEZ의 어종별 자원수준에 맞는 어업활동을 위해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추진
-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및 우리 EEZ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미미
 -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및 공동자원조사를 위한 협의 추진 필요
 - 집단화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중국어선의 나포실적 : ('07) 494 → ('08) 432 → ('10) 155척

나. 추진실적

- UN 해양법협약 발효('94.11)에 따른 EEZ 체제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체결 불가피
 - 한·중 어업협정체결('00.8) 및 발효('01.6)
 -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익년도 상대국수역 입어규모 및 조업 조건 결정

다. '11년 중점 추진 방향

- 정상적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대책 협의·합의 추진

-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불법어업 정보교환,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설정, GPS 항적기록 보존 제도의 점진적 도입 추진

□ 2011년도 합의사항 이행

- 상대국 수역 내 상호입어규모
 - (韓) 1,600척, 64천톤/(中) 1,700척, 65천톤
- 우리 EEZ 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추진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자원조사 실시 및 상호 전문가 파견 등 자원관리 강화

□ 2012년도 입어협상 대응방안 마련

- 2012년도 입어협상 대비 업계 협의회 및 현지 어업인 의견 수렴
- 2012년도 한·중 어업협상 기본계획 수립

□ 한중 어업협상('11.10.21, 제11차 어공위)

- 해양생물자원 전문분과위원회(5월), 어공위 위임사무 실무회의 (6월), 국장급 준비회담 및 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9월, 10월) 및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10월)
-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입어규모 감축
 - ('11) 1,700척/65,000톤 ⇒ ('12) 1,650척(△50)/62,500톤(△2,500)
- 중국 EEZ내 한국 낚시류의 조업조건 조정
 - 조업시기조정 : 1.1~5.31 및 9.16~12.31 ⇒ 1.1~**6.30** 및 10.16~12.31
 - 입어척수 확대 : 250척 ⇒ 285척(35척 증)
- 한국 EEZ내 중국 자망(유망)의 조업조건 강화
 - '12년도 어구실명제 실시 및 '13년 어구사용량제한제도 도입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방지 세부대책 등 마련(시행 : '11.12.20)
 -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의 EEZ 입어자격 취소, 조업위반어선 명부 교환, 단속공무원 교차 승선 등 합의

교섭Ⅲ- 4 한·중·일간 자율적 민간어업협력 강화

가. 현 황

- 한·일간 민간협력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나, 한·중간 민간협력은 중국 측의 관심부족, 회의 기피 등으로 성과 미흡
- 중국어선의 우리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조업, 동해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잠정조치수역의 조업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어업인들 불만 고조

나. 추진실적

- 한·중·일 양국 및 3국 어선간 자율적 조업질서유지 도모를 위해 양국간 민간약정 체결 및 3국간 협의회 정례화 함의
 - ※ 한·일('03.5), 한·중('04.11), 한·중·일('05.6)
- 한·일 양국어선간 조업질서 유지 및 자원보호 방안 도출('01)
 -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암게 채포금지, 붉은대게 공조조업, 어장 청소 실시 등

다. '11년 중점 추진 방향

- 한·중·일 양국 및 3국간 민간협회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한·일간 일측의 동해중간수역에서의 자원보호방안 조속실현 요구에 대해 대응전략 마련 및 지속적 협의추진
 - 한·중 어선간 조업분쟁 사례수집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우리측 주도의 한·중 민간협회의 활성화 도모
 - 한·중·일 3국 어선의 공동조업수역에서의 조업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측 주도로 협의 적극추진

통상Ⅲ- 5 한미FTA 대비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강구

가. 현 황

- '06. 6월 한·미 FTA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8차례의 실무협상 등을 거쳐 '07.4월 협상 타결 및 '07.6월 협정문 서명
 - 수산물의 경우 '97년 수입 자유화되어 대부분의 품목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감품목은 관세철폐시 수익저하 우려
 - ※ 15년간 4,331억원(연 295억원) 생산 감소 예상
- 한미 FTA를 수산업 자생력 회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07.11) 추진

나. 추진실적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수립('04.1)
 - 생산구조개편 등 7대 과제에 10년간('04~'13) 총 12.4조원 투융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
 - FTA에 따른 어업인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등 지원 근거 마련
- 한미 FTA 협상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수립 추진
 - 국내보완대책 수립 발표 및 우리 부 자체 브리핑('07.6)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 및 실시
 -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계획 수립·발표('07.9)
- FTA 관련 특별법 등 개정 추진
 - 어업협정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07.10)
 - FTA지원특별법(안) 마련('07.7), 법제처 심사('07.9) 및 국회제출('08.10.23)

- 국내보완대책 추진상황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발표('07.11.6)
 - 총 10년간('08~'17) 7,262억원(보조 6,735, 융자 537억원) 수준 지원
- 2007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 참가·홍보('07.11/코엑스)
 - VIP(11. 30 무역의 날 행사 후), 총리(개막식) 참석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지침 마련('08.12)
 -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마련
 - ※ 연구용역 추진('07. 12. 17~'08. 11. 13/전남대, 군산대)
 - ※ 동 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 FTA이행지원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단체·협회 등 의견수렴('09.1~)
 - 기존대책 설명 및 추가 보완대책 논의
-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10.3)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매5년 법정대책

다. 중장기 정책방향

- 개방화에 대응 구체적 지원대책의 신속한 마련으로 어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대 정부 신뢰 회복
 - 직접적 피해지원(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등

라. '11 추진계획

-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 자생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FTA 대책 보완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및 新수산 17대 프로젝트를 추가 보완대책으로 활용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1)하여 감척사업 실효성 제고
- 한·페루 FTA 국내 보완 대책 검토·수립('11.6월~)
 - 오징어 등 피해품목에 대한 어선감척 우선 적용, LED 집어등 설치 지원 등 기 수립대책('10.2)에 추가 보완
 -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지원, 수산물(오징어)산지가공시설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건조 등
- 한·중 FTA 정부간 사전 협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우리 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참고 3-1 》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단위 : kg, 천달러)

품 목 (Items)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총 계	57,099,568	123,190	63,692,175	137,060	75,903,322	151,851	41,824,556	63,141
명태	4,172	6	-	-	10,826	12	-	-
넙치	13,650	109	31,780	273	9,434	78	4,655	48
가자미	-	-	-	-	-	-	-	-
대구	-	-	17,570	19	18,873	45	38,951	77
뱀장어	-	-	1,000	12	-	-	-	-
기타어류	359,771	495	482,275	1,172	564,400	1,090	139,387	247
새우	1,724,567	13,677	3,108,087	18,628	3,316,438	20,964	883,369	6,904
꽃게	65,284	409	11,033	46	-	-	-	-
기타게	598,404	4,916	775,732	3,925	742,581	4,160	522,621	2,110
오징어	10,000	9	-	-	28,000	39	40,000	59
문어	1,811,870	6,661	1,907,792	6,956	2,220,644	7,885	600,829	2,302
낙지	151,704	354	146,444	361	51,485	145	20,978	57
굴	425,438	564	204,736	377	217,274	385	75,890	113
피조개	495,445	1,334	749,975	2,038	586,150	1,720	126,166	392
기타조개	33,863,184	39,455	34,757,203	41,953	42,617,434	52,514	27,676,501	31,622
기타연체동물	8,969,045	11,924	12,572,761	15,465	15,721,938	18,071	7,526,739	9,518
툰	-	-	13,921	237	1,775	39	28,217	522
미역	15,819	17	828,712	717	1,678,954	1,629	2,590,250	2,250
한천	1,200	38	-	-	-	-	-	-
기타해조류	13,500	19	10,400	16	-	-	-	-
어육	-	-	11,895	36	-	-	-	-
명란	-	-	-	-	-	-	-	-
기타어란	-	-	-	-	-	-	-	-
기타수산물통조림	1,620	19	59,898	216	37,902	129	10,000	32
새우젓	120	1	-	-	-	-	-	-
기타염장수산물	182,138	349	-	-	43,060	127	-	-
건조수산물	2,281,489	19,496	1,949,488	18,638	2,125,914	21,245	210,160	2,476
기타수산가공품	5,661,195	19,939	5,188,004	21,378	4,179,983	16,249	873,442	3,323
수산부산물	12,992	32	13,500	81	6,000	31	30,090	105
기타수산물	436,961	3,367	849,969	4,516	1,724,257	5,294	426,311	984

* 자료 : 통일부 남북교역

《 참고 3-2 》

우리 수산물 대북 반출 현황

(단위: Kg, 천달러)

품 목 (Items)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총 계	557,464	1,364	2,619,158	4,686	2,612,736	3,144	3,062,259	2,661
갈치	-	-	-	-	-	-	-	-
명태	-	-	-	-	515	1	947	2
넙치	-	-	2,500	25	-	-	-	-
가자미	42	-	-	-	-	-	-	-
대구	37	-	1,399	10	-	-	-	-
기타어류	14,583	77	28,346	61	3,300	5	17,360	24
새우	-	-	18,064	132	9,460	17	31,500	255
기타계	7,807	39	1,389	16	1,810	21	-	-
오징어	107	2	745	4	-	-	56	1
문어	70,200	169	82,850	558	2,186	5	2,096	6
낙지	-	-	40,800	56	1,660	4	3,008	8
굴	33,000	46	-	-	402	1	-	-
피조개	-	-	-	-	6,040	42	-	-
기타조개	145,756	164	155,340	273	71,891	94	-	-
기타연체동물	61,570	60	31,658	64	29,415	30	10,085	7
김	2,899	18	5,263	47	378	4	2,406	6
톳	-	-	25,267	279	13,455	229	25,320	354
미역	-	-	1,555,722	879	2,047,668	984	2,864,562	1,385
기타해조류	17,367	44	2,410	107	8,579	61	14	1
어육	-	-	12,528	5	-	-	-	-
한천	-	-	-	-	-	-	-	-
어류통조림	1,790	8	20	-	200	-	303	0
기타수산물통조림	1,554	12	975	5	-	-	53	0
기타염장수산물	-	-	-	-	13,300	24	-	-
건조수산물	23,200	182	8,280	41	52,195	397	12,000	182
기타수산가공품	160,161	452	591,931	1,948	314,485	1,085	62,045	172
수산부산물	7,275	20	12,500	76	3,000	6	-	-
기타수산물	10,115	71	41,152	101	32,797	135	30,505	257

* 자료 : 통일부 남북교역

《 참고 3-3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연도	한 국 어 선						일 본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99	1,704	674	39.6	149,218	27,335	18.3	1,601	517	32.3	93,773	22,117	23.6
'00	1,639	863	52.7	125,197	31,422	24.1	1,601	535	33.4	93,773	7,293	7.8
'01	1,464	952	65.0	99,773	23,839	23.9	1,459	479	32.8	93,773	16,193	17.3
'02	1,395	992	71.1	89,773	28,879	32.2	1,395	354	25.4	89,773	19,669	21.9
'03	1,232	875	71.0	80,000	28,104	35.1	1,232	193	15.7	80,000	13,158	16.4
'04	1,098	758	69.0	70,000	20,669	29.5	1,098	271	24.7	70,000	25,032	35.8
'05	1,086	731	67.3	67,000	20,306	30.3	1,086	183	16.9	67,000	9,640	14.4
'06	1,050	749	71.3	63,500	24,125	38.0	1,050	148	14.1	63,500	9,517	15.0
'07	1,025	675	65.9	60,500	23,819	39.4	1,025	137	13.4	60,500	24,335	40.2
'08	1,000	602	60.2	60,000	14,419	24.0	1,000	133	13.3	60,000	26,683	44.5
'09	940	560	59.6	60,000	30,667	51.1	940	118	12.6	60,000	15,066	25.1
'10	900	588	65.3	60,000	22,982	38.3	900	122	13.6	60,000	12,467	20.8
합계	14,533	9,019	61.9	984,961	296,566	29.7	14,387	3,190	22.2	892,092	201,170	22.5

※ '09년 실적은 '09.3.1 ~ '10.2.28까지 기간

※ '10년 실적은 '10.3.1 ~ '11.2.28까지 기간

- ☞ 한국어선 10개업종(2009년도) : 풍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대형기저, 중형기저, 선망, 연승, 외줄낚시,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원양오징어
- ☞ 일본어선 10개업종(2009년도) :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 총합저인망, 오징어채낚기, 연승, 예인조어업, 가다랭이일본조, 일본조어업, 청새치돌붕어업, 고정식자망

《 참고 3-4 》

한·중 어업협정 이후 상호 EEZ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구분	한 국 어 선						중 국 어 선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어선척수			어획할당량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합의	입어	%	합의	어획	%
'01.6 ~'02	1,402	403	28.7	90,000	3,993	4.4	2,796	939	33.6	164,400	45,837	27.9
'03	1,402	329	23.5	60,000	3,777	6.3	2,531	1,532	60.5	93,000	37,980	40.8
'04	1,402	380	27.1	60,000	3,564	5.9	2,250	1,310	58.2	83,000	17,340	20.9
'05	1,600	383	23.9	68,000	5,580	8.2	2,100	1,586	75.5	77,500	27,879	36.0
'06	1,600	232	14.5	68,000	2,622	3.9	1,975	1,729	87.5	72,900	30,391	41.7
'07	1,600	198	12.4	68,000	2,821	4.1	1,917	1,843	96.1	71,930	51,015	70.9
'08	1,600	167	10.4	68,000	4,219	6.2	1,859	1,794	96.5	71,000	55,571	78.3
'09	1,600	179	11.2	68,000	3,431	5.1	1,800	1,748	97.1	70,000	54,335	77.6
'10	1,600	170	10.6	66,000	3,231	4.9	1,750	1,679	95.9	67,500	44,863	66.5
합계	13,806	2,441	17.7%	616,000	33,238	5.4%	18,978	14,160	74.6%	771,230	365,211	47.4%

《 참고 3-5 》

한·중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 **우리어선**

(2010년기준/단위: 척/톤)

업종	2010		2011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00	66,000	1,600	64,000	-	△2,000
저인망류	187(18)	7,165	187(18)	7,165	-	△1,000
선 망	173	12,000	173	11,000	-	-
자망류	167	4,742	167	4,742	-	-
안강망	87	2,180	87	2,180	-	-
낙시류	881(250)	33,624	881(250)	33,624	-	-
통발류	105(17)	6,289	105(17)	5,289	-	△1,000
운반선	13	-	13	-	-	-

* ()는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어선. 운반선은 합계에 미포함

□ **중국어선**

(2010년기준/단위: 척/톤)

업종	2010		2011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750	67,500	1,700	65,000	△50	△2,500
타 망	870	43,357	840	41,862	△30	△1,495
- 쌍타망	850	42,497	824	41,862	△26	△1,301
- 단타망	20	860	16	666	△4	△194
위 망	92	11,646	92	10,869	-	△777
유 망	733	8,356	713	8,128	△20	△228
우 조	55	4,141	55	4,141	-	-
운반선	64	-	62	-	△2	-

* 운반선은 합계에 미포함

《 참고 3-6 》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2010.12.31)

□ 총 단속건수(위반유형별 분류)

	합계	나 포												훈 방	
		계 (나포)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내 영해)	EEZ위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계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특정 해역)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계	망목 위반 (어구 위반)	조 업 수 역	조 업 방 법	조 지 위 반 어 적 비	일 련 관 망 도 치 용 미	입 역 통 보		조 기 입 역
○ '99	80	80	60 (-)	20	20	-	-	-	-	-	-	-	-	-	-
○ '00	62	62	34 (-)	28	28	-	-	-	-	-	-	-	-	-	-
○ '01	174	174	34 (-)	140	27	62 (11)	51	9	6	-	18	14	4	-	-
-1~6월	49	49	30 (-)	19	19	-	-	-	-	-	-	-	-	-	-
-7~12월	125	125	4 (-)	121	8	62 (11)	51	9	6	-	18	14	4	-	-
○ '02	175	175	30 (5)	145	10	108 (7)	27	19	5	2	1	-	-	-	-
○ '03	240	240	32 (29)	208	86	88 (9)	34	14	9	2	4	1	-	4	-
○ '04	443	437	47 (47)	390	49	101 (13)	240	8	5	-	217	-	-	10	6
○ '05	669	584	41 (38)	543	47	146 (18)	350	8	4	-	310	-	-	28	85
○ '06	549	522	23 (21)	499	38	133 (12)	328	6	5	3	246	21	-	47	27
○ '07	508	494	26 (23)	468	47	70 (31)	351	7	-	20	260	41	2	21	14
○ '08	446	432	12 (9)	420	32	76 (8)	312	36	2	2	233	1	-	38	14
○ '09	388	381	27 (18)	354	34	91 (9)	229	21	7	0	154	18	0	29	7
○ '10	375	370	53 (22)	317	30	91 (1)	196	30	15	0	121	1	0	29	5
○ 협정 이후	3,917	3,759	295 (212)	3,464	381	966 (119)	2,117	158	58	29	1,563	97	6	206	158

□ 업종별 위반사항

	계	기 선 자 만	유자망	선망	동발	연승	트롤	안강망	형망	운반선	조망
○ '99	80	72	6	-	-	-	2	-	-	-	-
○ '00	62	49	6	4	1	-	1	1	-	-	-
○ '01	174	118	51	-	2	1	-	1	-	1	-
- 1.1 ~6.29	49	41	8	-	-	-	-	-	-	-	-
- 6.30~12.31	125	77	43	-	2	1	-	1	-	1	-
○ '02	175	148	23	-	4	-	-	-	-	-	-
○ '03	240	188	24	-	12	-	-	-	15	1	-
○ '04	443 (6)	207	204 (5)	2	9	1	-	1	4	14 (1)	1
○ '05	669 (85)	282 (31)	328 (46)	14 (2)	14	1	-	4	2	23 (6)	1
○ '06	549 (27)	352 (16)	176 (11)	3	7	1		2		8	
○ '07	508 (14)	385 (12)	113 (2)	2 (-)	2 (-)				1	5	
○ '08	446 (14)	363 (10)	75 (0)	3 (4)				1 (0)		4 (0)	
○ '09	388 (7)	287 (7)	84 (0)	1 (0)	1 (0)					15 (0)	
○ '10	375 (5)	314 (5)	42 (0)		6 (0)					13 (0)	

※ ()는 훈방척수임

□ 월별 단속현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	80	7	-	5	8	7	8	-	-	4	19	18	4
'00	62	2	1	7	3	21	5	-	-	4	1	18	-
'01	174	-	2	16	16	11	4	3	1	13	37	40	31
'02	175	13	14	30	20	15	4	1	14	3	17	22	22
'03	240	15	19	29	4	22	27	5	13	26	22	35	23
'04	443 (6)	8	10	71 (2)	67 (2)	34 (1)	8	3	3	24	95 (1)	84	36
'05	669 (85)	31	7	43	65	53	6	4	15	65	206 (10)	147 (55)	27 (20)
'06	549 (27)	20 (7)	54 (8)	64 (1)	50 (-)	45 (5)	13 (-)	4 (-)	16 (-)	54 (3)	113 (1)	49 (-)	67 (2)
'07	508 (14)	28 (-)	47 (2)	107 (4)	56 (2)	22 (-)	16 (-)	0 (-)	27 (-)	20 (-)	83 (3)	69 (3)	33 (-)
'08	446 (14)	32 (1)	23 (0)	48 (2)	33 (0)	18 (0)	2 (1)	2 (0)	4 (0)	25 (0)	67 (0)	109 (6)	83 (4)
'09	388 (7)	8 (0)	34 (1)	41 (1)	37 (0)	36 (0)	1 (0)	2 (0)	2 (0)	14 (0)	73 (1)	63 (1)	77 (3)
'10	375 (5)	29 (0)	18 (0)	43 (1)	27 (0)	37 (0)	6 (0)	7 (0)	1 (0)	15 (0)	42 (0)	75 (0)	75 (4)

《 참고 3-7 》

일본EEZ 입어 한국어선 입어규모

(2011년 기준/ 단위 : 척, 톤)

업종 어종	계	꽂 치 봉수망	오징어 채낚기	대 형 기 저	중 형 기 저	선 망	연 승	외 줄 낚 시	복 어 채낚기	갈 치 채낚기	원 양 오징어	
허가 척수	'10	900	22(5)	353	29(5)	20	165	222	35	45	8	1
	'11	870	22(5)	353	16(4)	20	165	207	35	43	8	1
총합 당량	'10	60,000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11	60,000	7,000	8,480	500	2,997	34,230	5,521	300	900	67	5
꽂 치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7,000	7,000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전 쟁 이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3,5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3,5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고등어류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3,385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기타	23,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정 어 리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8,750	금지	6,8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8,750	금지	6,800	20	기타	1,93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1,10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10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1,150	금지	목적채 포금지	기타	1,150	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목적채 포금지
참 돔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220	금지	목적채 포금지	28	100	기타	기타	20	72	기타	목적채 포금지
갈 치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2,080	금지	금지	기타	기타	목적채 포금지	2,060	10	금지	10	금지
기 타		13,965	금지	1,680	452	1,797	5,415	3,461	270	828	57	5
		13,915	금지	1,680	452	1,747	5,415	3,461	270	828	57	5

(주) 꽂치봉수망의()는 부속선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대형기선저인망의()는 대형트롤의 척수로 전체척수에 포함

《 참고 3-8 》

한국EEZ 입어 일본어선 입어규모

(2011년 기준/단위 : 척, 톤)

어종	업종	계	대 중 형	이서저인	총합저인	오징어	연승	예인조	가다랭이	일본조	청새치들	고장사
			선망어업	망어업	망어업	채낚기	어업	어업	일본조	붕어업	망어업	
총할량	'10	60,000	50,410	3,849	333	1,894	667	2,065	700	11	1	70
	'11	60,000	50,410	3,849	333	1,894	667	2,065	700	11	1	70
허가 척수	'10	900	162(130)	26(7)	54	133	95	410	29	7	1	8
	'11	870	162(130)	26(7)	54	127	89	367	29	7	1	8
전갱이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000	3,000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고등어류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7,814	37,814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정어리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목적채포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살오징어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3,150	1,500	220	30	1,40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가자미류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40	금지	기타	40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참돔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78	기타	기타	기타	목적채포금지	65	5	기타	2	기타	6
갈치		50	목적채포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50	목적채포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붕장어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50	금지	50	기타	목적채포금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5,818	8,096	3,529	263	494	602	2,060	700	9	1	64
		15,818	8,096	3,529	263	494	602	2,060	700	9	1	64

(주) 대중형 선망()는 등선 67(탐색선 8척포함)척, 운반선 63척의 합계로 총척수에 포함
 이서저인망의()는 트롤선 5척 및 운반선 2척의 합계로 총척수에 포함

《 참고 3-9 》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 피납현황

□ 위반시기별

(단위 : 척)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27	30	27	16	21	19	24	16	10	11	23	13	17
'99	20	4	2	-	2	-	1	3	2	1	1	1	3
'00	22	2	2	1	1	-	2	2	2	2	5	1	2
'01	24	2	5	1	2	2	2	3	-	1	2	2	2
'02	32	3	6	2	3	5	2	2	1	2	3	1	2
'03	27	6	-	1	2	3	3	1	2	1	4	2	2
'04	19	3	4	2	-	-	4	1	-	-	2	2	1
'05	15	2	3	3	3	1	-	1	-	-	1	-	1
'06	10	2	1			2	1	1	1	1			1
'07	15			4	2	4	3	-	-	-	1	1	
'08	18	4	2	1	4	1	2	-	-	2	1		1
'09	12				1	1	1		2	1	2	3	1
'10어기	13	2	2	1	1		3	2			1		1

※ '10년 어기는 '10.3.1~'11.2.28까지의 기간임

□ 업종별

(단위 : 척)

	계	소형 기저	연승	채남기	통발	자망	중형 기저	대형 기저	선망	트롤	기타
계	227	21	91	46	26	11	6	7	13	2	4
'99	20	6	5	3	1	4	-	1	-	-	-
'00	22	2	3	6	5	1	3	1	1	-	-
'01	24	6	7	4	2	1	-	-	3	1	
'02	32	2	9	10 (복어)	2	1	2	-	3	-	3
'03	27	4	10 (외줄)	5	3			1	3		1
'04	19	1	10	4	-	1	1	1	-	1	-
'05	15		5	2	8 (홍게)						
'06	10		4 (외줄)	4		1		1			
'07	15		7 (복합)	1	5 (기타)			2			
'08	18		14 (복합)	3		1					
'09	12		10	2							
'10어기	13		7	2		1			3		

□ 위반사항별

(단위 : 척)

	계	무허가	조업조건 및 절차 위반						기 타
			금지구역	조업구역	어구위반	허가장미소지 및 조업일지부실기재 어창용적도미소지	표지판 미부착	어획물 위 반	임검기피
계	227	49	22	19	10	102	7	-	18
'99	20	12	4	2	-	1	-	-	1
'00	22	4	7	2	3	2	-	-	4
'01	24	5	3	3	4	5	1	-	3
'02	32	4	1	2	-	23	1	-	1
'03	27	5 (영해1)	1	2	1	10	4	-	4
'04	19	3	2 (영해1)	1	-	11	-	-	2
'05	15	8 (영해2)	1	2		3			1
'06	10	1	1	1		7			
'07	15	4 (영해4)	1			8 (할당량 초과 1)			2
'08	18	1	1 (영해1)	2		14 (할당량 초과2)			
'09	12				2 (부설 위반 광력위반1)	10 (허가증미소지1, 어창용적도 미소지 1)			
'10어기	13	2		2		8	1		

◆ 일본어선 나포(협정발효 이후) : 총 15척 ('99년 4, '00년 1, '01년 3, '02년 1, '04년 6)

□ 시·도별

(단위 : 척)

	계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강원	경북	전남
계	227	72	36	5	75	23	12	4
'99	20	9	8	-	2	1	-	-
'00	22	8	4	4	2	2	2	-
'01	24	11	4	-	4	4	1	-
'02	32	11	3	-	8	8	1	1
'03	27	10	3	-	10	2	1	1
'04	19	6	-	-	7	3	2	1
'05	15	1	8		5		1	
'06	10	2	1		3	1	2	1
'07	15	3	5		6		1	
'08	18	4			13		1	
'09	12	3			8	1		
'10어기	13	4		1	7	1		

《 참고 3-10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 추진배경

-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10년간 119조원 투입)발표와 병행한 수산분야 대책 ※ 법적근거 없음

□ 주요내용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및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실현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주요 정책과제

- 자율관리어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제 개선
- 위생관리강화 등 소비자지향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직접지불제 도입 등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 인력육성, 연구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발전 동력의 확보
- 다기능 어항개발 등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등

□ 수산업·어촌투융자계획

-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 12.4조원
- 예산내역별 연도별 투융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04	2005~2009						'10~'13	'04~'13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9,656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58,963	124,441
생산기반 조성	4,426	23,494	4,394	4,681	4,684	4,721	5,014	24,716	52,636
유통개선	1,153	7,537	1,307	1,575	1,538	1,670	1,447	6,825	15,515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369	2,180	433	444	418	438	447	2,429	4,978
부담경감 및소득보전	3,066	18,308	3,340	3,223	3,539	3,848	4,358	19,382	40,756
해양환경	617	3,199	655	603	623	650	668	3,864	7,680
수급안정 기타	25	1,104	47	60	179	285	533	1,747	2,876

《 참고 3-11 》

수산진흥종합대책(2010)

□ 추진배경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99 최초 수립)
- 수립근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

□ 주요내용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정부 규제·지원 ⇒ 어업인 자율·자립
 - 자원관리 획일적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 변화관리 소극적·방어형 ⇒ 적극적·공세형
- 중점추진과제
 -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 수산진흥종합대책 투융자계획

- 5년간('10~'14) 총 투융자 규모 7조 1,233억원

(단위: 억원)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71,223	13,880	13,878	14,383	14,403	14,679

《 참고 3-12 》

한·미 FTA 수산분야 주요 협상 결과(’07.4.2 타결)

□ 수산물 관세 양허안

- 수산물 관세 양허단계는 즉시,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으로 합의
- 경쟁력 유지가 가능 품목은 단계별(즉시, 3년, 5년, 10년) 이행기간 확보, 주요 민감품목은 12~15년의 유예기간 확보

* 냉동명태 : 15년(10년 현행+5년 감축, TRQ), 냉동민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넙치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TRQ), 냉동 고등어 : 12년(8년 현행+4년 감축)

□ 관세특례제도

- 조정관세는 관세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행관세로 인정하기로 합의
- 기존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도 존치기로 합의

□ 수출용 활넙치 체장규제(22인치 이상 요구) 해제

- 수출용 활넙치가 양식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및 Tag 부착방식으로 체장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

□ 미국 어장 진출 및 어업투자 지분 확대

- 정례적으로 합동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개최하여 동 문제를 협의기로 합의

□ 수협의 금융서비스 협정문 적용제외

-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사업은 FTA가 아닌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기로 합의

* 단, 금융감독기관 지급여력기준은 준수하고 협정 발효일부터 3년간 유예

《 참고 3-13 》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주요내용(’07.6.28 발표)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병행
 - 향후 10년간(’08~’17) 7,262억원 재정지원

□ 직접적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실시

- 소득보전직불(지원기간 : 7년, 231억) : 사후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 폐업지원(지원기간 : 5년, 534억) :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

□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지원 병행(6,497억)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기간 : 10년, 541억) :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
 - 명태·민어(원양), 고등어·오징어(연근해), 넙치·볼락·뱀장어(양식)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유통설비 및 시설 현대화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 및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5,956억)
 - 조건불리 지역,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등 수산보전제 신규 도입
 -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어업인 참여의 자율관리 확대, 신 성장 동력 육성 및 어촌 소득 기반 확충 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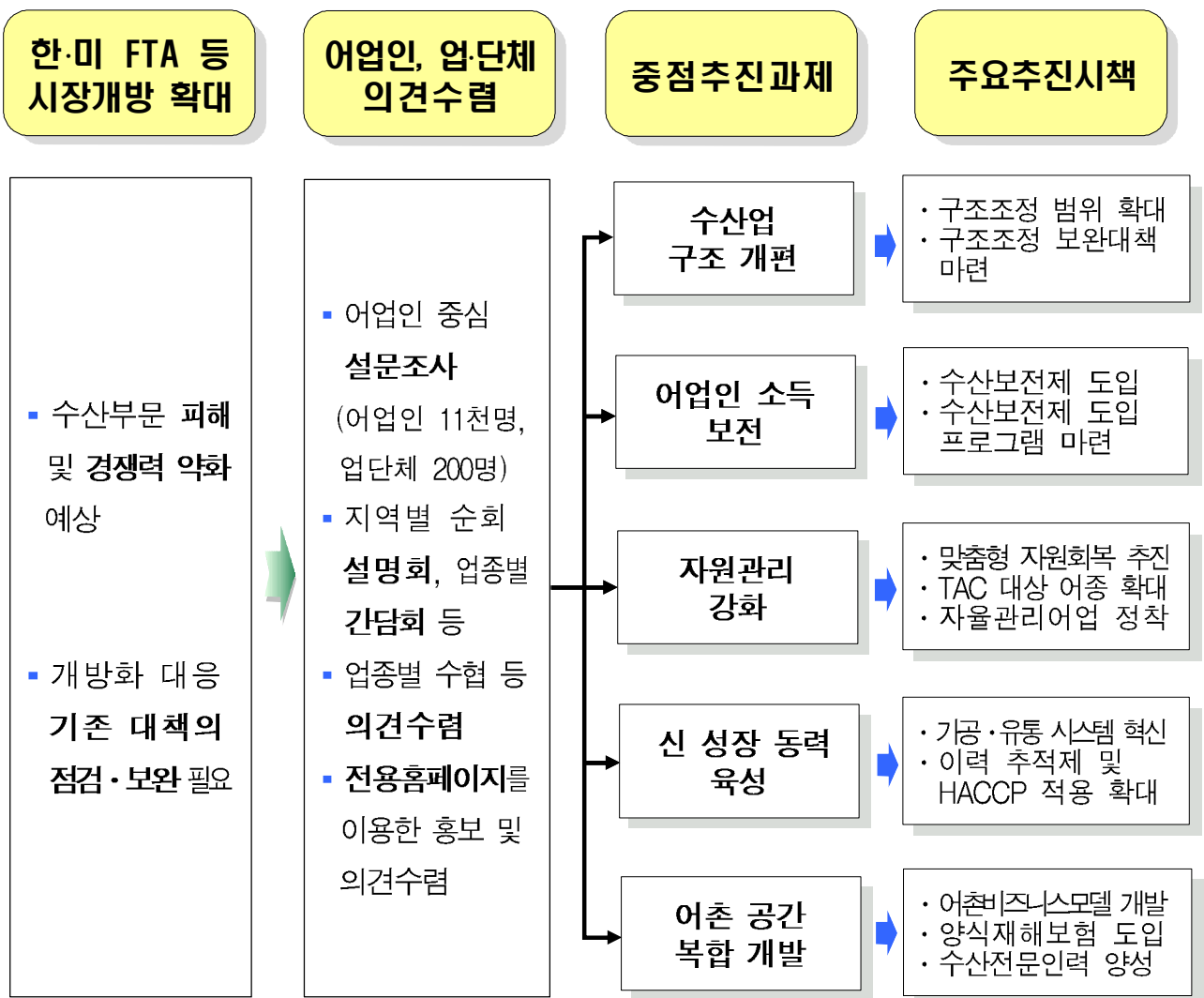
□ 한미 FTA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08~’13년 투융자분은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투융자 규모 확대

《 참고 3-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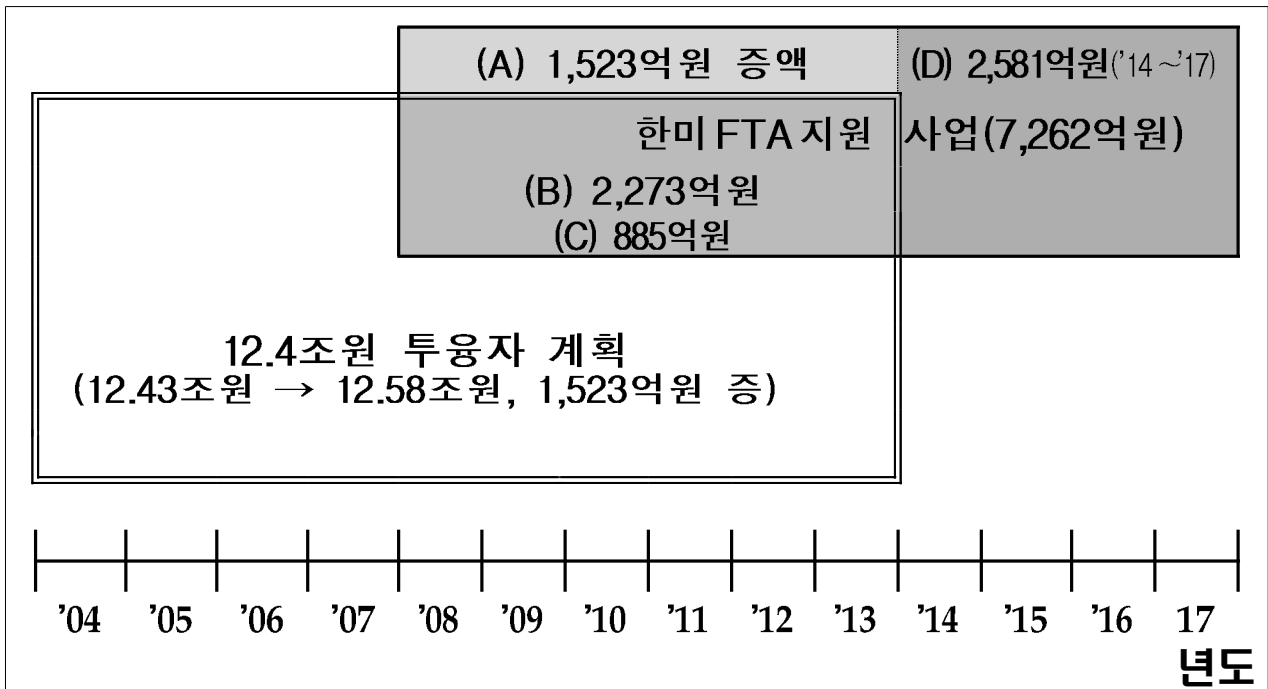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보완(2007)

- 한·미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개방친화형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반영하여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수정·보완
 - 기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2004)」 편제를 개편하고 수산보전제 등 신규사업 14개를 발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폐지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수정 보완 방향



- '08~'13간 한·미 FTA 대책에 따른 총 소요는 4,681억원, 당초 투융자 대비 순증액은 2,408억원(2,273 → 4,681억원)
 - 순증액 2,408억원은 12.4조원 투융자 계획 자체 조정을 통해 885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523억원은 추가 확보하는 모습
- 12.4조원 투융자 계획은 투자실적 평가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한·미 FTA 대책소요 추가반영 등을 통해 12.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0.2조원 수준 증액



- * (A) 1,52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 증액 규모
- * (B) 2,273억원 : '08~'13간 12.4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 FTA 대책사업 규모
- * (C) 885억원 : '08~'13간 기존 12.4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 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 (D) 2,581억원 : 12.4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 (A)+(B)+(C)+(D) : 7,262억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 참고 3-15 》

12.4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 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04 ~ '07			'08 ~ '13			합계('04 ~ '13)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41,812	41,812	-	82,522	84,045	1,523	124,334	125,857	1,523
수산업 구조개편	4,713	4,713	-	8,854	8,472	△382	13,567	13,185	△382
어업인 소득보전	10,685	10,685	-	15,534	18,615	3,081	26,219	29,300	3,081
자원관리 강화	8,480	8,480	-	19,832	17,414	△2,418	28,312	25,894	△2,418
신성장동력 육성	7,457	7,457	-	15,071	16,641	1,570	22,528	24,098	1,570
어촌공간 복합 개발	10,477	10,477	-	23,231	21,597	△1,634	33,708	32,074	△1,634
FTA 직접 피해지원	-	-	-	-	1,306	1,306	-	1,306	1,306

《 참고 3-16 》

수산분야 FTA '08~'17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계	726,226
보조	672,526
용자	53,700
1. 수산발전기금	130,600
< 신규사업 >	130,600
□ 소득보전직불(보조)	23,100
□ 폐업지원(보조)	53,400
□ 품목별 경쟁력강화	54,100
- 관리회사제도 도입(용자)	20,2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24,000
- 활어운반선건조(용자)	6,000
-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용자)	3,500
- 활어 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지원(보조)	400
2. 기존회계	595,626
일반회계	245,094
농특회계	317,590
균특회계	7,866
기금일반	25,076
< 신규사업 >	266,985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일반, 보조)	221,779
□ 수산보전제	27,000
-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보전제(농특, 보조)	6,000
- 조건불리 지역보전제(농특, 보조)	21,000
□ 기타	18,206
- 수산업컨설팅지원(농특, 보조)	2,54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농특, 보조)	10,000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균특, 보조)	2,966
-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위한 핵심전략연구(일반, 보조)	2,700
< 기존사업 증액 >	328,641
□ 총어획량 제도 운영(일반, 보조)	20,615
□ 수산물가공물류센터건립(농특, 보조)	9,000
□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농특, 보조)	28,60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농특, 보조)	135,100
□ 해양폐기물정화(지사체)(기금, 보조)	25,076
□ 기타	110,250
-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건립(균특, 보조)	4,900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농특, 보조)	105,350

《 참고 3-17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산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업에 안정적·체계적인 자금지원

□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시행령 제21조의2의제3호)
 - 수산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내 타 사업과 혼용을 방지
 - * 수산발전기금 : 한·일 어업협정 체결('99.1)로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제정('99.9)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추진현황

- '99. 12. 7 : 시행령 제정(이후 '07. 6. 29까지 총 8회 개정)
- '07. 2월 : 개정시안 마련
- '07. 3. 2~3. 15 : 관계부처 1차 협의
- '07. 7. 5~7. 27 : 관계부처 2차 협의
- '07. 7. 20~27 : 부패영향평가
- '07. 8. 3~8. 23 : 입법예고(관보)
- '07. 8. 24~9. 17 : 법제처 심사
- '07. 9. 20~9. 21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07. 10. 4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이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참고 3-1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농산물·수산물의 정의 신설

- 농산물·수산물의 구분에 따라 지원방법 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정의 필요
-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

-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
- 지원사업에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 추가
- 피해산정 기준·방식과 보조·융자사업 지원의 기준·절차·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여건변화에 따른 지원요건 등의 정비를 통하여 농어업 경쟁력 상승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가격의 하락기준”에서 “생산액의 감소기준”으로 변경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허용 지원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국제무역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개별적이 아닌 전체 체결국가를 기초로 지원기금 통합 조성·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
- ※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

IV. 수산 통계

1. 어업별 생산량(총괄)	129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130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132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136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137
6. 수산물 수입 현황	138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141
8. 주요 품목별 중국 수입 현황	142
9. 주요 품목별 일본 수출 현황	143
10. 업종별 어선현황	144
11. 수산종묘 방류량	144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145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145

1. 어업별 생산량 (총괄)

(단위 : 천톤, 억원)

	합 계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2	3,201	29,965	1,207	17,366	935	6,024	1,025	5,326	34	1,249
'93	3,336	34,233	1,526	22,835	1,038	5,690	741	4,513	30	1,195
'94	3,477	39,395	1,486	25,206	1,072	7,206	887	5,569	31	1,414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96	3,248	39,963	1,624	27,351	875	6,433	719	4,926	30	1,253
'97	3,244	40,906	1,367	24,834	1,015	9,218	829	5,469	32	1,385
'98	2,835	43,884	1,308	22,936	777	9,503	723	10,009	27	1,436
'99	2,911	43,204	1,336	22,800	765	8,319	791	10,944	18	1,142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1	2,665	42,529	1,252	24,683	656	7,172	739	9,641	18	1,033
'02	2,476	42,052	1,096	24,870	782	7,945	580	8,094	19	1,143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9	1,152	29,391	1,386	15,995	710	9,901	27	2,231
'08	3,361	63,550	1,286	32,296	1,382	15,225	665	13,274	29	2,752
'09	3,182	69,242	1,227	36,404	1,313	18,463	612	11,638	30	2,737
'10	3,127	74,240	1,134	39,138	1,370	18,118	592	13,645	31	3,338

2. 시도별 생산량 및 금액

(단위: MT/ 천원)

시도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부산광역시	어 류	308,401	452,146,909
부산광역시	갑 각 류	1,078	3,192,776
부산광역시	패 류	10,107	32,391,440
부산광역시	연체동물	58,054	74,107,442
부산광역시	기타수산동물	1,498	4,937,269
부산광역시	해 조 류	45,363	23,131,264
대구광역시	어 류	486	2,520,226
인천광역시	어 류	9,744	39,706,782
인천광역시	갑 각 류	11,569	107,655,373
인천광역시	패 류	6,884	13,408,598
인천광역시	연체동물	2,036	17,588,645
인천광역시	기타수산동물	16	149,191
인천광역시	해 조 류	619	500,558
광주광역시	어 류	3	13,000
광주광역시	기타수산동물	0	2,250
대전광역시	어 류	12	84,430
울산광역시	어 류	9,470	33,390,588
울산광역시	갑 각 류	358	3,434,406
울산광역시	패 류	685	2,794,468
울산광역시	연체동물	4,578	11,261,228
울산광역시	기타수산동물	77	330,240
울산광역시	해 조 류	10,959	4,445,848
경 기 도	어 류	6,333	44,655,092
경 기 도	갑 각 류	2,232	21,520,878
경 기 도	패 류	6,494	10,415,450
경 기 도	연체동물	543	9,103,470
경 기 도	기타수산동물	0	255,539
경 기 도	해 조 류	9,302	6,085,251
강 원 도	어 류	20,287	77,713,996
강 원 도	갑 각 류	13,591	25,615,277
강 원 도	패 류	1,013	5,576,966
강 원 도	연체동물	26,319	74,044,076
강 원 도	기타수산동물	1,736	5,275,034
강 원 도	해 조 류	130	105,532
충청북도	어 류	2,225	17,599,225
충청북도	갑 각 류	10	176,197
충청북도	패 류	218	1,920,345
충청북도	기타수산동물	18	517,210

(단위: MT/ 천원)

시도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충청남도	어 류	35,281	104,262,437
충청남도	갑 각 류	7,680	70,098,393
충청남도	패 류	21,165	50,087,034
충청남도	연체동물	4,632	35,341,264
충청남도	기타수산동물	344	3,143,597
충청남도	해 조 류	19,354	13,036,355
전라북도	어 류	25,794	97,357,430
전라북도	갑 각 류	4,367	28,646,153
전라북도	패 류	16,962	30,555,996
전라북도	연체동물	1,700	10,496,634
전라북도	기타수산동물	179	2,253,332
전라북도	해 조 류	34,218	20,936,099
전라남도	어 류	167,942	669,378,761
전라남도	갑 각 류	27,103	113,480,893
전라남도	패 류	58,264	238,728,745
전라남도	연체동물	12,330	154,261,453
전라남도	기타수산동물	534	4,641,734
전라남도	해 조 류	794,068	264,650,006
경상북도	어 류	59,436	142,248,460
경상북도	갑 각 류	18,414	64,093,511
경상북도	패 류	1,216	6,203,091
경상북도	연체동물	95,009	157,501,521
경상북도	기타수산동물	2,320	6,260,530
경상북도	해 조 류	1,191	1,356,735
경상남도	어 류	263,108	742,066,095
경상남도	갑 각 류	3,442	17,978,551
경상남도	패 류	303,211	152,512,619
경상남도	연체동물	9,112	45,527,874
경상남도	기타수산동물	14,046	30,933,259
경상남도	해 조 류	11,446	9,449,928
제주도	어 류	94,175	566,821,620
제주도	갑 각 류	858	1,863,007
제주도	패 류	2,972	17,124,960
제주도	연체동물	1,990	8,608,897
제주도	기타수산동물	2,535	11,326,863
제주도	해 조 류	8,240	6,566,911

3.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 수출현황

○ 품목별

(단위 : 톤, 천\$,%)

구 분	'08		'09		'10		'10/'09	
	수량	금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613,823	1,454,635	652,214	1,511,230	793,045	1,789,162	121.6	118.3
활 어	5,961	64,516	6,686	71,624	6,471	85,641	96.7	119.5
신선·냉장	27,139	151,525	30,744	174,345	30,129	192,678	97.9	110.5
냉 동	462,341	873,682	499,151	897,662	608,826	1,074,204	121.9	119.6
기 타	118,382	364,912	115,633	367,599	147,619	445,639	127.6	121.2

○ 국가별

(단위 : 천\$, %)

구 분	'07	'08	'09	'10	'10/'09
합 계	1,225,832	1,454,635	1,511,230	1,798,162	119.0
일 본	572,908	687,471	734,134	859,483	117.1
중 국	156,565	193,461	145,711	231,223	158.7
태 국	87,678	122,943	127,733	126,824	99.3
미 국	98,876	114,779	128,885	142,166	110.3
뉴 질 랜드	68,293	60,623	70,461	71,915	102.1
스 페 인	58,655	40,474	41,437	55,491	133.9
이 탈 리 아	25,346	25,247	23,231	34,331	147.8
베 트 남	8,812	19,320	22,407	32,009	142.9
대 만	17,540	18,734	18,208	22,314	122.6
멕 시 코	6,336	11,937	1,353	5,831	431.0
필 리 핀	12,594	11,874	18,957	13,249	69.9
인 도 네 시 아	9,011	11,080	13,551	9,284	68.5
홍 콩	11,331	9,546	12,963	27,980	215.8
프 랑 스	3,427	9,268	13,731	11,054	80.5
기 타	88,460	117,878	138,468	155,008	111.9

○ 어종별

(단위: 천\$, %)

구 분	'07	'08	'09	'10	'10/'09
합 계	1,225,832	1,454,635	1,511,230	1,798,162	119.0
참 치	275,153	293,189	314,373	374,354	119.1
오징어	123,768	126,536	108,052	114,762	106.2
김	59,728	75,313	81,507	105,197	129.1
굴	40,145	46,260	42,247	66,057	156.4
삼 치	26,869	45,464	45,361	54,635	120.4
붕장어	37,938	44,168	39,382	42,105	106.9
계 살	32,275	43,484	41,986	43,054	102.5
넙 치	44,154	43,369	51,812	70,657	136.4
돔	24,525	36,379	28,904	29,622	102.5
고등어	14,107	30,432	38,097	27,364	71.8
전갱이	12,946	29,242	21,117	24,825	117.6
전복	15,040	20,997	33,751	36,820	109.1
명태	12,353	20,860	14,387	29,595	205.7
미역	17,667	20,584	16,811	19,039	113.3
바지락	12,662	19,219	34,763	42,960	123.6
캐비아	13,097	16,691	24,526	30,397	123.9
새꼬리민태	13,281	16,689	13,967	20,624	147.7
이빨고기	13,471	15,808	23,437	28,504	121.6
피조개	13,998	15,103	11,832	14,067	118.9
돔	21,250	14,155	17,551	20,242	115.3
기타	401,405	480,693	507,367	603,282	118.9

○ 총수출 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

구 분	'07	'08	'09	'10	'10 / '09
총 수 출	371,489	419,083	361,200	466,383	129.1
수 산 물	1,226	1,455	1,511	1,798	118.9
구 성 비	(0.3)	(0.3)	(0.4)	(0.4)	-

□ 수입현황

○ 품목별

(단위 : 톤, 천 \$, %)

구 분	'08		'09		'10		'10 / '09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4,186,512	3,097,450	4,080,425	2,895,495	4,715,725	3,458,400	115.6	119.4
활 어	42,164	285,320	31,635	171,377	33,635	250,683	106.3	146.3
신선·냉장	103,616	313,504	99,298	284,904	102,143	302,771	102.9	106.3
냉 동	821,677	1,827,640	850,294	1,788,739	905,970	2,084,306	106.5	116.5
기 타	3,219,055	670,986	3,099,198	650,475	3,673,977	820,640	118.5	126.2

○ 국가별

(단위 : 천 \$, %)

구 분	'07	'08	'09	'10	'10 / '09
합 계	3,056,368	3,097,450	2,895,495	3,458,400	119.4
중 국	1,070,862	1,018,678	854,256	1,096,264	128.3
러 시 아	423,392	384,434	435,573	495,267	113.7
베 트 남	267,964	305,841	305,151	376,338	123.3
일 본	273,477	224,990	195,063	226,204	116.0
미 국	144,242	140,273	123,453	126,179	102.2
태 국	149,270	113,910	85,141	100,957	118.6
대 만	83,342	85,479	88,136	96,041	109.0
칠 레	80,050	77,269	81,407	76,957	94.5
인 도 네 시 아	55,280	76,445	67,470	63,970	94.8
홍 콩	14,854	55,186	15,867	55,912	352.4
노 르 웨 이	61,615	53,401	69,571	97,108	139.6
카 나 다	52,544	46,431	47,045	52,950	112.6
페 루	37,416	46,316	40,259	41,514	103.1
말 레 이 시 아	12,994	25,663	32,871	46,510	141.5
아 르헨티나	28,915	23,989	21,693	22,813	105.2
기 타	300,151	419,145	432,539	483,416	111.8

○ 어종별

(단위 : 천\$, %)

구 분	'07	'08	'09	'10	'10 / '09
합 계	3,056,368	3,097,450	2,895,495	3,458,400	119.4
명 태	363,836	326,488	330,383	416,233	126.0
새 우	246,759	211,255	188,273	217,184	115.4
조 기	164,644	143,654	110,780	150,927	136.2
낙 지	125,526	128,506	118,480	154,129	130.1
참 치	93,633	115,294	111,307	89,278	80.2
갈 치	109,767	89,813	98,202	107,986	110.0
새 우 살	83,003	87,033	94,293	106,037	112.5
오 징 어	86,192	75,751	62,822	90,063	143.4
아 귀	77,425	74,740	57,597	82,664	143.5
돔	58,464	66,558	50,008	46,800	93.6
꽃 계	82,249	66,222	54,269	45,626	84.1
연 어	71,509	63,693	67,317	68,918	102.4
주 꾸 미	47,846	56,456	62,497	77,129	123.4
실 장 어	20,647	54,452	13,885	53,073	382.2
어 란	70,231	49,811	63,429	67,606	106.6
계	49,033	39,243	41,791	40,384	96.6
취 치	38,113	37,963	41,912	42,168	100.6
농 어	36,588	36,663	23,871	39,054	163.6
퐁 치	36,509	36,517	46,198	46,179	100.0
골 뱅 이	36,283	35,042	32,699	33,940	103.8
기 타	1,158,111	1,302,296	1,225,482	1,483,022	121.0

○ 총수입대비 수산물 구성비

(단위 : 백만\$, %)

구 분	'07	'08	'09	'10	'10 / '09
총 수 입	356,846	435,275	323,085	425,212	131.6
수 산 물	3,056	2,954	2,895	3,458	119.4
구 성 비	(0.9)	(0.6)	(0.9)	(0.8)	-

4. 국가전체 수출 대 수산물 수출

(단위 : 천\$, %)

구 분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60	32,827	5,755	17.5
'70	835,185	82,324	9.9
'80	17,504,862	759,524	4.3
'90	65,015,731	1,513,094	2.3
'95	125,057,988	1,721,748	1.4
'97	136,164,204	1,492,588	1.1
'98	132,313,143	1,369,014	1.0
'99	143,685,459	1,520,534	1.1
'00	172,267,510	1,504,470	0.9
'01	150,439,144	1,273,619	0.8
'02	162,470,528	1,160,435	0.7
'03	193,817,443	1,129,385	0.6
'04	253,844,672	1,278,638	0.5
'05	284,418,743	1,193,117	0.4
'06	325,464,848	1,088,948	0.3
'07	371,489,086	1,225,832	0.3
'08	419,083,091	1,446,568	0.3
'09	361,199,736	1,511,230	0.4
'10	466,383,762	1,798,162	0.4

수산물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까지 15억\$ 내외 수출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0년도 수산물 수출은 17억 9천만\$로 전체 수출액 4,663억\$ 중 0.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9%의 증가를 보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첨단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 비중이 매년 정체되고 있음

5. 국가전체 수입 대 수산물 수입

(단위 : 천\$, %)

	국가전체(A)	수산물(B)	수산물 비중(B/A)
'80	22,291,663	37,284	0.2
'85	31,135,655	83,229	0.3
'90	69,843,678	368,095	0.5
'95	135,119,933	842,808	0.6
'97	144,616,374	1,045,474	0.7
'98	93,281,754	587,481	0.6
'99	119,752,282	1,178,968	1.0
'00	160,481,018	1,410,598	0.9
'01	141,097,821	1,648,372	1.2
'02	152,126,153	1,884,417	1.2
'03	178,826,657	1,961,145	1.1
'04	224,462,687	2,261,356	1.0
'05	261,238,264	2,383,574	0.9
'06	309,382,632	2,769,348	0.9
'07	356,845,733	3,056,368	0.9
'08	435,274,737	3,097,450	0.7
'09	323,084,521	2,895,495	0.9
'10	425,212,160	3,458,400	0.8

수산물 수입은 1999년 12억\$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도는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산물의 수입단가가 높아져 전년보다 6.5% 수입이 감소하여 약 29억\$의 수입을 기록하였고, 2010년도는 수산물 수입은 34억 5천만\$로 전체수입액 4,252억\$ 중 0.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9%의 증가를 보임

6. 수산물 수입 현황

□ 연도별 주요 국가별

(단위 : 천\$)

	계	중 국	러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기 타
'94	726,267	111,831	176,275	15,074	42,323	135,489	245,275
'95	842,808	128,874	209,928	14,660	46,053	143,814	299,479
'96	1,080,457	217,354	213,727	12,906	58,875	175,902	678,764
'97	1,045,474	271,543	176,108	18,306	71,650	130,163	667,770
'98	587,481	197,120	106,178	11,446	37,637	83,977	436,358
'99	1,178,968	413,270	205,033	39,549	107,206	129,816	894,874
'00	1,410,598	486,841	125,031	72,240	185,109	145,366	1,014,587
'01	1,648,372	634,449	153,756	101,486	139,129	158,520	1,187,340
'02	1,884,417	719,314	215,638	121,733	146,497	173,774	1,376,956
'03	1,961,145	713,538	299,252	129,878	148,699	152,677	517,101
'04	2,261,356	909,536	276,783	143,524	180,620	136,225	614,668
'05	2,383,574	936,351	277,216	163,642	173,140	152,555	680,670
'06	2,769,348	1,034,192	347,079	206,482	224,311	150,544	806,740
'07	3,056,368	1,070,862	423,392	267,964	273,477	144,242	876,431
'08	3,097,450	1,018,678	384,434	305,841	224,990	140,273	1,023,234
'09	2,895,495	854,256	435,537	305,151	195,063	123,453	982,035
'10	3,458,400	1,096,264	495,267	376,338	226,204	126,179	1,138,148

우리나라의 2010년도 수산물 수입 대상 국가는 100여개 국가로 이중 연간 1억불이상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등 5개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산물 수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최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 중 30%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제품별 수입

(단위 : 천\$)

	계	활어	신선·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염수장	밀폐용기	기타
'94	726,267	23,919	36,054	541,693	445	908	22,683	12,672	87,893
'95	842,808	28,575	48,307	592,373	659	3,076	22,652	16,506	130,660
'96	1,080,457	46,425	64,082	734,030	486	9,272	29,393	2,104	194,665
'97	1,045,474	43,231	65,431	717,062	687	10,045	29,631	1,698	177,689
'98	587,481	21,351	25,427	431,353	562	9,944	14,028	1,401	83,415
'99	1,178,968	73,327	70,795	859,932	1,495	20,681	22,308	1,276	129,154
'00	1,410,598	118,592	117,739	928,040	2,333	46,252	21,670	3,073	172,899
'01	1,648,372	132,325	149,743	1,110,844	1,961	50,694	22,607	6,128	174,070
'02	1,884,417	152,662	241,611	1,207,193	2,596	55,345	25,861	5,330	190,819
'03	1,961,145	159,029	270,779	1,239,212	2,183	43,663	26,850	8,768	210,661
'04	2,261,356	201,175	318,305	1,337,986	2,124	73,604	30,669	13,211	284,282
'05	2,383,574	176,449	330,782	1,406,323	2,761	87,579	31,002	13,925	334,753
'06	2,769,348	197,501	374,837	1,660,663	1,848	97,168	35,268	13,158	387,692
'07	3,056,368	224,675	408,278	1,872,942	3,953	92,352	32,737	18,512	402,919
'08	3,097,450	285,320	313,504	1,827,640	3,464	77,231	29,392	17,660	543,240
'09	2,895,495	171,377	284,904	1,788,739	3,451	64,275	25,563	8,442	548,744
'10	3,458,400	250,683	302,771	2,084,306	4,185	110,225	25,835	10,788	669,607

제품별 수산물 수입은 냉동품, 냉장품, 활어, 건조품의 순이며 전체 제품별 수산물 중 냉동품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품의 수입규모는 증가추세임

□ 연도별 주요 품종별 수입

(2009년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05	'06	'07	'08	'09	'10
합 계	2,383,574	2,769,348	3,056,368	2,954,008	2,895,495	3,458,400
명 태	277,687	289,204	363,836	326,488	330,383	416,233
새 우	167,451	219,122	246,759	211,255	188,273	217,184
조 기	142,713	147,873	164,644	143,654	110,780	150,927
낙 지	67,029	82,072	125,526	128,506	118,480	154,129
참 치	48,333	60,455	93,633	115,294	111,307	89,278
갈 치	100,306	102,892	109,767	89,813	98,202	107,986
새 우 살	46,553	60,496	83,003	87,033	94,293	106,037
오 징 어	64,144	85,971	86,192	75,751	62,822	90,063
아 귀	60,101	72,062	77,425	74,740	57,597	82,664
뚝	41,666	57,941	58,464	66,558	50,008	46,800
꽃 계	67,717	82,359	82,249	66,222	54,269	45,626
연 어	36,000	56,853	71,509	63,693	67,317	68,918
주 꾸 미	28,290	33,710	47,846	56,456	62,497	77,129
실 장 어	29,282	17,178	20,647	54,452	13,885	53,073
어 란	53,749	79,405	70,231	49,811	63,429	67,606
소 금	-	-	-	139,830	178,199	224,727
기 타	1,152,553	1,321,755	1,354,637	1,347,894	1,233,754	1,460,020

2010년도는 새우, 조기, 낙지, 실장어 등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19% 증가함

7.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05		'06		'07		'08		'09		'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1,193	2,384	1,089	2,769	1,226	3,056	1,447	3,097	1,511	2,895	1,798	3,458
일 본	741	173	660	224	573	273	685	225	734	195	859	226
중 국	108	936	75	1,034	157	1,071	190	1,019	146	854	231	1,096
태 국	57	125	62	144	88	149	123	114	128	85	126	100
미 국	88	153	96	151	99	144	114	140	129	123	142	126
뉴 질 랜드	60	17	39	18	68	19	61	17	70	18	71	17
베 트 남	5	164	5	286	9	268	19	306	22	305	32	376

전체수입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대중성 냉동 수산물 및 횡감용 활어는 국민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임

8. 주요 품종별 중국 수입 현황

(2010년 기준, 단위 : 천\$)

	'05	'06	'07	'08	'09	'10
합 계	936,351	1,034,192	1,070,863	1,018,678	854,256	1,096,264
조 기	142,343	147,616	164,512	141,267	110,727	150,927
낙 지	56,387	68,302	104,522	109,279	103,802	136,577
아 귀	29,766	46,872	59,933	58,977	45,268	69,930
꽃 계	53,812	67,570	67,660	55,174	40,547	33,290
갈 치	53,733	49,201	49,907	47,284	64,184	73,187
새 우	48,610	67,183	60,107	36,936	32,808	38,450
새 우 살	23,827	30,464	37,232	34,741	31,744	36,038
농 어	20,632	26,883	30,358	32,882	23,374	38,984
복 어	24,997	29,068	34,482	30,066	24,980	24,451
미 꾸 라 지	11,206	18,896	24,436	29,716	32,438	36,046
뱀 장 어	10,742	11,368	3,788	21,673	2,209	23,824

지리적으로 가깝고 어장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0%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2009년도 대비 꽃게, 복어 등의 수입이 감소

9. 주요 품종별 일본 수출 현황

(단위: 천\$)

	'05	'06	'07	'08	'09	'10
합 계	741,062	659,523	572,908	687,471	734,134	859,483
참 치	169,432	153,122	139,533	118,629	137,672	165,514
붕 장 어	48,178	42,137	37,174	43,174	38,489	40,864
넙 치	61,699	50,386	41,419	40,875	45,341	54,235
계 살	33,928	29,819	26,039	34,664	32,994	34,758
툫	23,217	23,278	23,327	33,906	27,739	27,788
삼 치	18,209	12,412	15,119	27,013	29,431	33,218
전 복	8,976	16,526	14,973	20,973	33,591	35,880
전 쟁 이	9,913	7,866	7,202	18,778	6,604	10,957
김	17,517	17,112	15,462	17,685	25,028	35,472
굴	31,136	24,901	14,144	17,441	15,764	26,782
바 지 락	15,352	13,661	7,511	16,859	31,194	36,225
피 조 개	18,885	14,352	13,368	15,042	11,782	14,052
캐 비 아	55,196	41,496	10,323	13,835	22,554	27,439
미 역	20,043	14,321	10,952	11,548	11,237	11,308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47%(2010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국가임.

2000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이상 수출해 왔으나, 중국, 동남아국가 등의 시장 잠식으로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감소 추세(2000년도 7.21% → 2005년도 4.98%)이며, 2010년도에는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약 8.6억\$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17% 증가

대 일본 주요 수출품종은 참치 및 붕장어가 전체 수산물 수출품목 중 19%, 5%를 차지

10. 업종별 어선현황

(단위 : 척)

구분	'07	'08	'09	'10
합 계	85,627	80,766	77,713	76,975
원양 어업	470	448	370	379
근해 어업	3,573	3,385	3,047	2,852
연안 어업	59,527	53,792	50,752	47,897
양식 어업	16,352	17,104	17,786	17,276
내수면 어업	4,000	4,040	3,824	3,320
기 타	1,705	1,997	1,934	5,251

11. 수산종묘 방류량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방류량	92,294	128,359	84,454	90,859	104,460
사업비	8,988	10,779	16,038	16,391	15,101

12. 양식어업(면허) 현황

(단위 : 건, ha)

	'09		'10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9,709	139,871	9,815	141,015
해 조 류	2,653	81,601	2,709	82,019
패 류	5,637	49,538	5,669	49,988
어 류	1,419	8,733	1,437	9,008
마 을 어 업	3,020	117,961	3,058	118,214
정 치 망 어 업	536	7,518	536	7,488

13. 양식어업(허가) 현황

(단위 : 건, ha)

구 분	'09		'10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527	4,381	3,613	4,714
해상종묘	880	2,836	927	2,957
육상종묘	1,264	164	1,357	341
육상양식	1,383	1,381	1,329	1,416

V. 주요소관법령

1. 원양산업발전법149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167
3. 원양산업발전 시행규칙178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196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7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3
7. 원양협력관실 행정규칙226

1.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0122호 일부개정 2010. 03.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 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

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절차·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총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일 2010.4.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2조 (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전재)·공동조업·지원·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제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제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14조 (항만국 검색)**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제22조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물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물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 (보조 및 용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

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 (과징금 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2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장 벌칙

제3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35조 (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07.8.3 제8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명의로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임직

원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립옥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립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수산업법」 및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4> 까지 생략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62호 일부개정 2011. 06.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원양산업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어선의 선명·톤수·길이·너비 및 깊이
4. 기관의 마력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화제·폐기·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④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보조 및 융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7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9조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의 보고에 관한 사항(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의 수리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제5장 과태료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부칙 [2008.1.31 제205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축산물, 수산물"을 "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11.4.6 제228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1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부칙 [2011.6.7 제229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일부개정 2011. 06.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양어업

제1절 원양산업의 허가 등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

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세 종류까지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

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入漁)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4.28 제120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1]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양륙항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획물 양

륙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조업해역 등의 구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1]

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원양어업 폐지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지등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

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업수역의 여건 등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류 개시일과 계류항을 변경하여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휴업기간의 연장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양어업 개시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어선에 설치할 것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할 것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증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신고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항만국검색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轉載)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적인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양륙량 등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일시·장소·위반사항·위반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양륙량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8조(연구어업·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제2절 국제협력

제29조(명예수산관의 자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명예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

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3장 보칙

제31조(수수료)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 : 건당 4천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승인 신청 : 건당 2천원

제32조

삭제 [2011.1.21]

부칙 [2008.2.4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II. 개별기준 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4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

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3조제1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제목·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2010.4.28 제120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1.1.21 제1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자로서 그 유예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1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표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4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서식1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서식2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

서식3 원양어업허가증

서식4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서식5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서식6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서식7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서

서식8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

서식9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

서식10 경고장

- 서식11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서식12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서식13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서식14 원양어업 휴업신고서
 서식15 원양어업 휴업연장신고서
 서식16 원양어업 개시신고서
 서식17 항만국검색관 신분증명서(제23조제4항 관련)
 서식18 원양어업 허가대장
 서식19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서식20 시험어업 신청서
 서식21 명예해양수산물관증(제29조제4항 관련)
 서식22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서

부 칙[2011.6.15 제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중“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19호 일부개정 2010. 03. 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10.4.23]]

-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0.4.23]]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방법, 감액·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잡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

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몰수 또는 추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범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

삭제 [2010.3.17]

부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부칙 [96·8·8 법51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8·8 법51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7] [[시행일 2007.4.4]]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3.27] [[시행일 2007.4.4]]

제3조(어업등의 허가사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척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07.3.27] [[시행일 2007.4.4]]

제4조(입어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2007.10.3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10.4.23]]

④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⑤입어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입어료의 감액·면제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허가·승인의 취소요구등)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삭제 [2007.3.27] [[시행일 2007.4.4]]

제8조(위반선박등의 나포·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정도, 위반횟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연월일
2. 담보금의 액수
3. 담보금의 납부사유
4. 국고귀속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시행일 2007.4.4]]

부칙 [1997.8.6 제1544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제1호 및 제2호의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사에 관한법률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

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7.3.27 제19976호]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3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2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

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1 특정금지구역[제2조관련]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5. 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제2조(허가신청절차)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개시하고자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외국정부는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공동신청) 외국인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어업활동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허가증의 교부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어업활동허가현황 및 입어료부과내역서

2. 입어료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되, 그 내용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1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등을 교부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입어료납부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교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어업활동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표시기의 게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에 의한 표시기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경제수역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선명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어획량의 한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5.4]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5.4]

제16조(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 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 : 3만원
2. 총톤수 100톤이상 1천톤미만의 선박 : 5만원
3.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 10만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어획물의 전적금지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실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실는 경우

제20조(어획물의 직접양륙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 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선박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본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승인을 얻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행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외국인에게 직접 교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25조(행정처분상황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및 도지사(충청북도 지사를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행정처분상황의 기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정선명령) ①검사 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기타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②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결과보고)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선

박에 승선하여 어획물·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준용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시험·연구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허가"는 "시험·연구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4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58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2010.5.31 제12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1 어업활동허가번호및시험·연구승인번호의부여방법

별표2 허가어업의종류·허가선박의규모및부속선의허용기준등[제14조관련]

별표3 어업활동허가또는시험·연구승인을하는경우에붙이는제한또는조건
[제18조관련]

별표4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제22조관련]

서식1 어업허가신청서

서식2 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신청서

서식3 어업활동등의허가·승인신청서집계표

서식4 어업활동허가현황및입어료부과내역서

서식5 어업활동허가대장

서식6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허가증

서식7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증

서식8 입어료납부내역서

서식9 허가증·승인증재교부신청서

- 서식10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서
서식11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증
서식12 시험·연구승인신청서
서식13 시험·연구승인대장
서식14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시험·연구등의승인증
서식15 위반조서
서식16 허가·승인사항에대한행정처분요구서
서식17 행정처분통지서
서식18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
서식19 승선조사결과보고서
서식20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
서식21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정지명령서
서식22 어획실적보고서
별도1 어업활동허가번호판또는시험·연구승인번호판의규격및재질
별도2 표시기의규격및재질

7. 원양협력관실 행정규칙

(2011. 12월 현재)

연번	구분	행정규칙명	고시(훈령) 번호	최종개정일	제정일	담당부서	비 고
1	예규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34호	2011. 2. 8	2008. 7.16	원양정책과	
2	고시	황다랭이 수입확인요령	제 2011-10호	2011. 6.15	1997. 7.22	원양정책과	
3	고시	황새치 수출입확인요령	제 2011-10호	2011. 6.15	1999. 6.22	원양정책과	
4	고시	국제수산물기구의어업규제시행이행	제 2009-11호	2009. 8.25	2000. 5. 8	원양정책과	
5	고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 2011-85호	2011. 6.15	2000. 6. 1	원양정책과	
6	고시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 관리요령	제 2010-48 호	2010. 5.11,	2006. 9. 1	원양정책과	
7	고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2009-12호	2009. 8.25	2007. 6. 1	원양정책과	
8	고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2009-11호	2009. 8.25	2007. 9.10	원양정책과	
9	고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 2009-11호	2009. 8.25	2008. 6.10	원양정책과	
10	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	제 2009-73호	2009. 7.31	2001. 6.27	어업교섭과	
11	고시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 요령	제 2010-37호	2010. 3.31	2000. 2.18	원양정책과	
12	고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제 2011-20호	2011. 3. 3	1997. 6.27	원양정책과	
13	고시	원양어획물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제 2011-10호	2011. 6.15	1989. 2.22	원양정책과	
14	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 2011-87호	2011. 6.15	2008. 8.21	원양정책과	
15	고시	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 2009-12호	2009. 8.25	1973. 4.18	원양정책과	
16	고시	공해상 저층어업 이행	제 2009-12호	2009. 8.25	2009. 4.27	원양정책과	

VI. 추진 사업

1. 어업협정 이행(일반)229
2. 원양어업 활성화(농특)230
3.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농특)231
4. 연안국과의 협력(농특)232
5. 연안국과의 협력(ODA)(농특)233
6.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수발기금)234
7.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수발기금)235
8.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수발기금)236
9. 피해보전 직불금(수발기금)237
10. 폐업지원금(수발기금)238

1. 어업협정이행(일반)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2,701	1,994	1,994	1,988 (99.7)	-	6	1,893	2,035	142	7.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간 입어교섭 및 한·일 중간수역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어장청소 지원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69~계속, 기투자액 69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수산회

□ '12년 예산(안) : 2,035백만원

- 정부간 입어교섭 : ('11) 157백만원 → ('12) 177
- 민간어업협의회 : ('11) 300백만원 → ('12) 300
-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 ('11) 1,436백만원 → ('12) 1,558

□ 사업 추진방향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간 입어교섭 지속 추진
- 한·일 동해 중간수역 어장청소 사업을 제주남부 중간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확대
-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현행 민간어업협의회를 한·일에서 한·중으로 확대

2. 원양어업 활성화(농특)

<농특회계>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3,162	3,754	4,108	3,408 (83.0)	263	437	3,736	4,257	521	13.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 및 조업여건 악화 등에 따라 원양어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
 - 해외신어장 개발, 국제옵서버 및 어업감독관 경비, 해외선원묘지 관리 등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1~ 계속, 기 투자액 238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원양어업자 등, 국고보조 50~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12년 예산(안) : 4,257백만원

2011 예산	2012 예산
<p>○ 계 : 3,73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어장 자원조사 : 1,682 - 옵서버 승선경비 : 1,032 -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 348 - 해외선원 묘지관리 : 25 - 정부간 어업협정 참여지원 : 135 - 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 314 - 원양산업 총조사 : 200 	<p>○ 계 : 4,25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어장 자원조사 : 1,682 - 옵서버 승선경비 : 932 -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 359 - 해외선원 묘지관리 : 135 - 정부간 어업협정 참여지원 : 135 - 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 314 - 원양산업 총조사 : 150 - 국제옵서버육성센터 운영 : 250 - 국제수산협상 대응인력 육성 : 300

□ 사업 추진방향

- 책임있는 조업 여부가 향후 어획쿼터 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업관리를 강화, 국제수산기구 등의 원활한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인력확보 추진
- 시급한 선원묘지 정비(수리남, 납골당 조성)를 위해 세부사업 규모 조정

3.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농특)

<농특회계>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3,000	20,000	20,000	100	-	-	18,440	24,000	5,560	30.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산업구조 재편 따른 21C 동북아 최대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 및 국가차원 수출전략 기지 구축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9 ~ '13, 1,321억원(국비 : 92,488, 시비 : 39,638)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수산물가공업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12년 예산(안) : 24,000백만원

- 토목공사비 : ('11)매립공사 1,735백만원 → ('12)매립공사 준공
- 건축공사비 : ('11)건축공사 16,506백만원 → ('12)건축공사 23,720
⇒건축공사 본격 시행에 따라 공사비 집중 투입
- 감리비 : ('11) 199백만원 → ('12) 280

□ 사업 추진방향

- '11년 매립공사 준공에 따라 '12년 건축공사 본격 시행
- HACCP 시설기준 적용이 가능한 수산물가공공장 56개소 집적화 및 연구지원시설 도입

4. 연안국과의 협력(농특)

<농특회계>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1,030	1,835	1,835	1,818 (99.0)		17	2,099	1,964	△135	△6.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적극적인 수산외교 및 연안국과의 협력으로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수산식량자원 확보
 - 수산분야의 다자간 회의 적극 대응으로 우리 원양어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적인 조업여건 및 입어권 확보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92~계속, 기투자액 67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원양어업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12년 예산(안) : 1,964백만원

- 연안국과의 협력 : ('11) 양자회의 및 정책연수, 294백만원 → ('12) 양자회의 및 정책연수, 294
- 국제수산전문가 활용 : ('11) 77백만원 → ('12) 77
- 국제수산기구회의 개최 : ('11) 6회, 679백만원 → ('12) 5회, 579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분담금 : ('11) 200백만원 → ('12) 200
-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 지원금 : ('11) 4개사업, 400백만원 → ('12) 4개사업, 465
- 해외수산자원협상력 : ('11) 45회, 349백만원 → ('12) 45회, 349백만원

□ 사업 추진방향

- 우리 원양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과 입어권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 보유국인 연안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확대와 수산분야의 다자간 회의 적극 대응

5. 연안국과의 협력(ODA)(농특)

<농특회계>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400	600	600	553 (92.0)	-	17	1,000	1,600	600	6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들에 대한 물자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우리 원양어선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연건 조성으로 지속적인 수산식량자원 확보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92~계속, 기투자액 30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태평양 연안도서국,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원양산업협회(위탁사업)

□ '12년 예산(안) : 1,600백만원

- 물자지원
 - ('11) 키리바시, 투발루 등 태평양 도서 연안국, 600백만원 → ('12) 키리바시, 투발루 등 태평양 도서 연안국, 1,100
- 수산정책 교육훈련
 - ('11) - → ('12)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200백만원

□ 사업 추진방향

-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연안국에 대한 물자지원과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로 친환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

6.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수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1,000	1,600	800	800	0	800	1,400	1,200	△200	16.7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양식·유통·가공 시설 등에 대한 원양기업의 투자를 지원하여 단순 어업 중심의 원양어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및 자원이 부유한 연안국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어업쿼터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9~계속, 기 투자액 30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원양산업자, 융자 80%, 자담 20, 연리 4%,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한국원양산업협회)

□ '12년 예산(안) : 반영규모

- 해외 양식·유통·가공 시설 등 설치 : ('11) 2개소, 1,400백만원 → ('12) 2개소, 1,200백만원 지원

□ 사업 추진방향

- 생산·가공·유통의 수직계열화로 경쟁력 있는 원양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및 급성장세에 있는 해외 수산시장의 선점을 지원
- 과거 입어료만 지불만으로 입어를 허용하였던 연안국이 자국의 수산시설 투자 여부를 입어 및 쿼터 배분과 연계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양생산 기반 유지·확보를 위해 해외 수산투자를 활성화
- 타 정책금융에 비해 높은 금리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거나, 투자 희망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여서 매출실적 저조 및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여신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10년 예산 집행실적(50%)이 저조하여 '12년도 예산 축소 반영 - 금리 인하(4% → 3%), 담보 인정비율(현 60%) 조정 등 지원방식 개선 추진

7. 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수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3,000	3,000	3,000	- (0.0)	-	3,000	3,000	3,000	-	-

※ 한·미 FTA 협정 비준 연계사업으로 집행 보류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미 FTA 체결로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규모의 원양선사가 설립한 원양어업관리회사에서 원양어획물의 운반·가공·판매 등을 담당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8~'17, 기투자액 -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원양업계
 - 시설자금(가공공장 및 운반선)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 3/7년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 1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한국원양산업협회)

□ '12년 예산(안) : 3,000백만원

- 가공공장시설 : ('11) 1개소, 900백만원 → ('12) 1개소, 900
- 운반선 : ('11) 1척, 1,100백만원 → ('12) 1척, 1,100
- 운영자금 : ('11) 1,000백만원 → ('12) 1,000

□ 사업 추진방향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1개소 당 3년간 분할 지원
 - 관리회사에서 출자사가 어획한 수산물 등을 운송·가공·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운반선 구입비용, 냉동시설, 유통시설 자금 지원
 - 운반선 운항(유류비, 항비 등), 가공공장 운영, 판매관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8. 원양어선현대화사업(수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5,000	17,376	17,376	16,358 (94.1)	-	1,018	30,662	16,400	△14,262	△46.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어선으로 사고위험이 높고 시설이 낙후된 원양어선의 신조 선박 건조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어선의 안전성 제고 및 어획물 저장 냉동고등 시설 현대화 추진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 '03 ~ 계속, 기 투자액 1,063억원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08 ~ '18, 기 투자액 30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원양업계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4%, 3/7년 상환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융자 100%, 연리 3%, 3/7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한국원양산업협회)

□ '12년 예산(안) : 16,400백만원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 ('11) 2척, 29,662백만원('10 ~ '11년도 2년차 계속사업) → ('12) 4척, 15,400('12 ~ '13년도 2개년 계속 사업중 1차년도 예산)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11) 1척, 1,000백만원 → ('12) 1척, 1,000

□ 사업 추진방향

-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지원을 통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원양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규모의 생산 수단 확보
 - 원양어선 353척중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329척)을 대상으로 함

9. 피해보전직불금(수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1,500	1,500	1,500	- (0.0)	-	1,500	3,000	1,500	1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 231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FTA 이행에 따른 피해발생 품목 / 품목 가격이 85%이상 하락시 하락폭의 90% 보전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시·도)

□ '12년 예산(안) : 3,000백만원

- 한·미 등 FTA 이행에 따른 피해영향 재분석 결과 추정된 소요 재원을 반영 및 피해보전비율 상향(85→90%)에 따른 소요액 반영
 - 산출내역 : 품목별 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년 평균가격) × 0.90
 - * 기준가격 : 최근 5년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85%
 - * 조정계수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 사업 추진방향

- 한·미 등 FTA 발효에 따른 피해발생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품목,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액의 일정액 보전을 위해 발효 후 10년간 지급

10. 폐업지원금(수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단위:백만원)

'09예산	2010					'11예산 (A)	'12예산(안) (B)	증 감 (B-A)	%
	예산액	예산액 현액	집행내역						
			집행 (집행율)	이월	불용				
9,000	5,000	5,000	- (0.0)	-	5,000	5,000	5,000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수산업 자생력 제고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FTA 발효일로부터 5년 / 534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FTA 이행에 따른 피해발생 업종(품목) /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어선·어구·시설 등 잔존가치를 가산하여 지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시·도)

□ '12년 예산(안) : 5,000백만원

- FTA 이행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결과 추정된 소요 재원을 반영
 - 산출내역 :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잔존가치(어선·어구·시설 등)
 - * 면허어업 : 평년수익액/연리 12% + 잔존가치
 - * 잔존가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준용

□ 사업 추진방향

- 한·미 등 FTA 발효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하여 폐업하게 될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선정하는 지급대상자격 요건에 해당될 때 산출기준에 따라 5년간 지급
- 과도한 폐업지원 수요 억제, 구조조정 효과 극대화 및 입찰제 방식의 감척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현행 감척사업과 동일한 방식 적용

VII. 원양어업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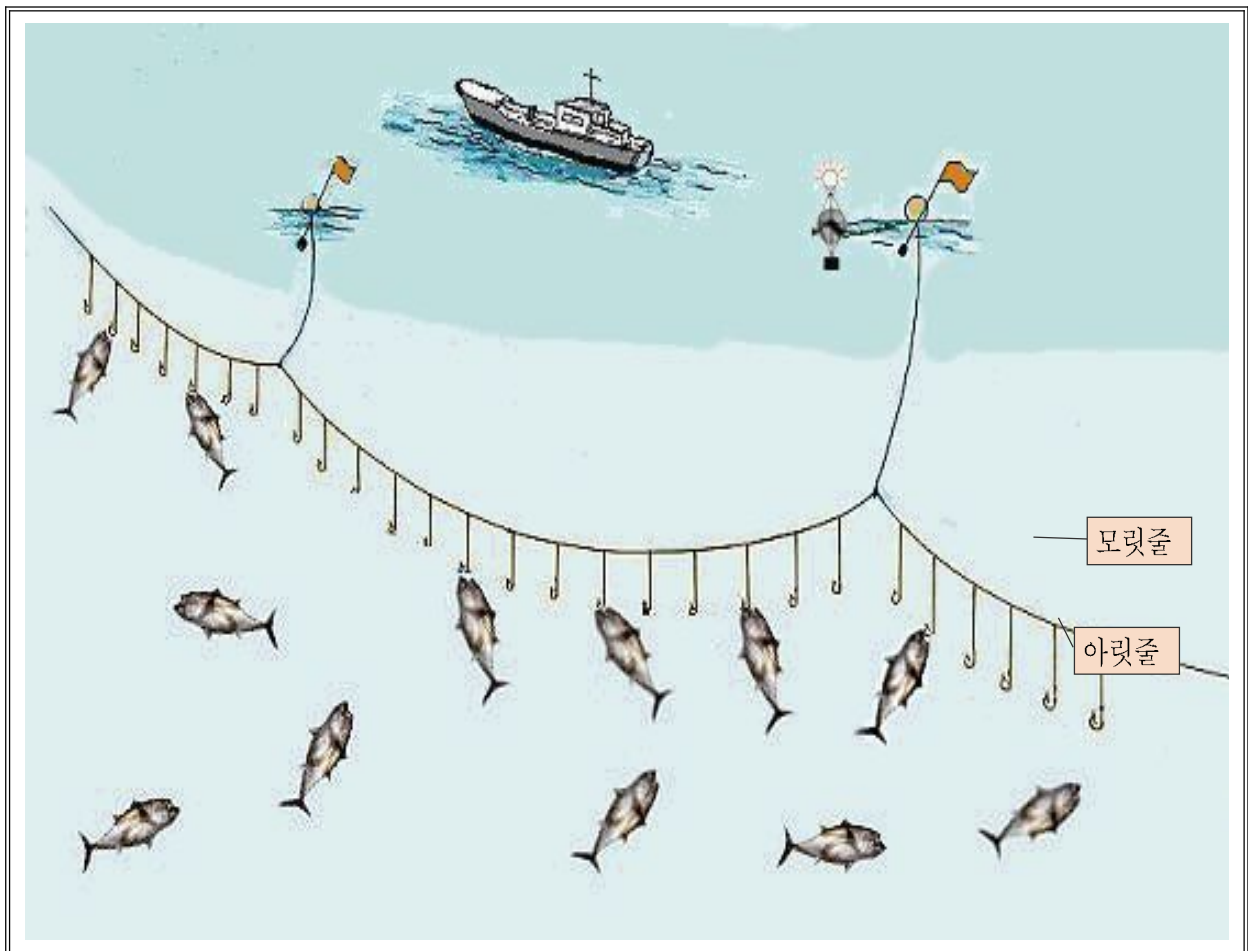
1. 원양참치연승 어업241
2. 원양선망 어업242
3. 원양트롤 어업243
4. 원양봉수망 어업244
5. 원양채낚기 어업245

1. 원양참치연승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24개사 149척(평균 300~500톤급)
- 조업구역 : 태평양 중서부, 인도양, 대서양
- 채포어종 :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횃감용)
- 생산량 : ('07) 45천톤 → ('08) 38천톤 → ('09) 44천톤 → ('10) 42천톤
- 선령(149척) : (15년이하) 4척, (16~20년) 4척, (21년이상) 141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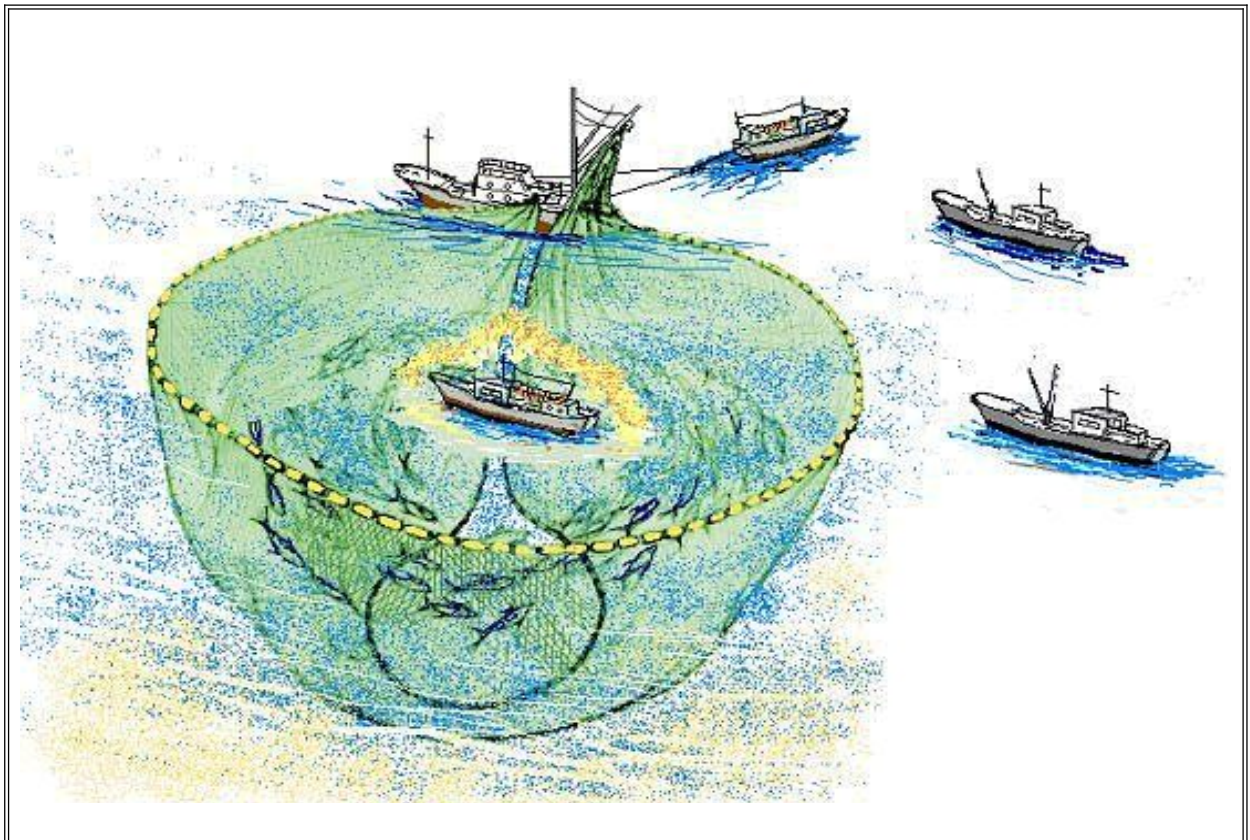
- 길게 늘어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마다 아릿줄을 달고 푹치, 오징어 등 미끼를 이용하여 참치가 낚시에 걸리도록하여 어획

2. 원양선망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6개사 30척(평균 800~2,000톤급)
- 조업구역 : 중서부 태평양(28척), 대서양(2척)
- 채포어종 :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등(통조림 가공용)
- 생산량 : ('07) 255천톤 →('08) 249천톤 →('09) 283천톤 →('10) 278천톤
- 선령(30척) : (15년이하) 6척, (16~20년) 1척, (21년이상) 23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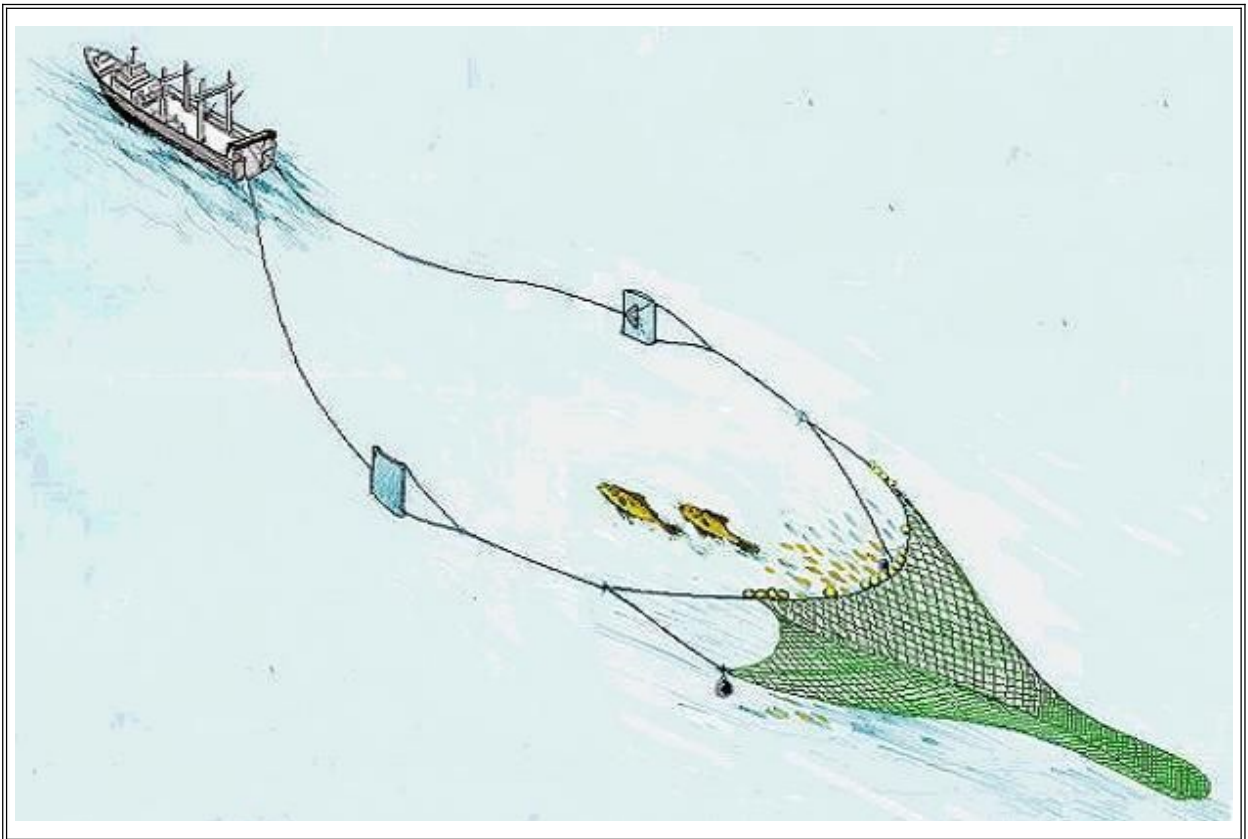
- 긴네모꼴의 그물로 가다랑어 등 어군을 둘러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어획

3. 원양트롤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41개사 102척(100톤~5,000톤급)
 - 북양트롤(러시아) 5척, 해외트롤 97척
- 조업구역 : 북태평양,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 채포어종 : 명태, 돔류, 조기류, 민어류, 크릴, 오징어류, 기타저서어류
- 생산량 : ('07) 266천톤 → ('08) 230천톤 → ('09) 211천톤 → ('10) 208천톤
- 선령(102척) : (15년이하) 5척, (16~20년) -, (21년이상) 97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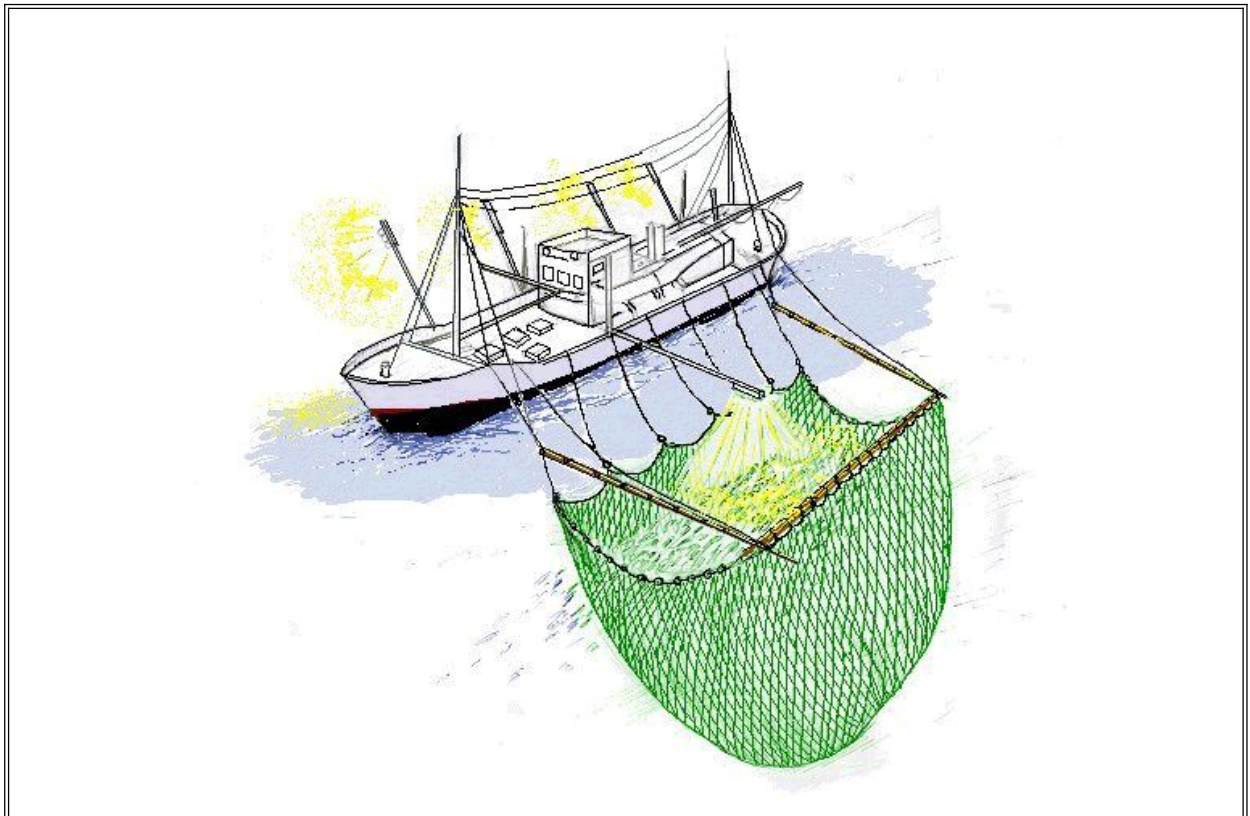
- 끌줄, 전개판, 후릿줄, 뜰줄과 밧줄 및 힘줄의 순으로 연결하여 예망되며, 어획된 고기는 끌자루에 담겨 인양 처리, 현재 대부분 선미식으로 예망

4. 원양봉수망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16개사 20척(평균 400톤급)
 - 원양오징어채낚기 겸업선 19척, 봉수망 전업선 1척
- 조업구역 : 북태평양 공해, 일본 산리쿠, 러시아 남쿠릴 수역
- 채포어종 : 꽁치
- 생산량 : ('07) 12천톤 → ('08) 30천톤 → ('09) 22천톤 → ('10) 21천톤
- 선령(20척) : (21년이상) 20척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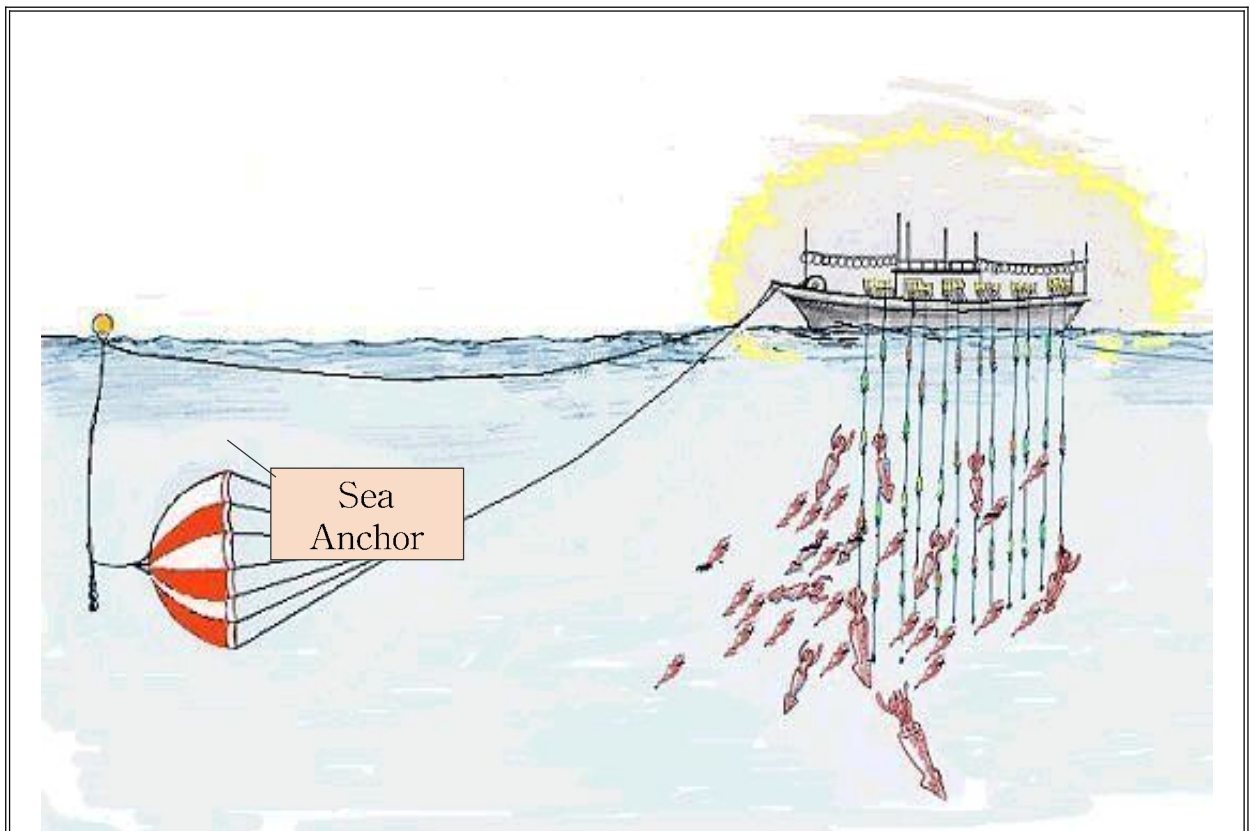
- 집어등으로 어군을 선박의 우현에 모이도록 하고, 그물을 선박 좌현에 보자기 모양으로 전개하여 유도등을 이용하여 그물속으로 어군을 유도한 후 돈음줄 및 조임줄로 그물을 감아서 어획함.

5. 원양채낚기 어업

《일반현황》

- 업체 및 척수 : 26개사 27척(평균 500톤급)
 - 원양봉수망 겸업선 19척, 원양외줄낚시 겸업선 1척 포함
- 조업구역 :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어장 및 공해수역
- 채포어종 : 오징어류
- 생산량 : ('07) 116천톤 → ('08) 109천톤 → ('09) 43천톤 → ('10) 32천톤
- 선령(27척) : (16~20년) 2척, (21년이상) 25척

《조업방법》



- 집어등으로 어군을 선박밑에 모이도록 하고, 자동조상기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여 오징어가 낚시에 걸리도록 하여 어획

VIII. 일본어선 조업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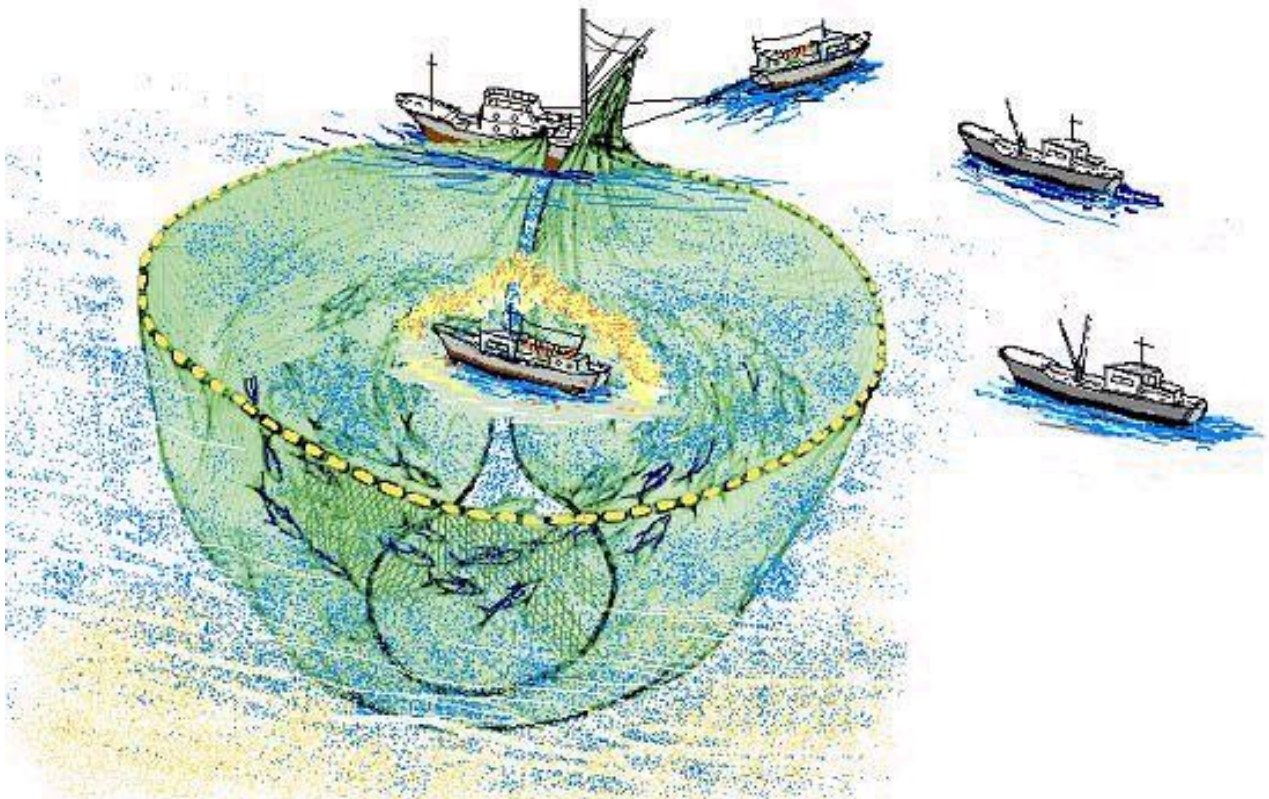
1. 대중형 선망어업	249
2. 이서 저인망 어업	250
3. 총합 저인망 어업	252
4. 오징어 채낚기 어업	253
5. 연승어업	254
6. 예인조 어업	255
7.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256
8. 일본조 어업	257
9. 청새치 돌봉어업	258
10. 고정식 자망어업	259

1. 대중형 선망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대중형 선망어업
- 어선규모 : 망선의 총톤수 135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162척(망선 32, 등선67(탐색선 8척포함), 운반선 63척) 50,410톤,
(전갱이 3,000톤, 고등어류 37,814톤, 살어징어 1,500톤, 기타 8,096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전갱이, 고등어류, 살어징어, 정어리, 삼치, 다랑어류, 자주복,
옥돔류, 기타 복어류, 기타

《조업방법》



2. 이서 저인망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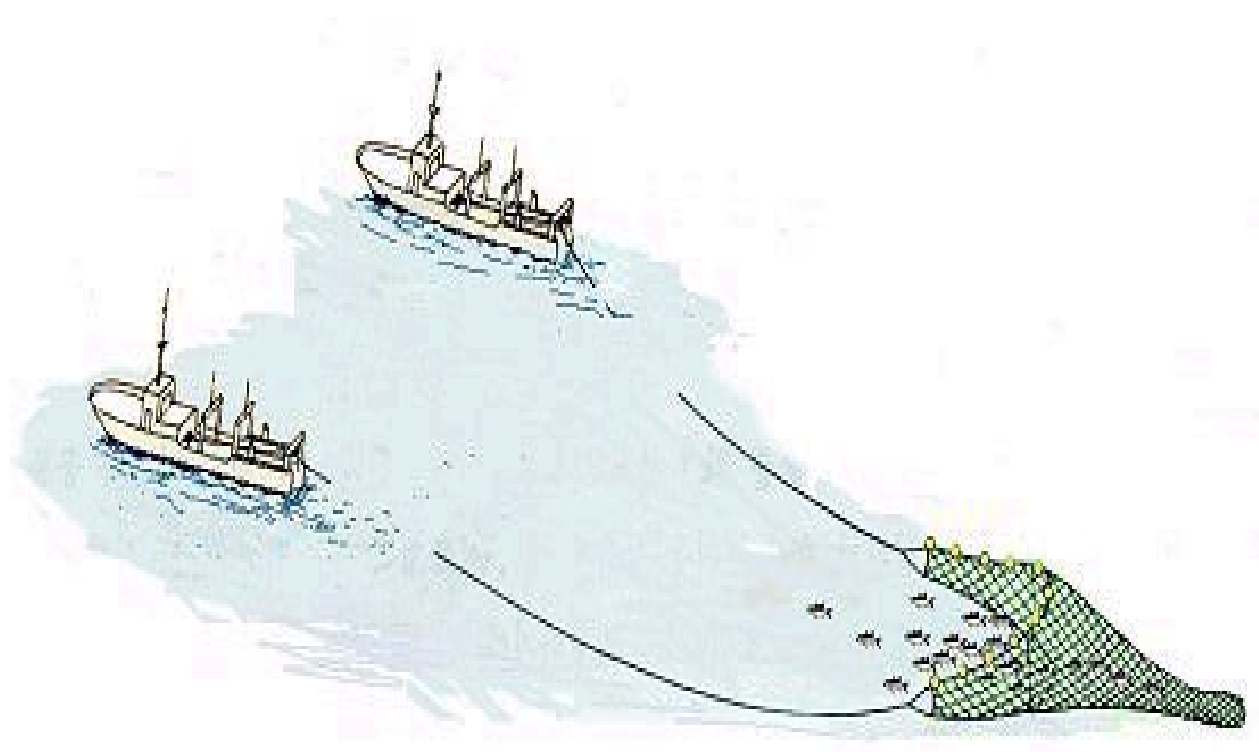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이서 저인망 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85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26척(트롤어선 5, 운반선 2척 포함) 3,849톤(살오징어 220톤, 갈치50톤, 붕장어 50톤, 기타 3,529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일부지역 조업금지 기간 설정)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살오징어, 갈치, 붕장어, 가자미류, 참조기, 기타돔류, 삼치, 전갱이, 참돔, 옥돔류 등 기타 복어류,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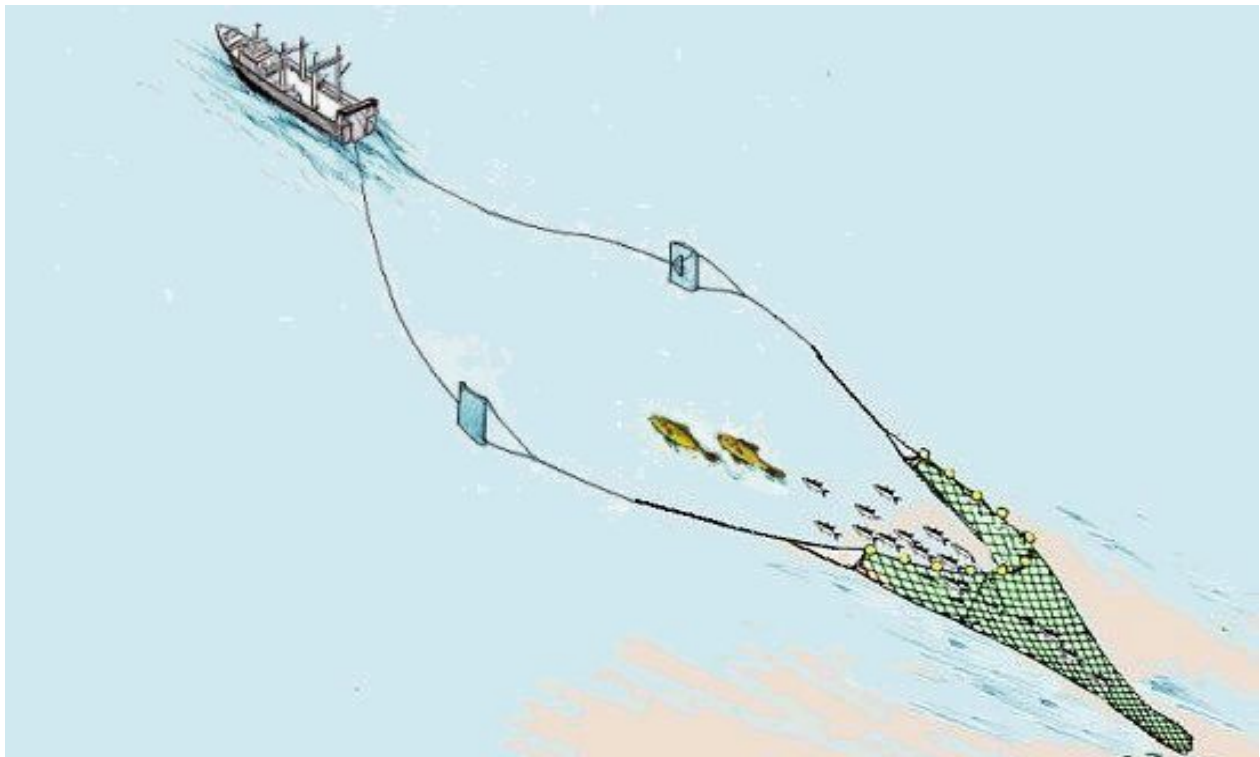
《조업방법》



외끌이 기선저인망



쌍끌이 기선저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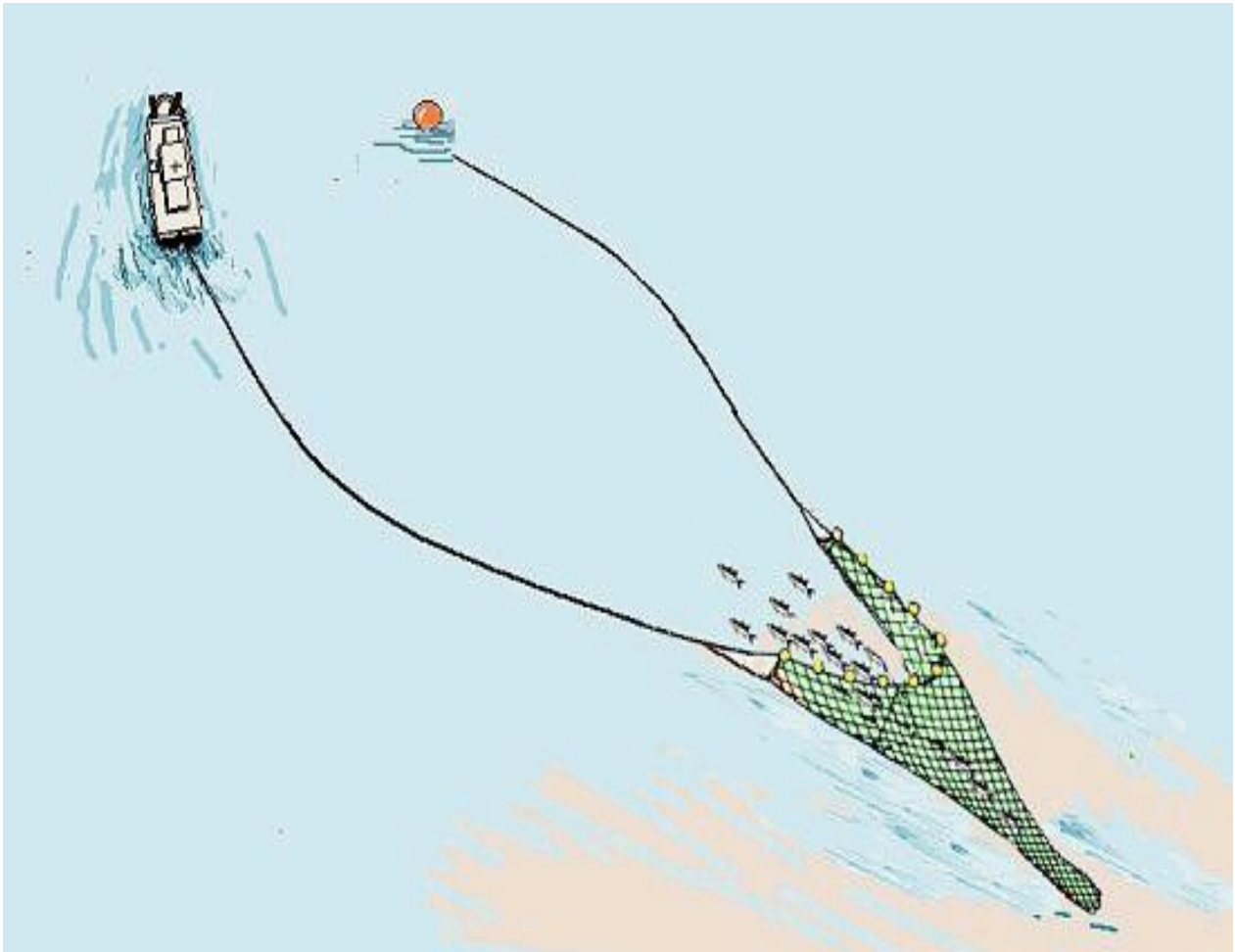
대형 트롤

3. 종합 저인망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종합저인망 어업
- 어선규모 : 20톤이상 110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54척 333톤(살오징어 30톤, 가자미류 40톤, 기타 263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가자미류, 도루묵, 갈치, 살오징어, 기타돔류, 붕장어, 자주복, 참돔, 보구치, 옥돔류, 기타복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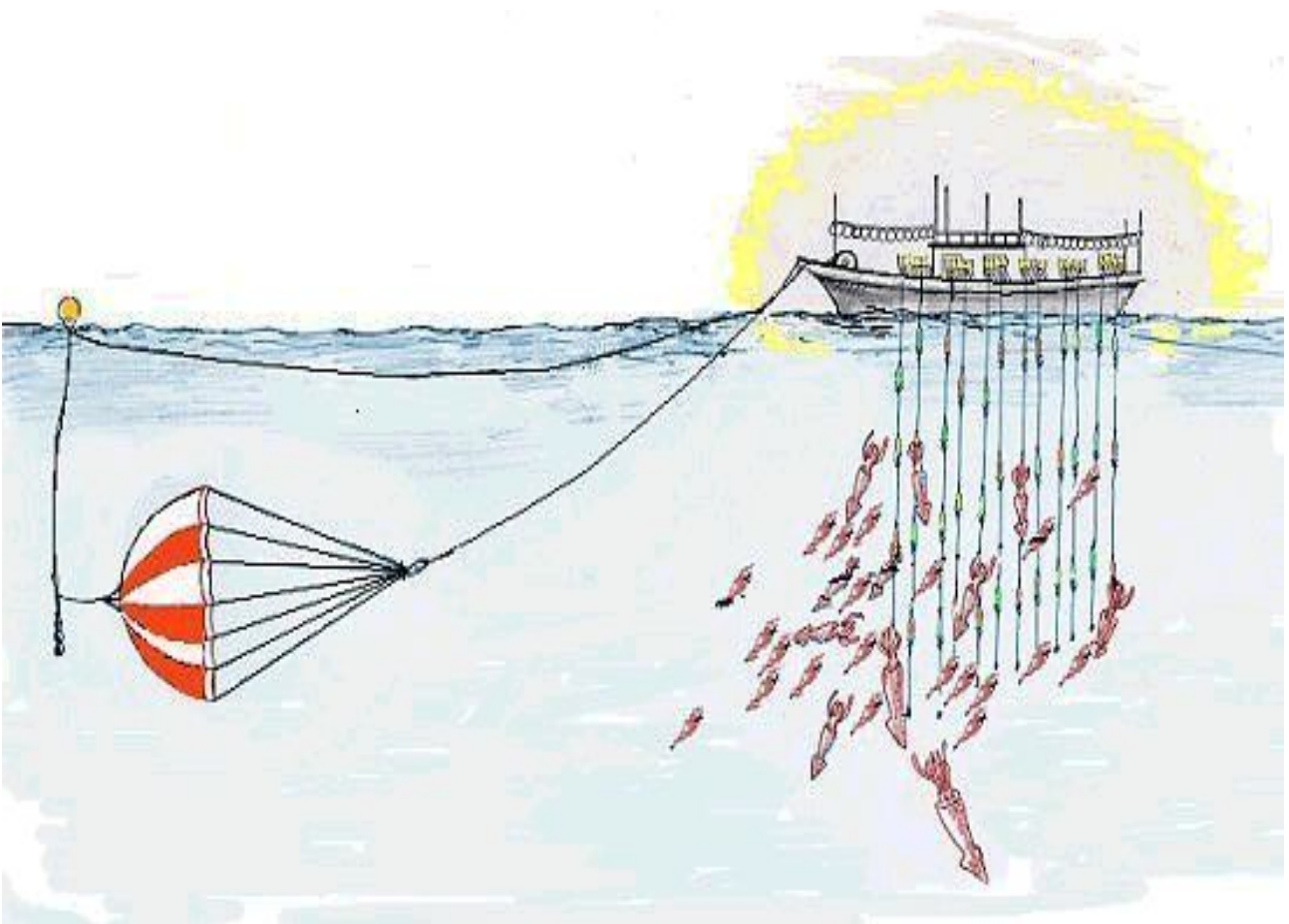


4. 오징어 채낚기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오징어 채낚기 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39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127척 1,894톤(살오징어 1,400톤, 기타 494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일부지역 조업금지 기간 설정)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살오징어, 기타오징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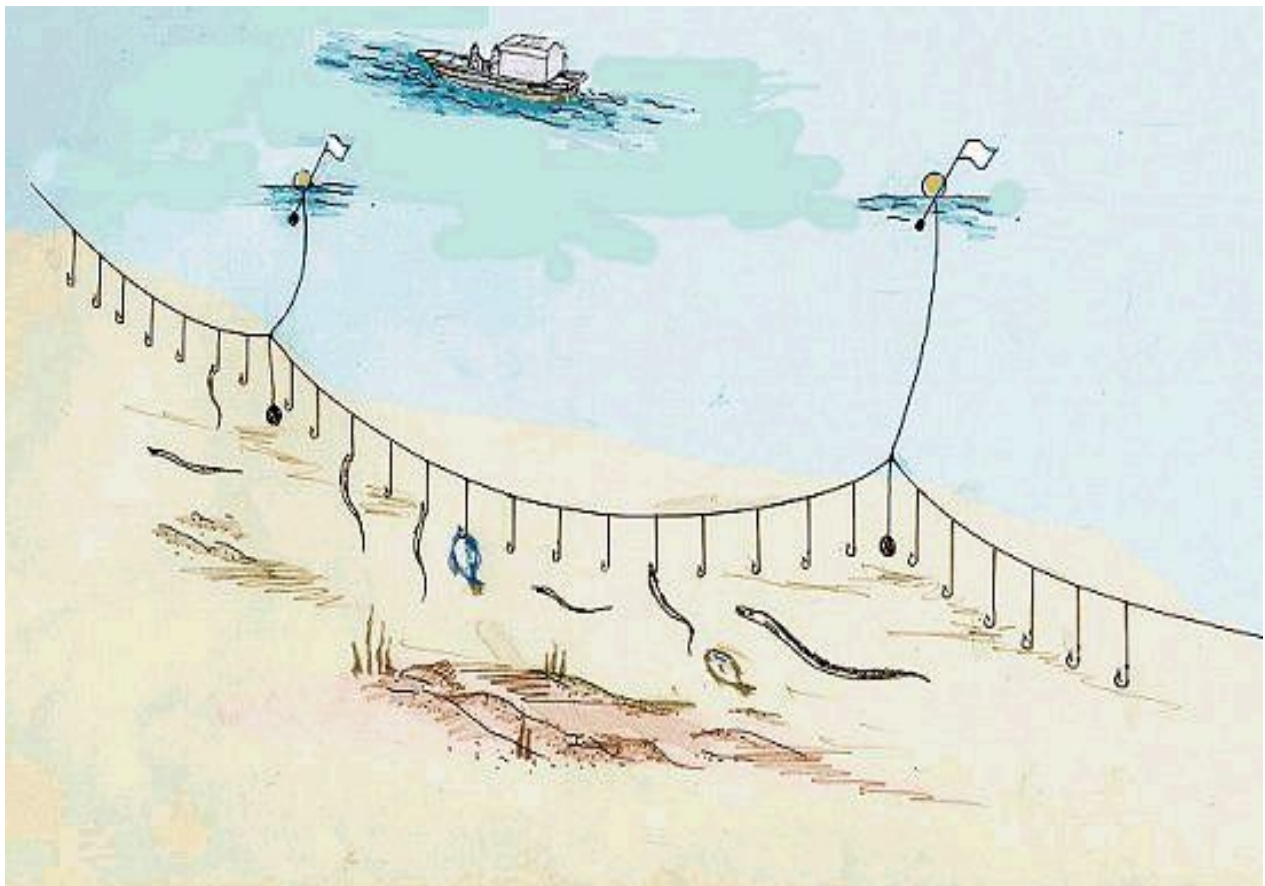


5. 연승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연승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70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89척 667톤(참돔 65톤, 기타 602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일부지역 조업금지 기간 설정)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참돔, 기타복어류, 참돔, 옥돔류, 다랑어류, 가자미류, 삼치, 갈치, 붕장어, 자주복, 참조기,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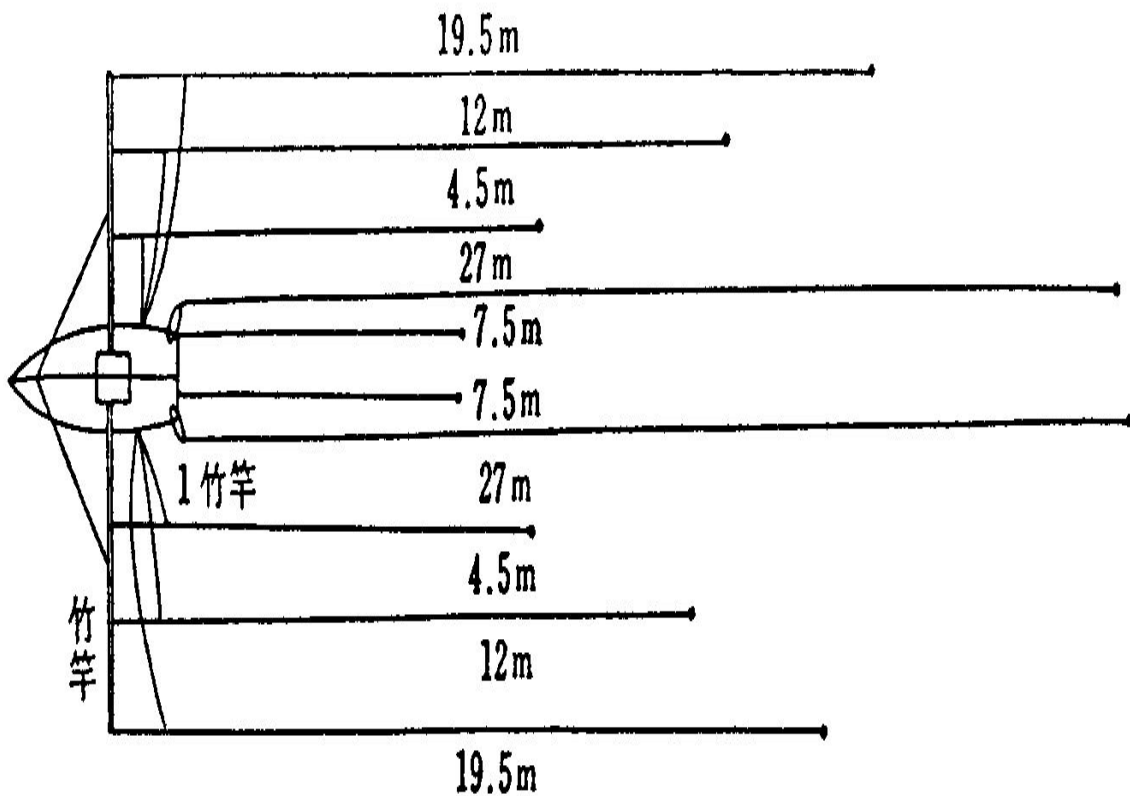


6. 예인조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예인조 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9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367척 2,065톤(참돔 5톤 기타 2,060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참돔, 다랑어류, 전갱이, 방어류, 고등어류, 참돔, 삼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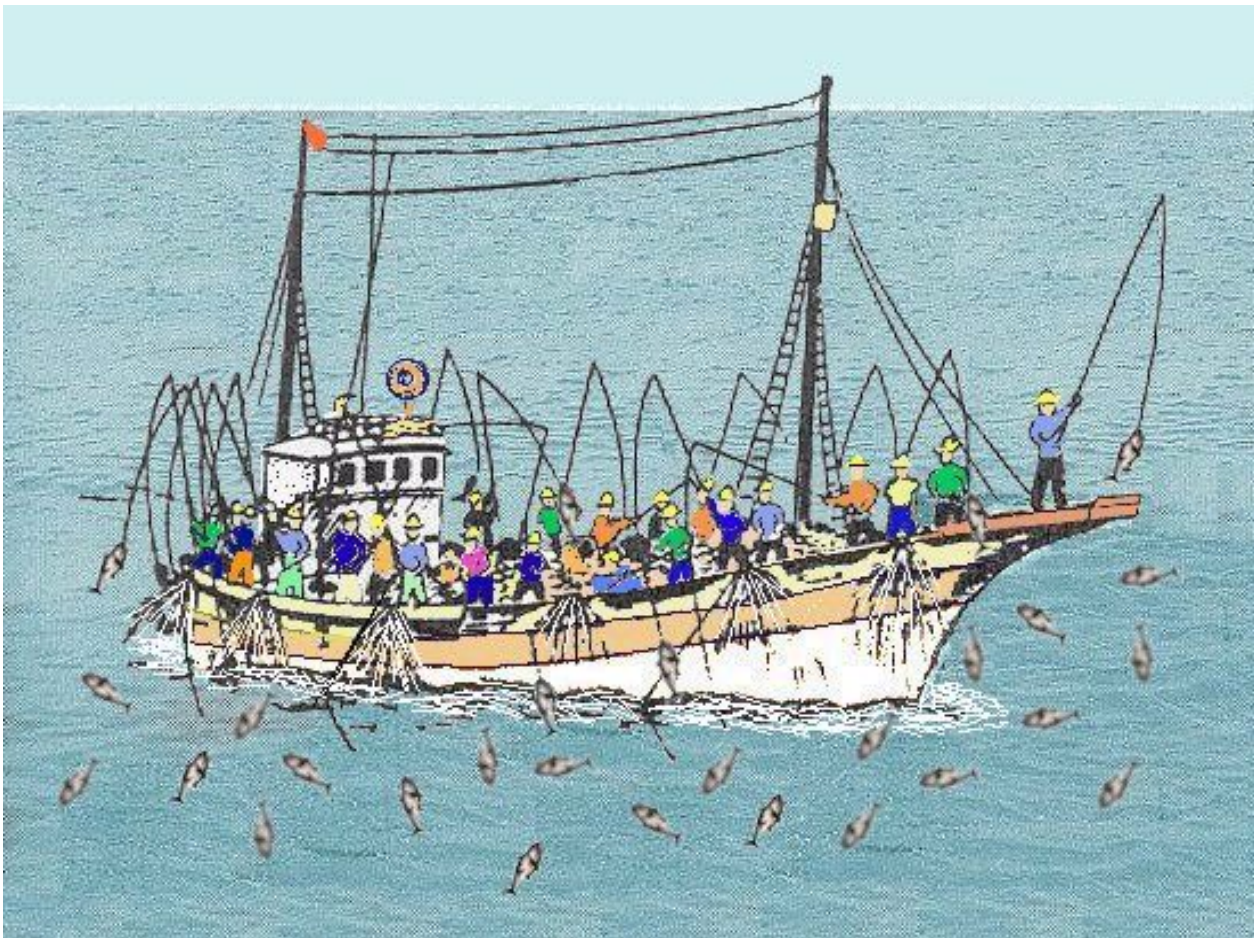


7.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49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29척 700톤(기타 700톤)
- 조업시기 : 5월1일~11월30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가다랭이, 다랑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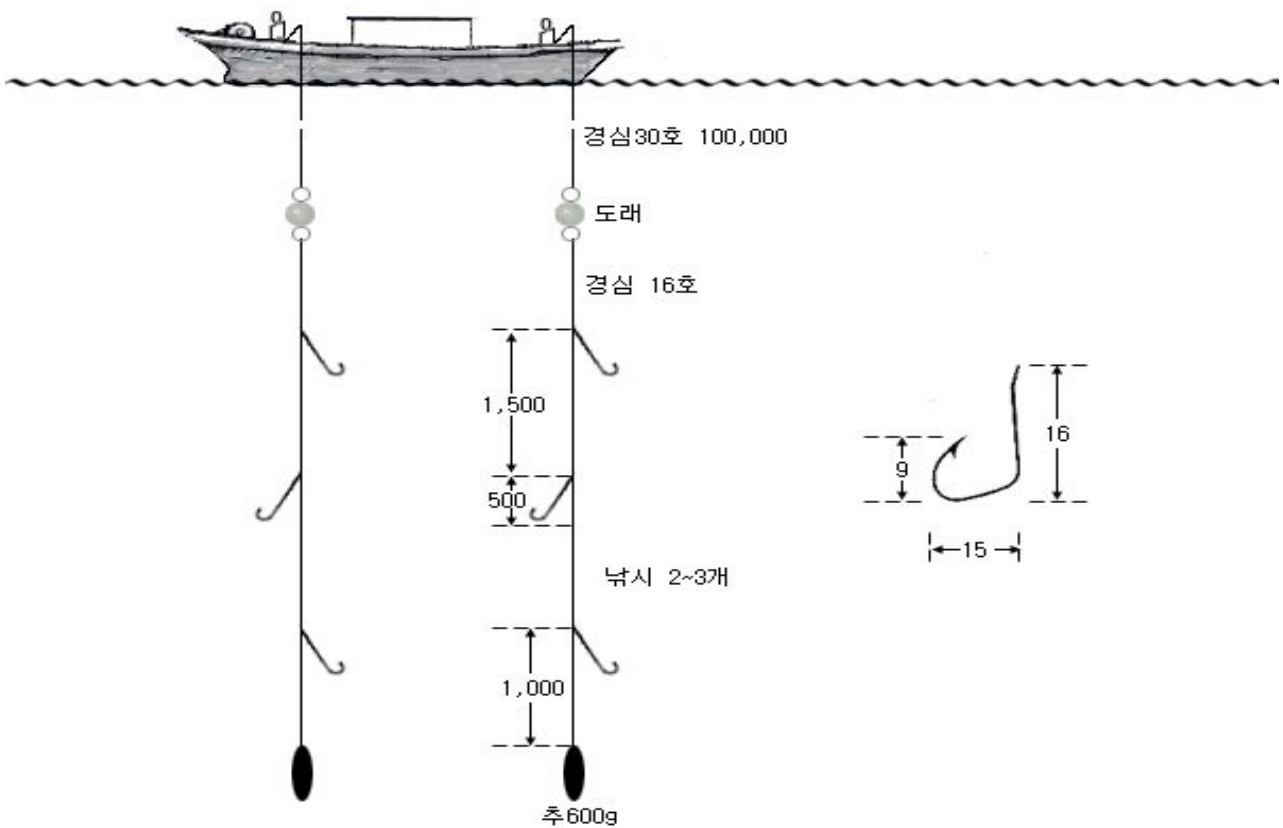


8. 일본조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일본조 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9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7척 11톤(참돔 2톤, 기타 9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참돔, 고등어류, 삼치, 조기류, 기타복어류, 붕장어,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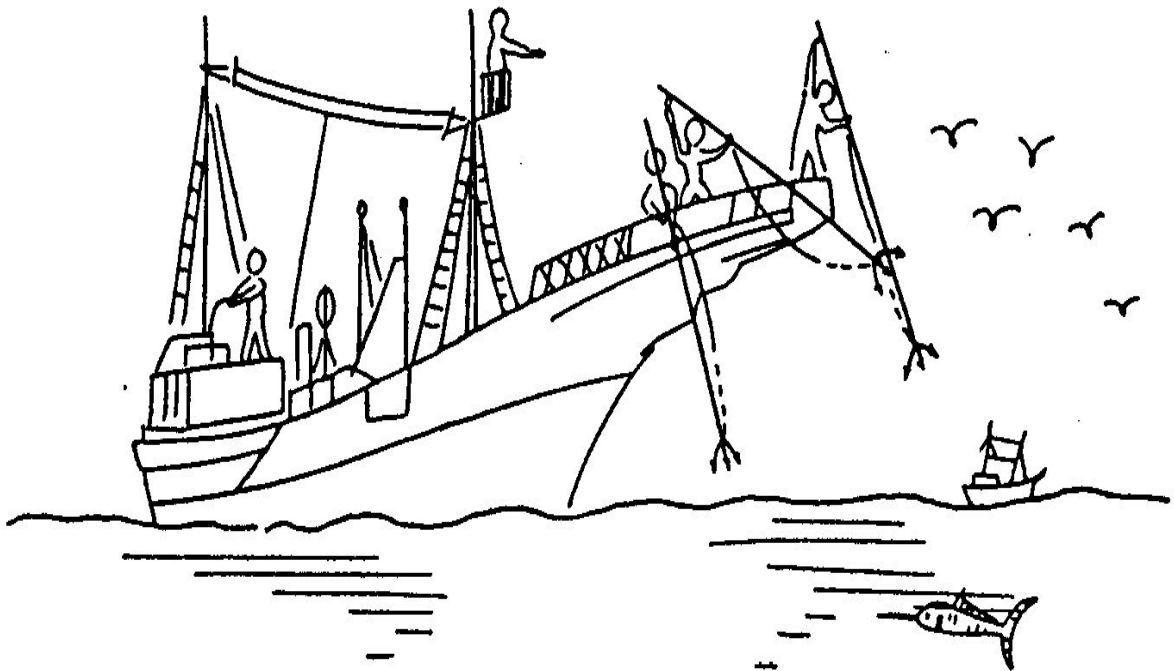


9. 청새치 돌봉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청새치 돌봉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15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1척 1톤(기타1톤)
- 조업시기 : 6월1일~12월31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청새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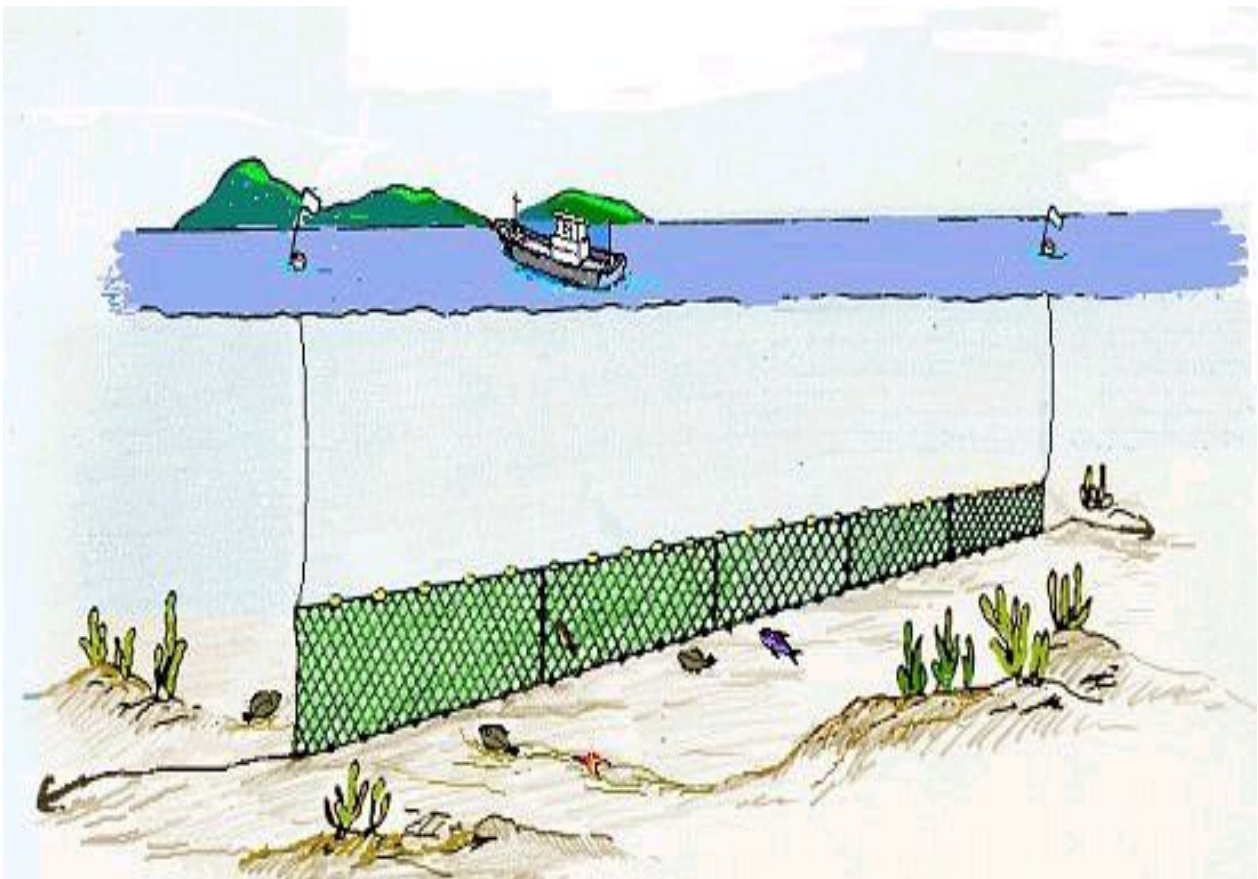


10. 고정식 자망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고정식 자망어업
- 어선규모 : 총톤수 20톤 이하
- 입어규모(할당량) : 8척 70톤(참돔 6톤, 기타 64톤)
- 조업시기 : 3월1일~2월29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참돔, 전갱이, 방어류, 도루묵, 기타돔류, 고등어류, 참조기, 참돔, 기타복어류 삼치, 기타

《조업방법》



IX. 중국어선 조업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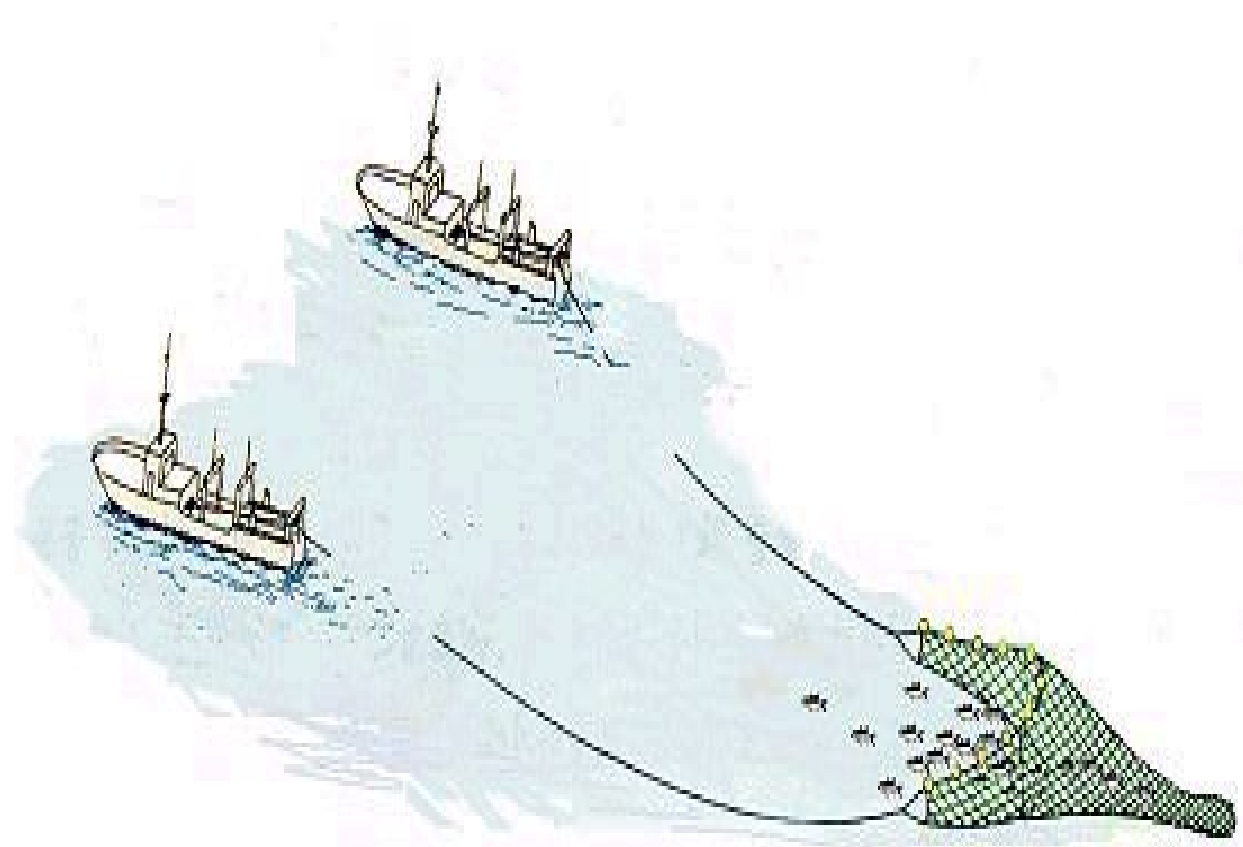
1. 쌍선타망(双船拖網) 어업263
2. 단선타망(單船拖網) 어업264
3. 위망(圍網) 어업265
4. 유망(流網) 어업266
5. 우조(魷釣) 어업267

1. 쌍선타망(双船拖網)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쌍선타망어업
- 어선규모 : 30톤이상 300톤미만(국제톤수)
- 입어규모(할당량) : 824척(41,196톤)
- 조업시기 : 1월1일~4월15일, 10월16일~12월31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가자미류, 갈치, 돔류, 장어류, 조기류, 삼치, 병어류, 멸치, 아귀류, 오징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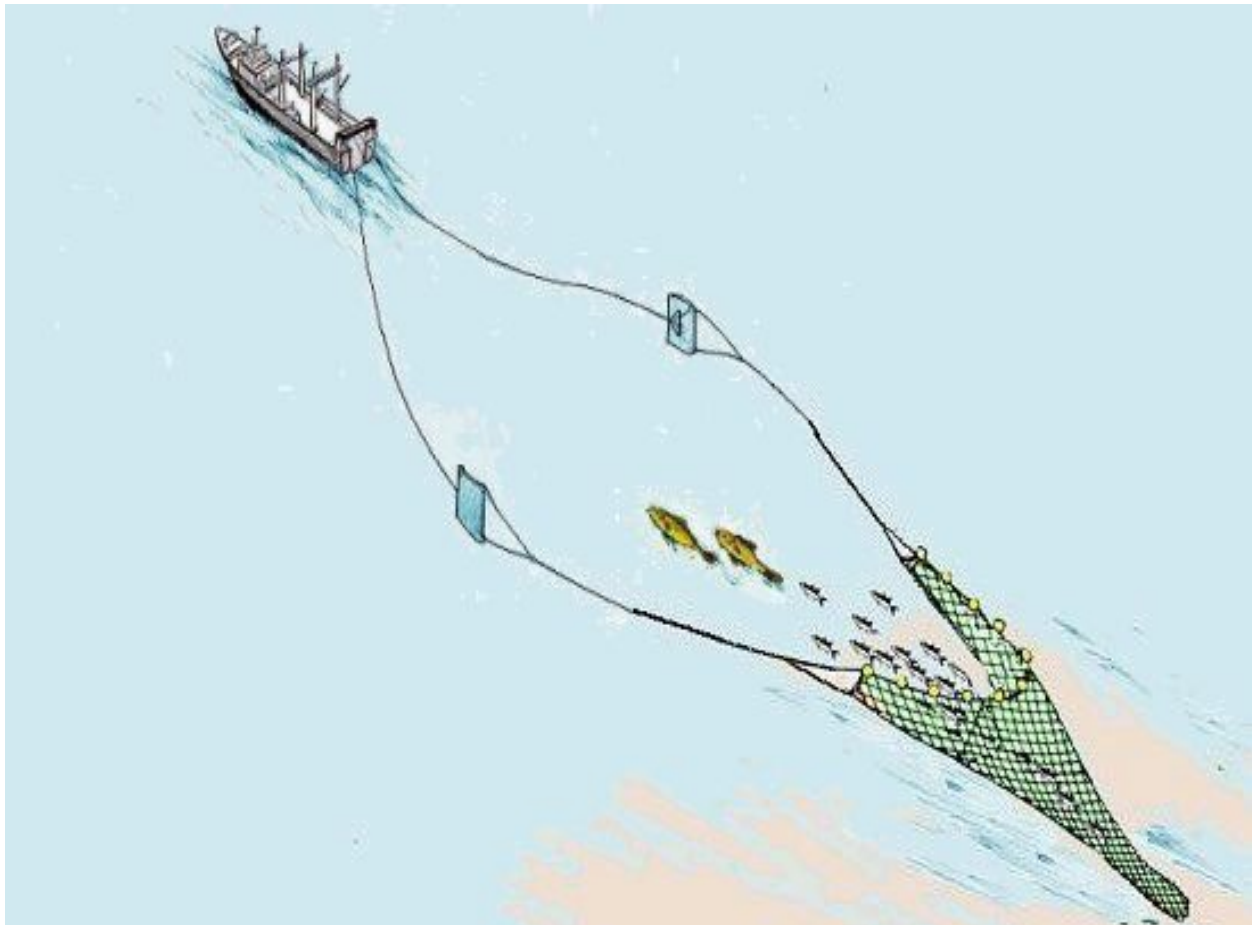


2. 단선타망(單船拖網)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단선타망어업
- 어선규모 : 180톤이상 220톤미만(국제톤수)
- 입어규모(할당량) : 16척(666톤)
- 조업시기 : 1월1일~4월15일, 10월16일~12월31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가자미류, 갈치, 돔류, 장어류, 조기류, 삼치, 병어류, 멸치, 아귀류, 오징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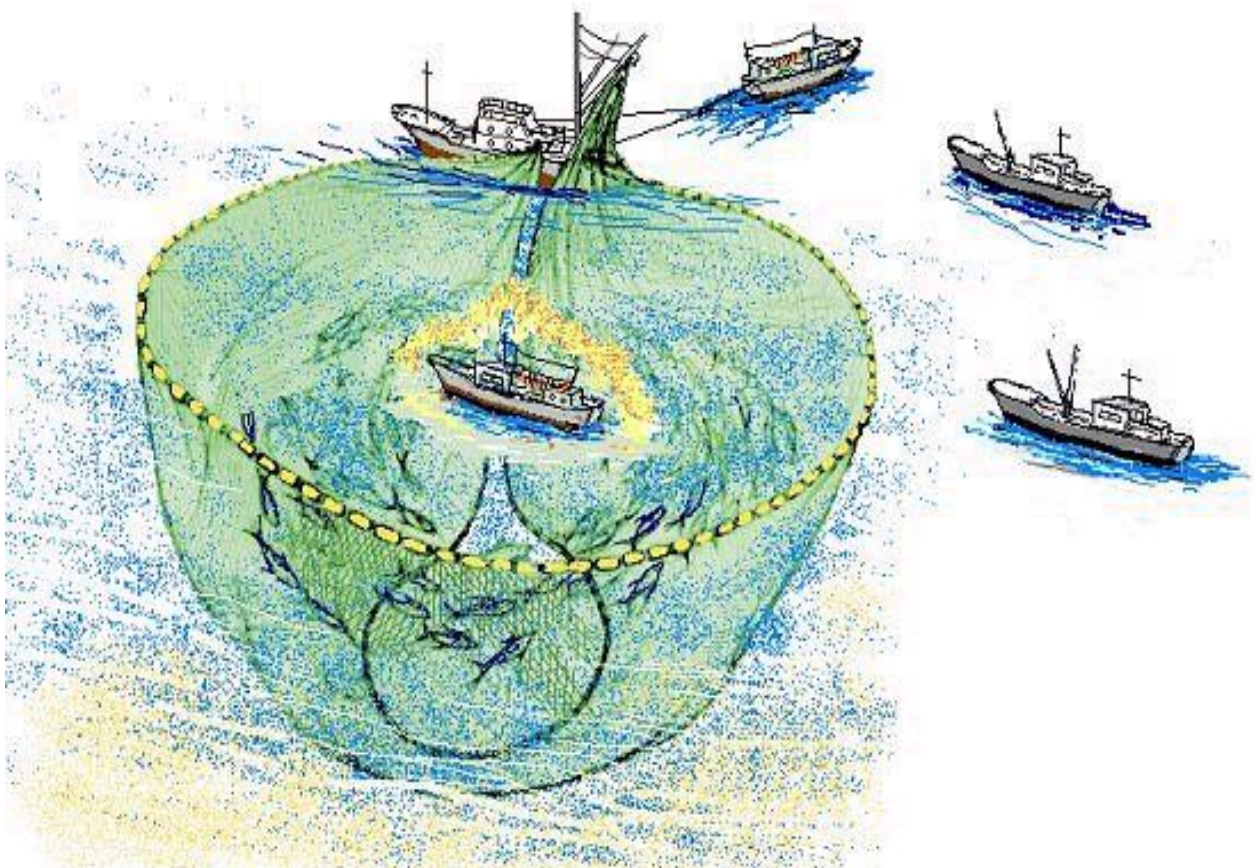


3. 위망(圍網)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위망어업
- 어선규모 : 본선기준 110톤이상 278톤미만(국제톤수)
- 입어규모(할당량) : 22통(92척), (10,869톤)
- 조업시기 : 1월1일~12월31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삼치, 멸치,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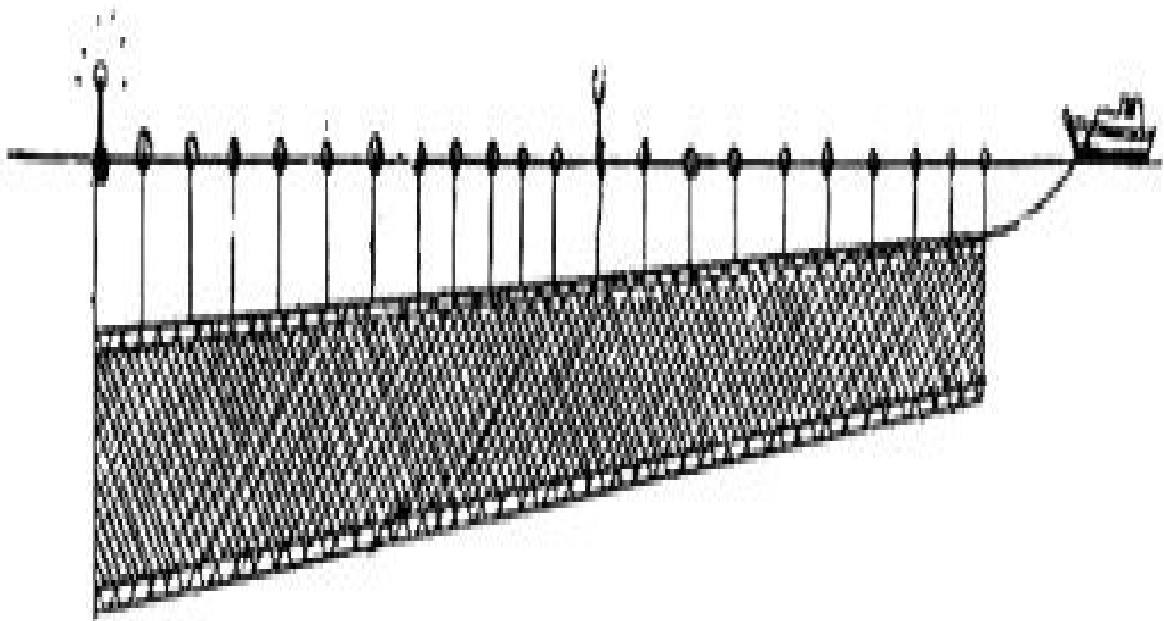


4. 유망(流網)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유망어업
- 어선규모 : 10톤이상 160톤미만(국제톤수)
- 입어규모(할당량) : 713척(8,128톤)
- 조업시기 : 3월1일~6월15일, 9월1일~12월31일
- 어획보고 대상어종 : 방어류, 돛류, 삼치, 참조기, 기타조기류, 게류, 대하, 기타

《조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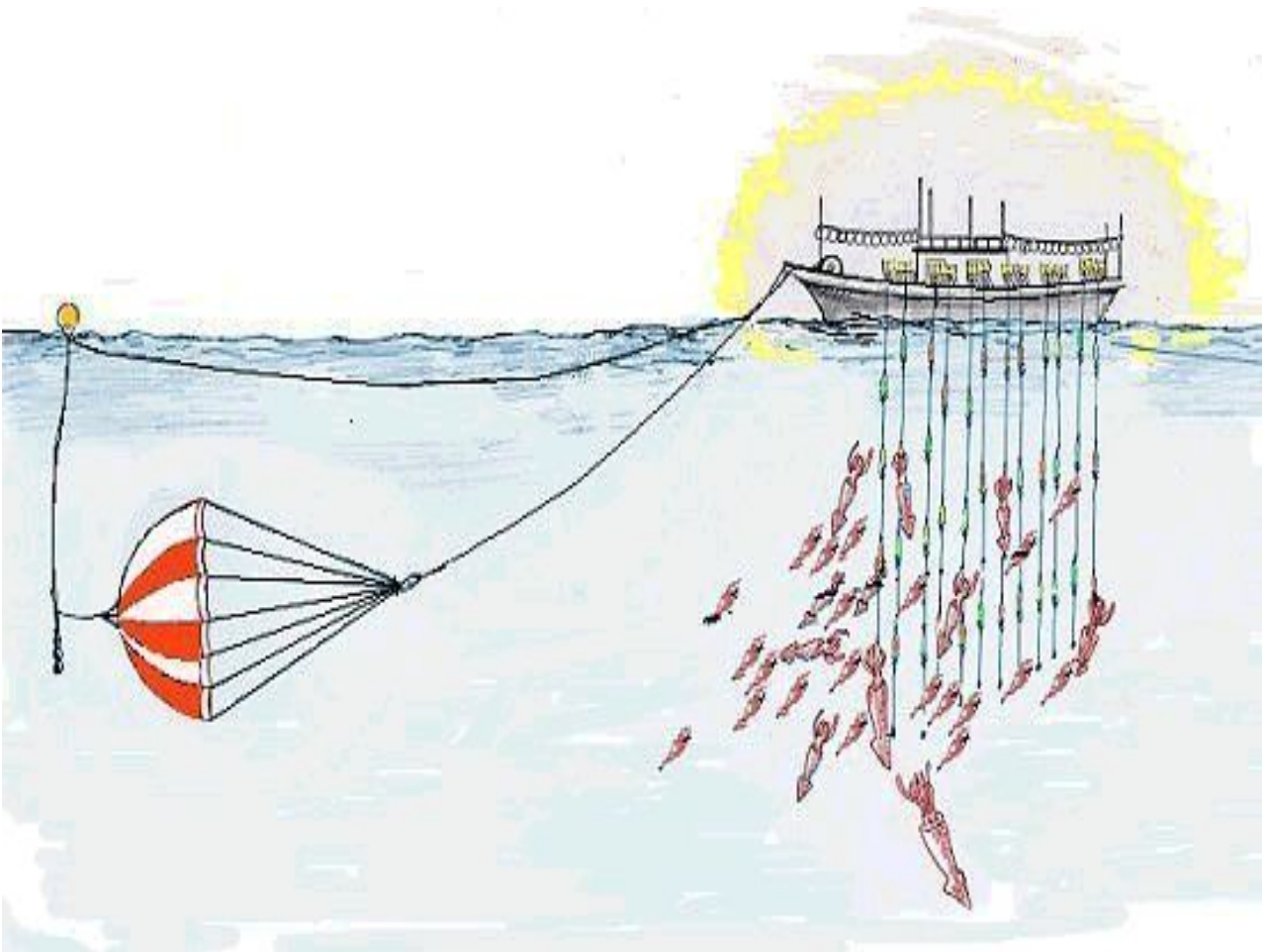


5. 우조(魷釣) 어업

《일반현황》

- 어업의 명칭 : 우조어업
- 어선규모 : 280톤미만(국제톤수)
- 입어규모(할당량) : 55척(4,141톤)
- 조업시기 : 10월1일 ~12월31
- 어획보고 대상어종 : 오징어류,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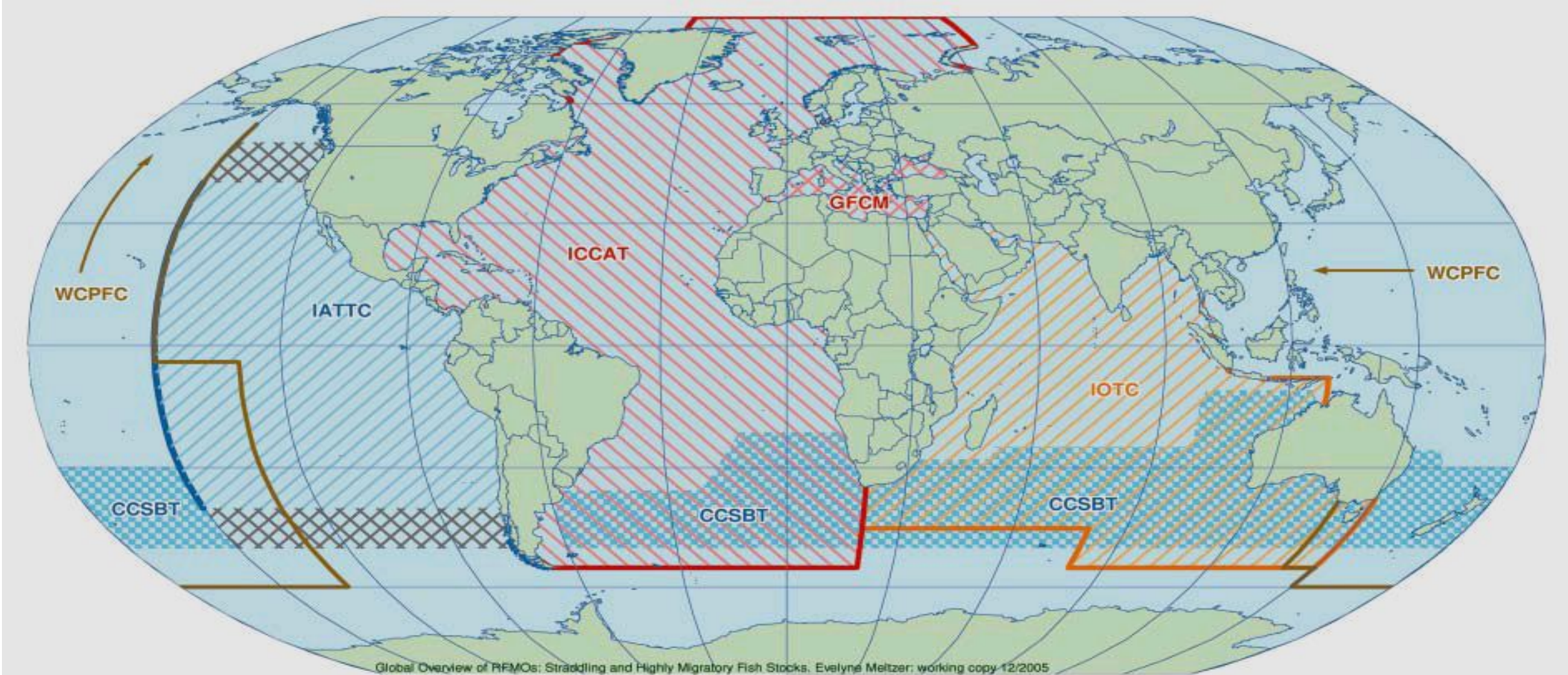
《조업방법》



X. 수역도

1. 지역기구도(1)271
2. 지역기구도(2)272
3. 원양어업어선도273
4. 한·중, 한·일 어업협정수역도274
5. 원양어업 어획쿼터275

1. 지역기구도(1)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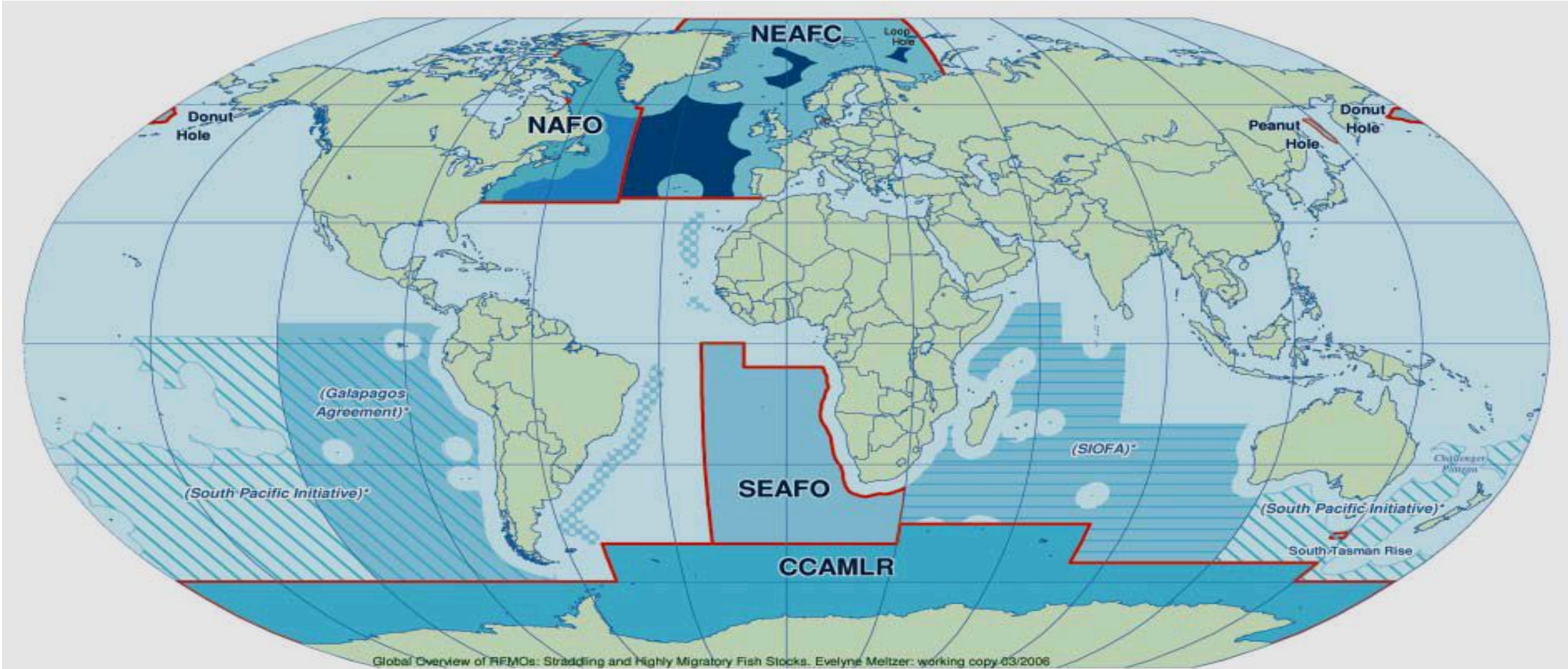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Evelyne Meltzer: working copy 12/2005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Map Projection : Robinson

Global Overview of RFMOs: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una and Tuna-Like)

-  IATTC
-  Antigua Convention (not yet in force)
-  GFCM
-  CCSBT
-  ICCAT
-  IOTC
-  WCPFC

WCPFC Note : Northern boundary and most of Western boundary for RFMO are not defined, and Area is not intended to include waters in South-East Asia which are not part of the Pacific Ocean; nor is it intended to include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2. 지역기구도(2) (Maps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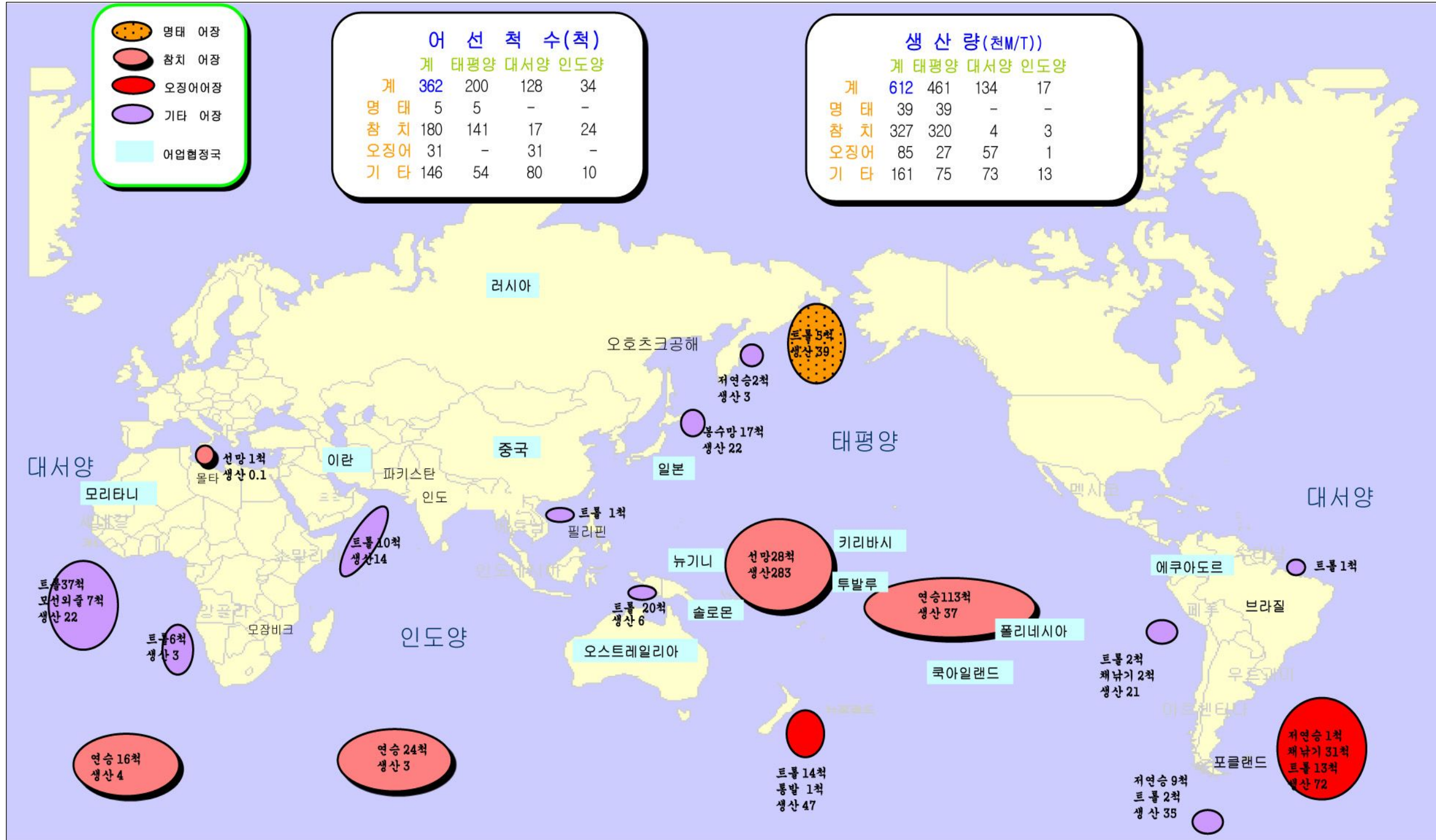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Evelyne Meltzer: working copy 03/2006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Map Projection: Robinson

Global Overview of RFMOs: Straddling Fish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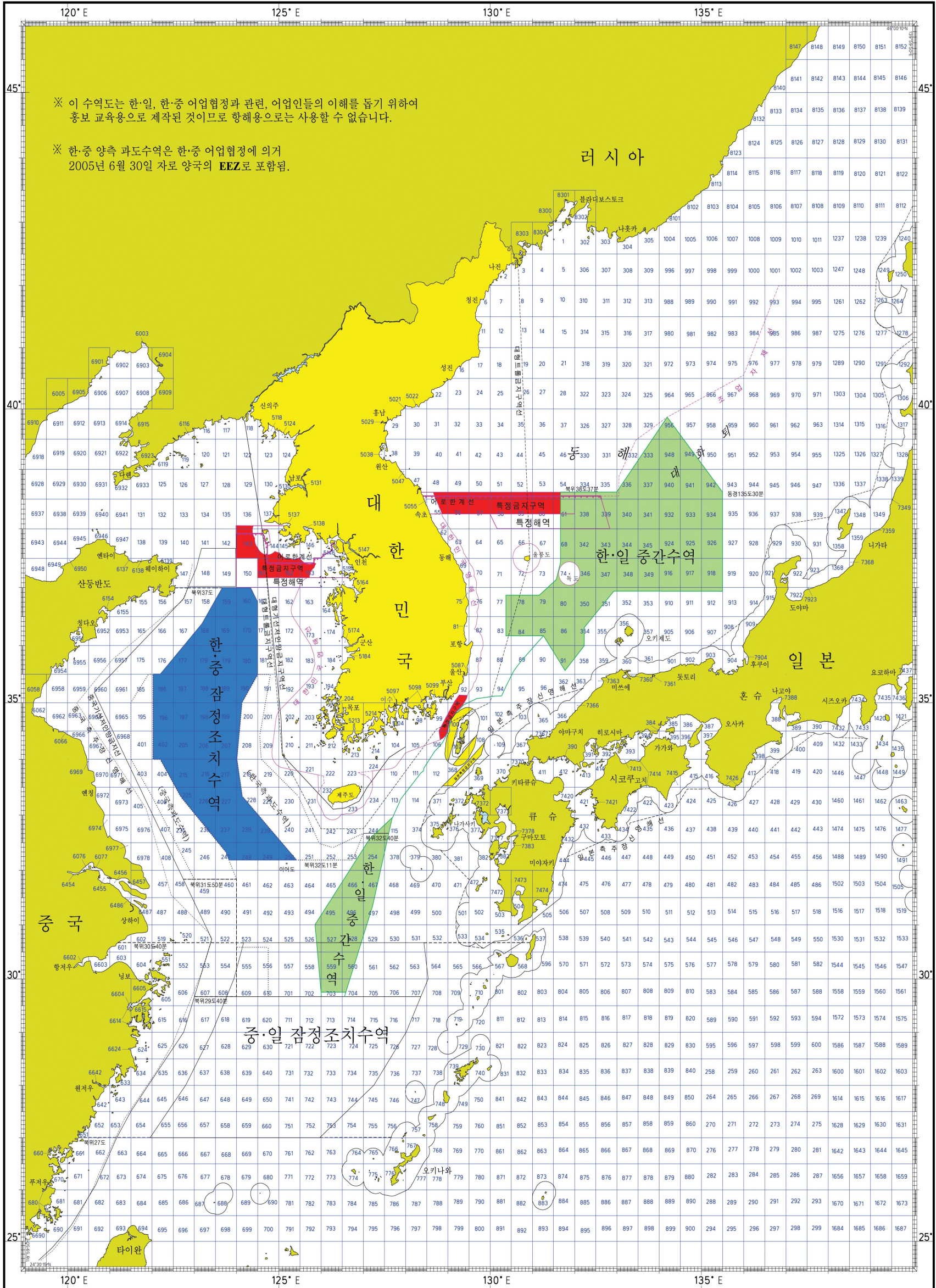
<p>— RFMO Boundary</p> <p>() * RFMO area under negotiation, not yet adopted or not yet in fo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AFO CCAMLR NEAFC Convention Area NEAFC Regulatory A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FO Convention Area NAFO Regulatory Area Donut Hole Arrangement (SIOFA)* (Not yet adop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lapagos Agreement)* (Not yet in force) (South Pacific Initiative)* (Under negotiation - preliminary boundary) Other Unregulated High Seas Areas where Straddling Fish Stocks occur
--	---	---

3. 원양어업어선도 (遠洋漁業漁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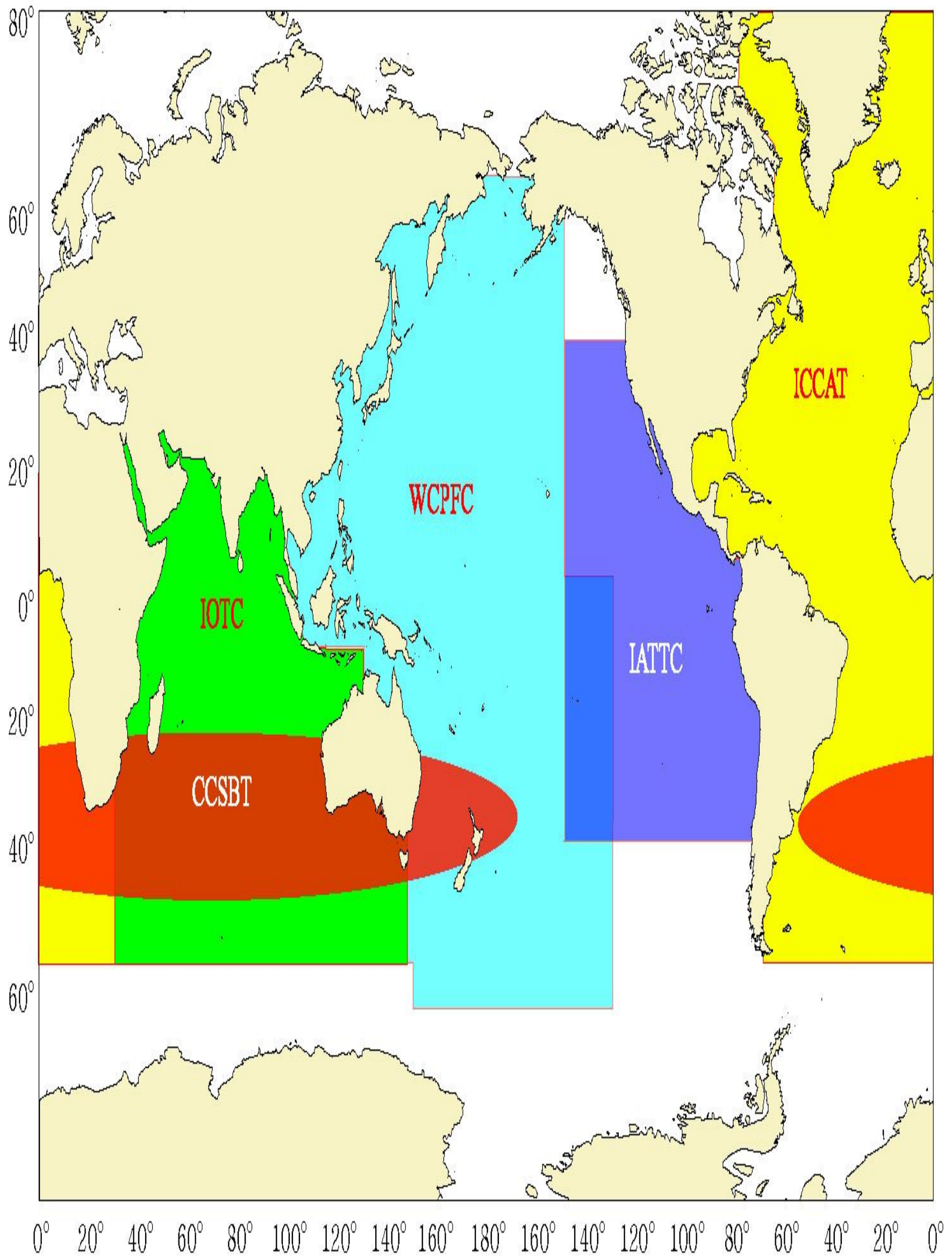
2009.12.31 현재



4.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



5. 원양어업 어획쿼터



원양협력관실 업무편람

인 쇄 일 2011년 12월
발 행 일 2011년 12월
발 행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편 집 인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장
발 행 처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전 화 (02)500-2395~6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인 쇄 처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비매품